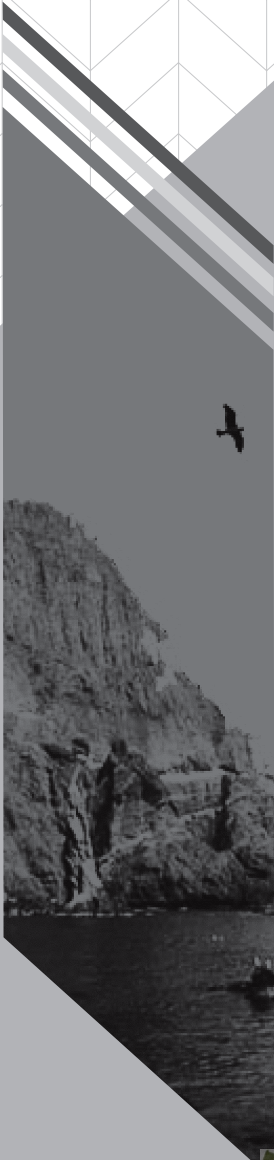


Territory and Seas

영토해양연구

Vol. 15 Summer 2018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차례

연구논문

- 서인원 | 1950년대 일본 고유영토설의 정치적 분쟁화 모순점에 대한 고찰 6
- 정재민 | 역사적 권원의 판단 순서와 판단 방식 48
- 박배근 | '섬'과 '암석'에 관한 남중국해 중재판정과
한일 간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함의 76

사료해제

- 이원택 | 19세기 울릉도 수도 사료 해제 및 번역 114

서평

- 이병택 | 근대 초기 아시아의 국경 교섭: 명대 중국과 월남의 사례 130

영토·해양 일지

- 곽진오 | 영토·해양 일지 142

규정 및 규칙

- 편집위원회 규정 148
- 발행 및 심사규칙 150
- 투고 요령 154
- 연구윤리규정 158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운영 규칙 160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최근 저술



- 서인원 | 1950년대 일본 고유영토 설의 정치적 분쟁화 모순점에 대한 고찰
- 정재민 | 역사적 권원의 판단 순서와 판단 방식
- 박배근 | '섬'과 '암석'에 관한 남중국해 중재판정과 한일 간 해양경계 획정에 대한 함의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950년대 일본 고유영토설의 정치적 분쟁화 모순점에 대한 고찰

서인원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연구위원

1. 머리말

일본 정부는 근래에 들어서서 독도에 대해 한국의 영토 주권 행사를 부정하면서 외무성, 관방장관 영토·주권대책기획조정실, 시마네현에서 독도에 대한 연구와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기본 입장은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분명히 일본의 고유 영토”¹라는 주장이다.

일본 정부는 독도 영유권에 대해 “1618년 돛토리번[鳥取藩] 호키국[伯耆國] 요나고[米子]의 주민 오야 진키치[大谷甚吉]와 무라카와 이치베[村川市兵衛]는 돛토리번의 번주[藩主]를 통하여 에도막부로부터 울릉도[당시의 일본명 '다케시마']에 대한 도해면허를 취득하였고, 에도막부의 공인하에 울릉도를 독점적으로 경영하였다. 이런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일본은 에도시대 17세기 중엽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논문 투고일: 2018. 3. 30. 심사 완료일: 2018. 5. 15. 재심사 완료일: 2018. 5. 25. 게재 확정일: 2018. 5. 30.
1 일본 외무성, 「다케시마 문제에 관한 10개의 포인트」, 2쪽.

일본 정부는 “1905년 나카이 요자부로[中井養三郎]의 랑코도(독도) 대하원 신청을 이용하여 1905년 1월 시마네현 각의 결정을 거쳐 독도를 ‘오키 도사(島司)의 소관’으로 편입한 것에 대해 일본이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의사를 재확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역사적 권원보다는 1905년의 편입 조치를 강조하여 합법적인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² 그러나 이런 일본 정부의 역사적 권원과 합법적인 편입이라는 주장은 양립할 수 없는 모순점을 가지고 있다. 일본의 이런 태도는 한국의 영토 주권을 부정하면서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화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의 고유영토설은 과거 제국주의에 의해 강탈했던 영토를 되찾기 위해 영유권의 정당성을 정치적으로 포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용어이다. 이와 같은 주장이 최초로 나온 것은 1959년 1월 7일 일본 정부 견해⁽⁴⁾였다. 그중 “독도가 오래전부터 일본 고유의 영토인 증거는, 17세기부터 영유권을 확립하였고 메이지 초기에도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다.³ 이런 고유영토설은 일본 정부가 만들어낸 정치적 용어로서 타국과의 영토 분쟁을 나타내는 용어이며 역사적 권원을 부정하는 모순된 주장이다.

일본의 17세기 독도에 대한 고유영토설은 ‘울릉도 쟁계(1696)’, 「원록구병자년조선주착안일권지각서(1696)」, 「조선국교제시말 내탐서(1870)」, 「태정관지령(1877)」, 「대한제국 칙령 제41호(1900)」로 충분히 반박할 수 있다. 그리고 야마베 겐타로[山辺健太郎], 가지무라 히데키[梶村秀樹], 나이토 세이쥬⁵[内藤正中], 호리 가즈오⁶[堀和生], 이케우치 사토시⁷[池内敏] 등의 일본학자들이 일본

2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일본 영토를 둘러싼 정세, ‘다케시마 문제 개요’, www.mofa.go.jp/mofaj/area/takeshima/gaiyo.html (검색일: 2017. 12. 30).
3 외무부, 1977, 『독도관계자료집(1)-왕복외교문서(1952~1976)』, 236쪽.
4 梶村秀樹, 1978, 「竹島=独島問題と日本国家」, 『朝鮮研究』, 182호.
5 内藤正中, 2005b, 「竹島独島問題の問題点(下)」, 『統一評論』(478).
6 堀和生, 1987, 「1905年日本の竹島領土編入」, 『朝鮮史研究会論文集 24』.

고유영토설의 모순점을 반박하였다.

1965년 야마베 겐타로는 일본 외무성의 고유영토설에 대해 고유 영토의 정의가 없고⁸ 애매모호하다고 반박하였다. 나이토 세이쥬는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고유영토설의 근간이 되는 저서를 가와카미 겐조(川上健三)의 『다케시마의 역사 지리학적 연구』로⁹ 보고 있으며 울릉도 쟁계, 다케시마 도해 금지령, 안용복의 항의 내번(來藩) 사건, 「태정관지령」,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리양코섬의 일본 영토 편입 등의 예시를 들면서 일본의 고유영토설을 반박하였다.¹⁰ 나이토 세이쥬의 반박에 이케우치 사토시¹¹도 역사적 사실(『은주시청합기』)을 바탕으로 같은 맥락에서 일본의 고유영토설을 부정하고 있다. 신용하¹², 송휘영¹³, 김호동¹⁴, 곽진오¹⁵는 일본의 사료(『은주시청합기』, 울릉도 쟁계, 다케시마 도해 금지령, 「태정관지령」)를 바탕으로 일본의 고유영토설을 반박하면서 17세기 일본 독도 영유권 확립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나이토 세이쥬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하 강화조약)에서 독도에 관해 명문화된 규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와카미가 독도 문제는 미해결이라며 일본의 고유영토설을 주장하고 있다는¹⁶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가와카미는 강화조약이 발효되면서 SCAPIN 677호도 필연적으로 효력을 잃게

7 池内敏, 2012, 『竹島問題とは何か』, 名古屋大学出版会.

8 山辺健太郎, 1965. 2, 「竹島問題の歴史的考察」, 『코리아詩論 第7卷 第2号 No. 52』, 4쪽.

9 内藤正中, 2005, 「竹島は日本固有領土か」, 『世界 2005年 6月号』, 53쪽.

10 内藤正中, 2005. 8, 「竹島固有領土論の問題点」, 『郷土研69号』, 참조.

11 池内敏, 2012, 위의 글.

12 신용하, 2001, 『독도영유권에 대한 일본주장 비판』, 서울대학교출판부, 참조.

13 송휘영, 2014, 「죽도문제 100문 100답의 죽도도해금지령과 태정관지령 비판-일본의 '고유영토론'은 성립하는가」, 『독도연구 16』, 영남대 독도연구소, 참조.

14 김호동, 2011, 「일본의 독도 고유영토설 비판」, 『민족문화논총 49』, 참조.

15 곽진오, 2014, 「일본의 독도고유영토, 무주지선점, 그리고 국제법적 주장의 허구와 한계」, 『일본문화학보 62』, 참조.

16 内藤正中, 2005. 8, 위의 글, 20쪽.

되었고 고유 영토로서 일본에 귀속되었다는 인식에 바탕한 코멘트를 하고 있다.¹⁷

기무라 칸(木村幹)은, 고유 영토라는 것은 특정 영토를 둘러싼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 자국 외의 타국에 의해 지배당한 적이 없는 영토라며, 이를 바탕으로 1905년 이전 한국이 독도를 유효하게 지배한 근거를 제시하며 자국의 고유영토설이 성립한다고 주장하고 있다.¹⁸ 그러나 1905년 이전에 이미 한일학자들이 한국이 독도를 유효하게 지배해왔고 일본 정부가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했다는 것을 증명하였기 때문에 기무라의 이런 주장은 정치적 분쟁을 조장하는 것으로 일본 영토의 재확인 주장, 고유영토설에 모순되는 행위이다.

상기의 선행 연구에서는 『은주시청합기』, 울릉도 쟁계, 독도 도해 금지령, 「태정관지령」 등의 일본 사료에 따라 일본 정부의 17세기 독도 영유권 확립과 고유영토설이 충분히 반박되었다. 그러나 일본의 고유영토설은 1950년에 만들어진 정치적 용어로 고유영토설의 의미도 변화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의 논리도 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강화조약이 발효되면서 SCAPIN 677호의 효력을 잃게 되었고 고유 영토로서 일본에 귀속하게 되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 시기 일본 정부는 일본 고유의 영토를 확보하기 위해 역사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이론 무장에 중점을 두었고 포츠담선언과 강화조약의 영토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고유영토설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주로 1950년 전후 일본의 영토 처리 문제를 중심으로 생겨난 고유 영토의 개념에 대해 고찰하면서 일본 법령의 독도 영유권 표기를 통해 고유영토설의 모순점을 분석한다. 그리고 SCAPIN 677호와 일본 법령 등의 분석을 통해 강화조약 이후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로 귀속되었다는 인식을 반박하고자 한다.

17 川上健三, 1966, 『竹島の歴史地理学的研究』, 古今書院, 252쪽.

18 木村幹, 2014, 「書評・池内敏著『竹島問題とは何か』」, 『東洋史研究』, 72卷 4号, 111쪽.

또한 1950년 전후로 일본 정부가 고유영토설을 사용하게 된 국제관계상 정치적 상황을 분석하면서 일본 고유영토설이 정치적 용어로 일본 고유 영토가 분쟁을 나타내는 모순점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일본 정부 견해와 구술서에 나오는 고유 영토에 대한 표현을 분석하여 일본 주장의 모순점에 대해 분석한다.

II. 일본 고유 영토의 개념과 영토 개념의 변천

일본 외무성은 독도를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도 고유의 영토에 대한 정의가 없다. 1959년 독도에 관한 고유 영토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이후 1965년 아마베 켄타로는 일본 외무성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때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고유 영토에 대한 정의가 없다고 했다.¹⁹ 이와 관련해 지금까지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설명은 없다.

메이지헌법 작성 때 기안자 중 한 사람인 이토 미요지(伊東巳代治)의 문서에 ‘제국 판도’라는 용어가 있는데, 제국 헌법을 제정했을 때 헌법이 시행되는 고유 영토에 대한 정의를 볼 수 있다.²⁰ 제국의 고유 영토는 신화에 있는 대로 혼슈, 규슈, 시코쿠, 아와지섬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일본 역사학자도 인정한 명백한 정의이다. 이것을 보더라도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에 대한 고유영토설은 근거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²¹

고유 영토라는 표현 외에 일본 정부가 사용했던 주된 영토 표현은 19세기에 사용했던 ‘판도’라는 용어로 중화제국이 지배하는 지역을 말하며 유럽식 국제질서의 의미에서 영역이 아니다. 영역은 명확히 ‘경계=국경’이라는

19 池内敏, 2016, 『竹島—もうひとつの日韓関係史』, 中公新書, 244쪽.

20 山辺健太郎, 1965. 2, 앞의 글, 4쪽.

21 山辺健太郎, 1965. 2, 위의 글, 4쪽.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정부에 의한 영토 주권 행사를 말하지만, 판도는 황제 통치의 은혜를 입은 자, 집단이 사는 공간이고 명확한 경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²² 일본 정부가 선점에 의한 독도, 센카쿠제도를 영유한 것은 유럽식 국제질서의 영역 관념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화이질서에 의한 판도라는 개념을 생각하면 국제질서와 충돌이 생긴다.

이런 충돌은 오가사와라제도(1876), 이오지마(硫黄島)(1891), 구메아카지마[久米赤島]·구바시마[久場島]·우오쓰리시마[魚釣島](1895), 미나미토리시마[南鳥島](1898), 오키다이토지마[沖大東島](1900), 오키노토리시마[沖ノ鳥島](1931) 등의 사례들에서 볼 수 있다. 이것은 유럽식 국제질서의 영토 논리로 선점하고 제국 판도 편입 경위에 대한 전반적인 해설을 하고 있다. 일본은 공식적인 영토 용어로 ‘판도’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들 섬들을 고유 영토라 주장하고 있다.

근세 초기에는 통일 권력, 즉 막번체제가 성립했고, 경계, 국경 개념이 크게 바뀌었다. 그 세계관은 극히 현실적인 것으로 전환되고 다른 지역의 사회인식도 같은 국제사회에 있는 인간 관계의 인식으로 조정되어 일체화되는 공간이 확립되었다. 에도시대의 일본형 화이질서는 조선, 류큐, 중국, 네덜란드, 아이누(홋카이도 지역 민족)의 에조지 등의 세계관을 인식하고 있었다. 일본형 화이질서를 통해 일본의 지리적 위치가 확인되며 중앙권력에 의해 국경 관리가 확립되었다.²³ 그러나 주권 개념이 충분히 확립되지 않았던 시기여서 홋카이도 지역에 대한 명확하고 절대적인 경계로서의 영토 인식은 충분히 확립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일본 정부는 대륙을 침략하면서 일본의 영토를 ‘내지(内地)’와 ‘외지(外地)’라는 용어로 표현하였다. 이것은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만든 용어이다.

법문상 ‘내지’는 1890년 대일본제국헌법 시행 후 헌법 적용하에 있는 영

22 名嘉憲夫, 2013, 『領土問題から国境画定問題へ』, 明石書店, 94쪽.

23 浦野起央, 2013, 『日本の国境 分析・資料・文献』, 三和書籍, 15쪽.

역을 나타내는 카테고리 사용된 용어이다. 다른 지방을 ‘외지’라고 하는 카테고리는 일반적으로 일본제국이 배타적인 법역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의 적용 외로 두고 있는 영역이다.²⁴ 홋카이도가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별 지역이라는 의식이 일본 정부에 있었고, 혼슈 이남은 내지라고 하고 홋카이도는 외지라고 지적했다.²⁵ 그리고 일본에서 내지는 행정상 일본 본토 지역으로 그 범위는 공통법²⁶ 1조에 정의되어 있고, 공통법에서 내지로 포함되지 않는 외지는 대만, 조선, 관동주, 남양군도가 있다. 1890년 대일본 제국헌법이 실시된 후 이 시점까지 일본 국경 내에 포함된 지역은 1895년의 청일전쟁 이후 병합된 식민지인 외지를 내지라 부르게 되었다. 그러나 본래의 내지인 혼슈, 시코쿠, 규슈 지역을 비교하면 이 지역에서 헌법 적용은 오랫동안 조건부로 불완전한 것이었다. 그래서 전전(戰前) 일본의 국가 영역은 혼슈, 시코쿠, 규슈 지역을 ‘내지’로 홋카이도, 오가사와라, 오키나와 지역을 ‘중지(中地)’로 대만, 조선, 사할린, 남태평양, 만주, 동남아시아 등을 ‘외지’로 해서 3분류로 구성된다.²⁷

국제법에도 고유 영토라는 개념은 없다. 국제법에는 어느 국가의 주권 아래에 있는 토지는 영역이라고 정의되어 있고, 그 영역에 대한 특정 국가의 영토권, 영유권, 통치권이 정해져 있을 뿐이다. 고유 영토가 국제법에 따라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²⁸

고유 영토란 독도에 대한 영유의 근거가 이른바 근원적 권원(original title) 또는 역사적 권원(historic title)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근대 국제법상 영토

24 名嘉憲夫, 2013, 앞의 글, 136쪽.

25 田村貞雄, 1992, 『国内植民地としての北海道』, 『岩波講座近代日本と植民地1 植民地帝国日本』, 岩波書店, 94쪽.

26 공통법은 일제식민지시대 일본이 조선, 대만, 관동주, 남양군도라는 외지와 다른 법령을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이 지역의 법에서 실시된 법령의 적용 범위 확정 및 이법지역간의 법령의 연락 통일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ja.wikipedia.org/wiki/%E5%85%B1%E9%80%9A%E6%B3%95 (검색일: 2018. 1. 30).

27 名嘉憲夫, 2013, 위의 글, 141쪽.

28 武光誠, 2013, 『国境の日本史』, 文芸春秋, 20쪽.

취득의 양태에 따라 새로이 취득된 것이 아니다.²⁹

국제법 사전에 따르면 고유 영토는 역사적으로 한 번도 타국의 영토가 되지 않았던 자국의 영토를 의미하며, 영토 분쟁 지역에 대한 자국의 영유권 주장의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고유영토설은 법적 주장보다는 정치적 주장의 의미가 강하며 정치적 슬로건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다.³⁰ 원래 자국의 영토라도 타국에 할양하거나 포기하거나 하면 자국의 영토에서 제외된다.

오키나와, 오가사와라제도가 일본 고유 영토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이미 미군에 의해 점령당해 지배받은 적이 있기 때문이다. 전후 오랫동안 일본 본토의 일본인이 오키나와에 도항할 경우에도 일본 발행 여권이 필요할 정도였다.³¹ 그리고 홋카이도는 원래 선주민인 아이누 민족이 살았던 지역이라 일본 고유 영토라고 말할 수 없고, 오키나와는 독립된 왕국으로 일본과 다른 민족이기 때문에 일본 고유 영토라고 주장할 수 없다.

일본이 독도, 센카쿠제도, 쿠릴열도에 대해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들 섬들이 역사의 어느 시점에서 획득되었던 토지임에 지나지 않으며 그 이전에는 일본의 영토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국제법상 고유 영토라는 표현은 거의 의미가 없는 용어이다. 원래 어느 토지가 그 국가에 있어 고유하다는 것은 법적인 이론의 여지는 없다는 것이다. 어느 영토에 대해 2국 이상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그 영토가 어느 국가에서도 고유하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분쟁 발생 이전에 존재한 양국 간 조약과 국제협정, 영토 주권 행사의 법적인 견해에서 검토하면 좋을 것이다.

국제법의 조약에는 고유 영토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³² 주권국가

29 Brownlie, 1998, *Principle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5th ed.*, Oxford: Clarendon Press, p. 146.

30 竹島問題研究会編, 2014, 3, 『竹島問題百問百答』, 『Will』, 創刊号, 28쪽.

31 朴炳涉, 2014, 11, 『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と千島・竹島=独島問題(2)』, 『北東アジア文化研究 第39号』, 鳥取短期大学東北アジア文化総合研究所, 47쪽.

가 성립했던 이후 끊임없이 국경선이 움직였던 유럽에서 고유 영토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고유 영토라는 개념은 센카쿠제도, 독도, 쿠릴열도 등 영토 분쟁 지역이 있는 일본 정부와 외무성이 만들어낸 전략적 정책으로 극히 정치적인 개념에 지나지 않는다. 고유 영토라는 개념은 쿠릴열도라는 용어의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인용한 것으로 도쿄나 오사카를 고유 영토라고는 부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본토이고 고유 영토라는 것은 타국과의 분쟁 상태에 있는 섬들을 대상으로 한 용어임을 알 수 있다.

이렇듯 고유 영토라는 용어는 시대의 필요성에 의해 제기된 정치적 용어인 동시에 의미 없는 용어이다. 역사 인식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는 용어라고 말할 수 있다. 고유 영토라는 용어는 자국민들의 사고를 정지시켜 문제의 분석이나 이해에도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것은 메이지시대의 주권선, 이익선이라는 용어나 쇼와 초기의 생명선이라는 용어와 마찬가지로 거의 내용이 없으며 절대적인 반향을 가지고 의문을 불가능하게 하고, 자신과 다른 사고를 공격하고 배제하도록 하는 정치적 언어의 일종이다.³² 고유 영토설은 오카다 다카시[岡田充]가 말한 것처럼 영토 내셔널리즘의 마력을 만들어낸다. 이 마력은 빼앗길 수도 있다는 피해자 의식을 유발하고 빼앗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반사적 회답을 순간적으로 끌어낸 듯한 반사게임을 만들어낸다. 와다 하루키는 고유영토설에 대해서 번역 불가능한 언어이고 교섭의 용어가 아닌 분쟁의 언어라고 하며, 최후 통첩적인 요구, 군사 행위를 초래하는 주장이라고 하고 있다.³⁴ 다케우치 다케시[竹内猛]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명칭은 역사적 사실에 비취보면 의문이라고 한다.³⁵ 고유영토설은 유럽 국제 정치사의 금기어이며³⁶ 위험한 정치적 언어, 잘못된 역사 인식을

32 名嘉憲夫, 2013, 앞의 글, 32쪽.

33 名嘉憲夫, 2013, 위의 글, 30쪽.

34 和田春樹, 2012, 『領土問題をどう解決するか - 対立から対話へ』, 平凡社, 28~35쪽.

35 竹内猛, 2010, 『竹島-獨島問題固有の領土論の歴史的検討(前後編)』, 168쪽.

바탕으로 만들어진 의미 없는 언어이다.

최근에 일본 문부과학성에서 독도 영토 편입은 고유영토설에 모순된다는 의견이 나와서 고유영토설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하고 있다. 다른 나라가 점령하지 않은 영토는 고유 영토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주지 선점론은 고유영토설에 성립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일본 정치학자인 기무라 칸은 “고유 영토라는 것은 특정 영토를 둘러싼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 자국 이외 타국에 의해 지배당한 적이 없는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³⁷ 그리고 쓰카모토 다카시[塚本孝]는 고유 영토를 “한 번도 외국의 영토가 된 적이 없는 원래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³⁸

그러나 일본 외무성의 공식 견해에서는 “적어도 17세기 중엽부터 독도의 영유권을 확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최근 무주지 선점론을 고유 영토설로 주장하는 것과는 상반되는 주장이다. 고유 영토는 일찍부터 자국 영토로 인지하고 그 지역을 본래의 영토라고 생각하는데 무주지 선점론에 의한 영토 편입은 고유 영토와 상반되는 내용이다. 시마네현 발간 「다케시마 돌아오라 섬과 바다(竹島かえれ島と海)」에서는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은 굳이 기재하지 않았고, 1877년 「태정관지령」에서 울릉도와 독도가 본국(일본)과 관계가 없다고 한 것을 시인하고 있다.³⁹

그리고 1696년 울릉도 쟁계에서 일본은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했기 때문에 17세기 독도 영유권 확립이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은 허위 사실이고, 1905년 각의결정에서 독도는 타국에 의해 점령됐다는 흔적이 없어 무주지 선점론에 따라 영토 편입을 했다는 내용은 일본의 고유영토설에 모순된다.

일본은 독도를 유럽식 근대국제법이 동아시아에 수용되기 전부터 동아

36 羽場久美子, 2013, 『尖閣・竹島をめぐる固有の領土論の危うさ-ヨーロッパの国際政治から』, 『世界第839号』, 岩波書店, 43쪽.

37 木村幹, 2014, 앞의 글, 111쪽.

38 竹島問題研究会編, 2014, 3, 앞의 글, 29쪽.

39 伊藤隆監修・百瀬孝著, 2010, 『史料検証 日本の領土』, 河出書房, 141쪽.

시아의 국제규범질서 속의 판도에 속하는 영토로 생각했고, 유럽식 근대국 제법 질서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자국 영토로 인정받는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논리로 일본은 1905년 영토 편입 조치를 역사적 권위를 재확인 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⁴⁰ 고유영토설과 무주지 선점론이 양립할 수 없는 모순점이 생겨 일본 정부의 주장은 허위 사실임이 증명된다.

일본의 영토 개념은 동양의 화이질서에서 나왔고 유럽식 국제법 논리에 적용하다보니 상반되는 모순이 드러나기 시작하여 독도 영토 편입을 영유권 재확인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 즉 일본의 고유 영토 개념은 서양적 개념이 아니라 동양적인 개념에서 출발했으나 1950년대부터 유럽식 국제법 논리로 설명하고 있다.

III. 전후 일본 고유영토설의 모순점

1. SCAPIN 677호의 영역 획정

가와카미는 『다케시마의 역사 지리학적 연구』에서 고유영토설을 바탕으로 연합국에 의해 결정된 결과가 강화조약 영토 조항에 구체적으로 나오고 독도는 카이로선언에서 말하는 폭력적 강탈로 취득한 영토가 아니라 일본 고유 영토인 이상 반환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⁴¹

그리고 가와카미는 강화조약이 발효되면서 SCAPIN 677호도 필연적으로 효력을 잃게 되었고 고유영토로서 일본에 귀속하게 되었다는 인식에 바탕한 코멘트를 하고 있다.⁴² 그래서 강화조약은 SCAPIN 677호를 승계한 조약이며 일본 법령도 강화조약을 뒷받침해주는 근거이기 때문에 이런 법

40 竹島問題研究会編, 2014, 3, 앞의 글, 50쪽.

41 内藤正中·金柄烈, 2007, 『史的検証 竹島·独島』, 岩波書店, 103쪽.

42 川上健三, 1966, 앞의 글, 252쪽.

령을 바탕으로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가 아닌 것을 반박한다.

1945년 9월 2일 연합국 최고사령관은 일본의 항복문서조인을 받고서 1946년 1월 29일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SCAPIN) 677호’로 일본에 대해 일본 국외에 있어 정치상 또는 행정상의 권력 행사를 모두 정지한다고 명령했다. 그리고 제3항의 일본 범위에서 제외된 지역으로 ‘(a)울릉도, 독도, 제주도’가 명기되어, 독도는 제주도와 울릉도와 함께 일본에 의한 권력이 정지되는 지역으로 지정되었다. 게다가 6월 22일 SCAPIN 1033호에서는 일본 어선의 조업 구역이 제한되어 ‘일본인 선박 또는 승무원은 독도(북위 37도 15분, 동경 131도 53분) 12마일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며 또한 그 섬과의 어떠한 접근도 못한다’고 규정되어 독도는 일본 어선의 조업 구역 외에 두어졌다.

SCAPIN 677호 제6항은 모두 포츠담선언 제8조⁴³에서 언급한 “소도서들에 관한 최종적 결정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명기되어 있고 SCAPIN 1033호에서도 국가의 관할권·국경·어업권의 최종적인 결정에 관련된 연합국의 정책 표명은 아니라고 부기되어 있다. 결국 두 지령과 영토 획정이라는 문제는 준별해서 취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SCAPIN 677호와 일련의 맥아더 라인은 오키나와를 일본 본토에서 분리하고 쿠릴열도, 하보마이제도, 시코탄도 일본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고 이 조치가 강화조약 제3조와 제2조 (c)항에 있어 ‘획정’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 관계로 쿠릴열도의 취급이 문제가 된 1954년 12월 델레스 국무장관은 그 각서에서 모든 맥아더 라인은 하보마이제도를 러시아의 영역 안에 포함한다고 지적하고 맥아더 라인이 사실상의 영토 획정이라는 인식을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⁴⁴

그래서 일본 지배하에 있던 옛 도서의 처리 방침을 검토한 1946년 6월

43 포츠담선언 제8조 The terms of the Cairo Declaration shall be carried out and Japanese sovereignty shall be limited to the islands of Honshu, Hokkaido, Kyushu, Shikoku and such minor islands as we determine.

44 豊下楯彦, 1992 『日本占領管理体制の成立』, 岩波書店, 391쪽.

24일부 미국의 국무·육군·해군 3성 조정위원회 보고서인 「구 일본 지배하의 위임통치령 및 그 주변의 여러 소도에 대한 신탁통치 혹은 다른 처리 방법에 관한 정책」(SWNCC 59/1)에서는 독도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와 함께 한국의 영토로 표기되어 있고, 카이로선언은 한국의 자유와 독립을 요구하고 있다.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독도 및 한국의 모든 연안의 소도는 역사상 또는 행정상 한국의 일부로 주로 한국인이 거주하고 있고, 한국의 일부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⁴⁵

이런 연합국 최고사령관의 지령은 독도의 정확한 위치를 표기하고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하였다. 연합국은 1905년 시마네현이 편입한 독도의 위치(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5분)와 연합국이 측정한 독도의 위치(북위 37도 15분, 동경 131도 52분)가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고⁴⁶ 수정하였다. 일본 정부가 1905년 독도를 편입시킬 당시 독도 위치(좌표)가 없고 일본 외무성이 잘못된 독도 위치를 2005년까지 표기한 것은 고유 영토의 모순점이라 할 수 있다. 2005년까지 일본 정부는 외무성 홈페이지에 잘못된 독도 위치(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5분)를 사용하였고 외무성과 국토지리원에 게시한 독도 위치(북위 37도 14분 30초-37도 15분 17초, 동경 131도 51분 51초-131도 52분 31초)와 다르다는 일본 『매일신문』의 지적⁴⁷에 따라 2005년 8월부터 한국 외교부 홈페이지의 독도 위치(북위 37도 14분, 동경 131도 52분)와 같은 위치로 수정하였다. 이런 문제점은 일본 외무성이 가와카미의 『다케시마의 역사 지리학적 연구』를 잘못 인용한 데에서 시작되었다.

독도는 1946년 SCAPIN 677호에 의해 일본 영토에서 제외되었고 강화조약이 발효된 1952년에는 한국 정부가 이미 독도를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 통치권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강화조약에는 독도에 대한 아무런 규정도 없고 한국은 강화조약에서 비조인국이기 때문에

45 原貴美恵, 2012, 『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の盲点』, 溪水社, 42쪽.

46 김신, 2015, 『일본법이 증명하는 한국령 독도』, 피앤씨미디어, 117쪽.

47 『毎日新聞』 夕刊, 2005. 7. 16.

독도에 대한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⁴⁸ 이것은 SCAPIN 677호 제4항 일본의 범위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에서 외지라고 불리는 것은 해외영토이고 이 영토는 패전 후 일본 정부의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이 되었다.

1948년 12월 12일 국제연합총회 결의 제195(III)호에 의해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정부가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승인하였다.⁴⁹ 한국과 일본이 1948년 8월 15일 이전에 일본의 영토로부터 한국의 영토가 분리되었다는 것을 공동으로 승인한 것이다. 따라서 1952년 4월 28일에 효력을 발생한 강화조약 제2조에 의해 비로소 한국의 영토가 일본의 영토로부터 분리된 것이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은 국제연합총회 결의에 위배되는 것이다.

강화조약 제2조의 규정에 의해 비로소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분리, 독립한 것이 아니라,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기 분리, 독립한 사실을 동 제2조 규정이 승인한 것이다. 그래서 일본은 강화조약 제2조에 의해 무조건 항복 문서의 시행 조치인 연합군최고사령부 SCAPIN 677호를 승인한 것이며 동 훈령에는 일본으로부터 분리되는 지역으로 독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결국 일본은 강화조약 제2조의 규정에 의해 독도의 분리를 승인한 것이다.⁵⁰

강화조약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강화조약 체결 당시의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국제법상 확립된 원칙이라 할 수 있다.⁵¹ 강화조약에 독도가 일본으로부터 분리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도 독도는 일본으로부터 분리된 것이다.

또한 강화조약 제19조 (d)항은 강화조약 영토 규정에서 다수의 소도 중 독도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것에 대해 독도가 한국 영토와 관련이 있다는 대답을 제시하고 있다. 강화조약 제19조 (d)항은 “일본은 점령 기간 동안 점령 당국의 지령하에서 또는 그 지령의 결과로 행해졌거나, 당시 일

48 박병섭, 「대일강화조약과 독도·제주도·쿠릴·류큐제도」 『독도연구 16』, 199쪽.

49 “International Gegal Materials”, 1965, p. 925.

50 김명기, 1996, 「국제법으로 본 독도 영유권」,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0』, 464쪽.

51 Hersch Lauterpacht(ed), 1955, *Oppenheim's International Law, Vol.2 7th ed.*, London: Longmans, p. 611.

본법에 따라 승인된 모든 작위(조치)와 부작위(不作爲) 행위의 효력을 인정한다”⁵²는 조항이 있다. 이 조항은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시킨 SCAPIN 677호를 근거로 하고 있다.

2. 일본 법령에서 독도 영유권 표기

1946~1954년의 일본의 대장성 고시, 사법성령, 대장성령, 농림성령, 외무성령, 총리부령, 통상산업성령, 정령, 후생성령, 우정성령, 문부성령, 체신성령(표 1) 등의 법령⁵³에서 독도와 쿠릴열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기 때문에 일본 영토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런 법령들은 분명하게 일본의 고유영토설을 반박하고 있다. 일본의 법령체계에서 일부 법령이 쿠릴열도와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님을 전제로 하는 내용은 일본이 쿠릴열도와 독도가 자국의 영토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법적 근거 자료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1946년 8월 15일 대장성고시 654호는 전후 일본 기업의 채무 해결을 위해 「회사경리응급조치법시행령」을 제정하여 일본이 점령했던 영토 중 외국으로 분류한 지역을 규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고시에 따르면 한국과 대만, 사할린, 쿠릴열도, 남양군도는 외국으로 분류됐고, 독도도 별개 항목으로 외국으로 규정됐다.

그리고 대장성령 4호의 「조선총독부 교통국 공제조합의 본방 내에 있는 재산의 정리에 관한 정령의 시행에 관한 총리부령」⁵⁴이다.

1951년 1월 5일부와 2월 7일부 연합국 최고사령관의 지령에 따른 조선총독부 교통국 공제조합의 일본 내에 있는 재산 정리에 관한 정령안 및 이

〈표 1〉 일본 법령

구분	시행일	구 일본 점령지역
SCAPIN 677호	1946년 1월 29일	본 지령의 목적상 일본은 일본의 4개 도서(홋카이도, 혼슈, 규슈 및 시코쿠)와 대마도를 포함한 약 1,000개의 인접한 보다 작은 도서들과 북위 30도의 북쪽 류큐열도로 한정되며, (a) 울릉도, 리앙쿠르트 암(독도), 제주도 (b) 북위 30도 이남 류큐열도(구치노시마 포함), 이즈, 난보, 보논(오가사와라) 및 화산(오시가지시 또는 오야가리) 군도 및 파레스 벨라(오기노도리), 마이카스(미나미도리) 및 간자스(나카노토리) 도서들과 (c) 쿠릴열도, 하보마이(스이쇼, 유리, 아키유리, 시보츠, 타라쿠 도서들 포함하는 하모마스 군도)와 시코탄을 제외한다.
대장성고시 654호	1946년 8월 15일	회사경리응급조치법 시행령 제 2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 포함되는 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조선, 대만, 관동주, 남양군도 및 사할린 2 쿠릴열도 3 오가사와라제도 및 이오열도(硫黃列島) 4 다케시마[竹島, 독도] 5 북위 30도 이남의 남서제도 6 오토제도, 오키노토리시마, 미나미토리시마 및 나카노토리시마
정령 291호	1949년 8월 1일	구 일본 점령지역, 만주, 중화민국, 대만, 조선, 사할린, 류큐열도, 남양군도 및 주요 성령에서 정한 그 외의 도서 및 1894년 이후에 있어 일본에 의해 점령 또는 통치된 그 외의 모든 지역을 말한다. 정령의 시행에 관한 명령서 1 쿠릴열도, 하보마이(스이쇼, 유리, 아키유리, 시보츠 및 타라쿠를 포함) 및 시코탄 2 오가사와라제도 및 이오열도 3 울릉도, 다케노시마(竹の島, 독도) 및 제주도 4 북위 30도 이남의 남서제도(류큐열도 제외) 5 오토제도, 오키노토리시마, 미나미토리시마 및 나카노토리시마
대장성령 4호	1951년 2월 13일	구령에 의한 공제조합 등으로부터의 연금수급자를 위한 특별조치법(1950년 법률 제256호) 제4조 제3항에 규정한 부속 섬은 다음에 열거한 섬 이외의 섬을 말한다. 1 쿠릴열도, 하보마이(스이쇼, 유리, 아키유리, 시보츠 및 타라쿠를 포함) 및 시코탄 2 울릉도, 다케노시마(竹の島, 독도) 및 제주도
총리부령 24호	1951년 6월 6일	제2조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정령 제291호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 경우에 있어서는 부속도는 다음에 열거된 섬 이외의 섬을 말한다. 1 쿠릴열도, 하보마이(스이쇼, 유리, 아키유리, 시보츠 및 타라쿠를 포함) 및 시코탄 섬 2 오가사와라제도 및 이오열도 3 울릉도, 다케노시마(竹の島, 독도) 및 제주도 4 북위 30도 이남의 남서제도(류큐열도 제외) 5 오토제도, 오키노토리시마, 미나미토리시마 및 나카노토리시마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1952년 4월 28일	제2장 영토 제2항: 영토 포기 또는 신탁 통치 이관 (a)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자격, 영유권을 포기한다. (b) 일본은 타이완과 핑호제도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 (c) 일본은 쿠릴열도와 사할린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 (d) 남태평양의 구 위임통치지역은 미국이 신탁통치하며, 오키나와와 오가사와라제도는 미국의 신탁통치 예정지역으로 삼는다. (e) 일본은 일체의 국외 자산과 조약체결국에 대한 모든 청구권을 포기한다.
대장성령 99호	1952년 8월 5일	제2조 법률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부속도란 혼슈, 홋카이도, 시코쿠 및 규슈에 부속된 섬 중 다음에 언급된 섬 이외의 섬을 말한다. 1 쿠릴열도 2 오가사와라제도, 이오열도, 오토제도, 오키노토리시마, 미나미토리시마 및 나카노토리시마 3 다케노시마[竹の島, 독도] 4 북위 30도 이남의 남서제도

52 The Peace Treaty With Japan, San Francisco, 2 September 1951, Article 19(d): 'Japan recognizes all acts and omissions done during the period of occupation under or in consequence of the directives of the Occupation Authorities or authorized by Japanese law at that time...'

53 『官報』, 1946~1954年, dLndlgo.jp (검색일: 2018. 1. 30).

54 大蔵省, 1951. 2. 「旧令による共済組合等からの年金受給者のための特別措置法案」, 國立公文書館 소장(A17111992500)

유를 첨부하여 각의를 요청했다.⁵⁵

조선총독부 교통국 공제조합의 일본 내에 있는 재산 정리에 관한 정령에 따르면, “내각은 포츠담선언의 수락에 따라 동 정령을 제정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포츠담선언에서는 독도의 귀속을 명확하게 정하지 아니하였고 포츠담선언 이후의 모든 조치에 남겨 놓았다. 포츠담선언 이후의 모든 조치로는 「항복 후 미국의 초기 대일방침(1945.9.22)」, 「일본의 점령 관리를 위한 연합국 최고사령관에 대한 항복 후 초기의 기본 지령(1945.11.1)」, 「연합국 일본 점령의 기본 목적과 연합국에 의한 그 달성 방법에 관한 맥아더 원수가 관하부대에 보내는 훈령(1945.12.19)」 등이 있다.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한국이 해방됐기 때문에 나중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청구권 문제를 미리 해결한다는 차원에서도 국내 처분을 서두를 필요가 있어 추진하였고 이 정령 고시는 강화조약 체결 후에도 지속되었다.

그런데 이런 정령들은 「조선총독부 교통국 공제조합의 본토 내 재산 정리에 관한 정령 시행」을 통해 재산 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 도서(島嶼: 섬 및 섬 주변 지역)에서 울릉도, 독도, 제주도를 명기한 것으로 일본에서 독도는 울릉도, 제주도와 함께 정령의 적용 대상이 아닌 도서가 된다.

「총리 부령 24호(1951.6.6)」는 일본이 옛 조선총독부의 소유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과거 식민지였던 섬과 현재 일본의 섬을 구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부령의 제2조는 “정령(政令) 291호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부속 도서는 왼쪽에 열거한 도서 이외의 도서를 말한다”고 명기하고 제외하는 섬에서 “3 울릉도, 독도 및 제주도”를 명기했다. 여기에서 언급된 「정령 291호」⁵⁶는 1949년 일본 내각이 제정한 것으로 구 일본 점령지역에 본점을 둔 회사가 소유한 일본 안에 있는 재산 정리에

55 內閣總理大臣, 1951. 3. 「朝鮮總督府交通局長共濟組合の本邦内にある財産の整理に関する政令」, 國立公文書館 소장(A13111592400)

56 「旧日本占領地域に本店を有する会社の本邦内にある財産の整理に関する政令・御署名原本・昭和二十四年・政令第二九一号」, 國立公文書館 소장(2260100)

관한 정령이다. 2조의 1항 2호에는 “본방(本邦: 일본 땅)은 혼슈(本州), 홋카이도 [北海道], 시코쿠(四國), 규슈(九州)와 주무성령(主務省令)이 정한 부속 도서를 말하고”⁵⁷ 있으며 구 일본 점령지역은 만주, 중화민국, 대만, 조선, 사할린, 류큐열도, 남양군도 및 주무성령에서 정하는 그 외의 도서 및 1894년 이후 일본이 점령 또는 통치된 그 외의 모든 지역이라 하고 있다. 이것은 1943년 11월 카이로선언과 1945년 포츠담선언을 통해 일본이 강점한 영토에 대한 반환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연합국의 영토 처리 조항을 따르고 있다. 1947년 3월에 작성된 강화조약 초안 영토 조항 제1조에 “일본의 영역은 청일전쟁 직전 1894년 1월 1일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초안은 제4조에서 “일본은 리앙쿠르트 암(독도)을 포함한 조선에 대한 권리·권원을 포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⁵⁸

정령 시행에 관한 명령서에는 제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부속 도서는 아래와 같은 도서 이외의 도서를 말한다.⁵⁹

- 1 쿠릴열도, 하보마이(스이쇼, 유리, 아키유리, 시보쓰 및 다리쿠를 포함) 및 시코탄
- 2 오가사와라제도 및 이오열도
- 3 울릉도, 다케노시마(竹の島, 독도) 및 제주도
- 4 북위 30도 이남의 남서제도(류큐열도 제외)
- 5 오토제도, 오키노토리시마, 미나미토리시마 및 나카노토리시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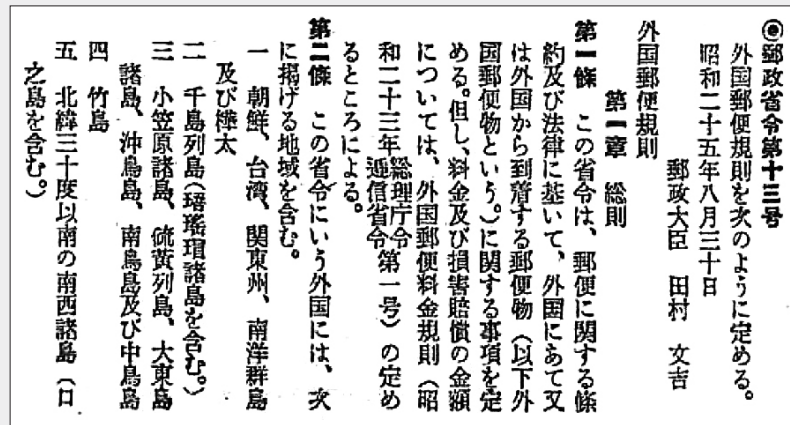
1948년 8월 31일 『총리부령·체신성령』 제1호는 “외국 우편에 관한 요금을 정한다”고 하면서 독도를 외국에 포함하고 있고 1950년 8월 30일 『우

57 「旧日本占領地域に本店を有する会社の本邦内にある財産の整理に関する政令(昭和二十四年八月一日政令 第二百九十一号)」, 2쪽.

58 국사편찬위원회, 2008, 『독도자료 1』, 6~7쪽.

59 「旧日本占領地域に本店を有する会社の本邦内にある財産の整理に関する政令の施行に関する命令(昭和二十四年八月一日 法務府令・外務省令・大蔵省令・厚生省令・農林省令・通商産業省令・運輸省令 第一号)」, 28쪽.

정성령』 제13호는 우편에 관한 조약 및 법률에 따라 독도를 외국으로 정의하고 있다(그림 1).⁶⁰ 독도를 조약의 대상이 되는 외국으로 규정하여 행정권에서 제외하고 있어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고 한국의 영토임을 국제법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그림 1〉 「우정성령」 제13호

이런 정령들은 행정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구 일본 점령지역과 일본 영토의 범주를 구분하여 영토를 정의하고 있다. 또한 미군정이 끝난 후에 공포되었고, 지금도 사법성령 제77호(1946. 8. 27), 대장성령 제4호(1951. 2. 13), 총리부령 제24호(1951. 6. 6) 등의 법령은 현행 법령으로서 유효하고 미군정 이후의 개정 과정에서도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유지되었다.

이들 법령은 「조선총독부 교통국 공제조합의 일본 내에 있는 재산의 정리」라는 작성 목적을 갖고 있어서 일본 정부가 재산 공제를 위해 국내법으로 만든 것이고 강화조약이 체결되기 이전이라서 적용 지역에 관해서는 SCAPIN 677호를 따르고 있다. 그 이후 일본 정부는 SCAPIN 677호를 계

60 『官報 号外 第百六号』, 「郵政省令 第13号」, 昭和25年 8月 30日, 1쪽.

승하면서 대장성령 99호에서 쿠릴열도와 독도를 일본의 부속 섬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것은 쿠릴열도와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가 아닌 것을 증명하는 것이며 우경화된 일본 정부나 정치가들이 강화조약에서 연합국이 독도를 일본령으로 인정해줬다는 허위 사실은 이 법령들에 의해 반증할 수 있다.

그리고 1952년 8월 5일 대장성령 99호는 독도를 일본의 부속 섬에서 제외하고 있고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와 독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다. 그 외 1952년 7월 26일 외무성 고시 34호, 1953년 6월 19일 시마네현 고시 제 352호, 1954년 6월 9일 자위대법 제84조⁶¹에서도 일본 정부는 독도를 일본의 부속 섬에서 제외하고 있어 강화조약 체결 이후 일본 정부가 제정한 법령들은 국제법적으로 독도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반환되었음을 입증하고 있다.

IV. 일본 고유영토설에 대한 정치적 분쟁화

1. 전후 일본 고유영토설에 대한 방침

일본 정부는 1945년 11월 외무성 조약국 내에 ‘평화조약문제연구간사회’를 신설하고 평화조약체결문제 기본방침, 동 문제의 향후 결과 관측 등 약 30항목의 연구 제목을 정하였다. 간사회는 16회 회의·심의 끝에 1946년 5월에 조약체결기본문제, 일본준비시책, 방침, 연합국조약안 상정 및 대처방침에 관한 보고서를 채택하였다.⁶²

평화조약체결문제 기본방침은 일본 고유 영토를 확보하기 위해 역사적 근거로 한 이론 무장에 중점을 두었다. 포츠담선언 제8항은 일본의 영토에

61 김신, 2015, 앞의 글, 310~322쪽.

62 下田武三, 1985, 『戦後日本外交の証言—日本はこうして再生した(上)』, 行政問題研究所, 51쪽.

대해 “카이로선언 조항은 이행해야 하고 일본의 주권은 혼슈, 홋카이도, 규슈 및 시코쿠와 연합국이 결정하는 모든 소도에 국한될 것”이라는 규정이 있다. 그리고 카이로선언은 동맹국의 영토 확장을 금지한다는 문구도 있다. 일본은 동맹국의 영토 확장 금지를 돌파구로 삼고 오키나와, 오가사와라제도, 쿠릴열도의 반환을 실현하려고 노력하였다. 결국 연합국이 카이로선언에서 영토적 야심이 없는 것을 선명한 이상, 일본 고유 영토를 반환받는 것을 당연한 논리 구성으로 여겼다.⁶³ 영토 문제에 관해 외무성은 역사적, 인종적으로 일본 고유 섬이었던 지역, 따라서 카이로선언이 말하는 “폭력과 탐욕으로 갈취 또는 점령”한 지역이 아닌 부분에 영토 귀속 주장의 근거를 삼았다.⁶⁴

연구간사회는 영토 문제를 배상 문제와 함께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에 넣어 연합국이 영토적 야심을 갖지 않는다고 한 카이로선언에 착안하여 일본 고유 영토를 반환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구상 아래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보고서는 조약 전문가인 외무성 조약국 가와카미가 각 영토의 사실을 조사하여 상세하게 작성하였다.

특히 이 보고서는 시모다(下田武三) 회고록에 따르면 미국대사대리 시볼트의 도쿄사무소에 야밤에 몰래 방문하여 수시로 전달했다고 한다.⁶⁵ 일본은 조약당사국으로서 이처럼 연합국에 대해 충분히 일본 주장을 설득할 기회를 갖고 있었고 미국은 일본 측 자료를 참고하여 강화조약을 체결했다고 과언할 수 있다. 일본 외무성 강화조약문제 작업 분담에서 시모다는 영토 문제에 관한 의견 조율 작업을 하였다.⁶⁶

1949년 7월 일본 정부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입장을 정리하여

63 下田武三, 1985, 앞의 글, 53쪽.

64 장박진, 2011, 「대일평화조약 형성과정에서 일본 정부의 영토 인식과 대응 분석」, 『영토해양연구』, 63쪽.

65 下田武三, 1985, 위의 글, 54쪽.

66 일본 외무성, 2006, ‘평화조약문제작업분담’(1949.11.12), 『일본외교문서: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준비대책』, 453~454쪽.

미국 정부에 송부했고, 미국을 일본의 대변자로 만들기 위해 미국 측에 일본에 유리한 자료를 건네주었다. 이에 따라 일본은 1946년 가을 무렵부터 영토 설명 자료 정리 작업을 시작하여 1950년 12월까지 총 36권에 이르는 설명 자료를 작성하여 미국 국무부에 제출했다. 이 중 영토 문제 자료는 총 7권이 만들어졌다.⁶⁷ 그중 팸플릿 『일본 본토 주변의 소도(Minor Islands Adjacent to Japan Proper)』의 「제4부 태평양 및 일본해의 여러 섬들(PART IV. Minor Islands in the Pacific, Minor Islands in the Japan Sea)」이 1947년 6월에 완성되어 9월 23일, 연합국최고사령관 외교국을 통해서 국무부에 전달되었다.⁶⁸ 이 문서는 “일본이 옛날부터 울릉도와 독도를 관계해 왔고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지사가 독도를 오키(隱岐)의 관할권으로 한다고 공표해서 공식적으로 일본 영토가 되었다”는 것과 “독도는 한국식의 이름도 가지고 있지 않고, 한국에서 작성한 지도에는 독도가 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은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⁶⁹ 이렇게 해서 일본은 전후 처음으로 독도뿐만 아니라 울릉도에 대한 영유권을 미국 측에 공식적으로 제기해서 울릉도까지 침탈하려는 야욕을 가지고 있었다.

일본이 고유영토설을 주장하는 이유는 미국 국무성의 이해를 얻어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식시키고⁷⁰ 강화조약에 독도를 기술하지 않은 것으로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정받기 위한 정치적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독도에 대한 외무성의 입장은 가와카미의 『다케시마의 영유(1953)』와 『다케시마의 역사 지리학적 연구(1966)』, 오구마 료이치(大熊良一)의 『竹島史稿(1968)』 등의 연구 서적에 잘 나타나 있고, 시마네현의 입장은 다무라 세지부

67 西村熊雄監修, 1971, 「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 『日本外交史 第27巻』, 鹿兒島研究所出版会, 25~26쪽.

68 鈴木九萬監修, 1973, 「終戦処理から講和まで」, 『日本外交史 第26巻』, 鹿兒島研究所出版会, 173~174쪽.

69 Internal Affairs of Japan, 'Minor Islands Adjacent to Japan Proper', POLAD to the Secretary of State, 894,014/ 9-2347, RG 59.

70 内藤正中·金柄烈, 2007, 앞의 글, 104쪽.

로[田村清三郎]의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연구(1954)』 등의 연구서에 잘 나타나 있다. 이 시기 연구의 특징은 내셔널리즘적 측면에서 일본 영토라는 논리를 개발하는 데 주력했던 점이다. 이 연구가 나중에 발전해서 외무성의 「다케시마를 이해하기 위한 10포인트(2008)」로 정리되었다.

일본 정부의 고유영토설의 근간이 되었던 외무성 조약국 가와카미의 저서인 『다케시마의 역사 지리학적 연구』 후기에 독도 연구의 기본적 태도가 나온다.

전후 일본 영토의 귀속에 관해서는 그것이 다시 새로운 분쟁의 요인이 되지 않도록 연합국의 선의와 양식(良識)을 기대할 따름이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포츠담선언 및 카이로선언을 보면 폭력적 탐욕으로 일본이 약취하여 새로이 확장한 영토는 반환시키지만 일본 고유 영토로 인정해야 할 지역은 할양의 대상이 아니며 그 방침으로 극동의 질서 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단 그 구체적인 적용으로서 강화조약의 영토 조항에서는 반드시 그 방침이 명확하게 관철되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강화조약이 발효해서 10년 이상 경과된 오늘날, 완전히 해결을 보지 못한 지역이 있다.
…(중략)… 다케시마(독도)도 역시 이러한 미해결 지역의 하나로 …(후략)…⁷¹

독도를 미해결 지역으로 보는 상기의 내용은 일본 외무성의 견해로 한국이 독도를 영토 주권 행사하고 있으며 독도가 일본 영토의 할양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이 고유영토설을 주장하는 데 모순이 있다. 그리고 가와카미가 저서인 『다케시마 영유』에서 강화조약을 보더라도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것은 명백하다고⁷² 해석하는 행위는 위 글에서 독도를 미해결 지역으로 기술한 내용과 모순된 논리이다. 또한 가와카미는 “강화조약에 일한병합(1910) 이전의 일본 영토인 토지를 독립한 한국에게 할양하는 내용은 포함

71 川上健三, 1966, 앞의 글, 296쪽.

72 川上健三, 1953, 『竹島の領有』, 外務省条約局, 76쪽.

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독도는 일한병합 이전에 이미 시마네현 소관에 정식으로 편입했기 때문에 다시 분리 또는 독립해야 할 한국의 관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⁷³ 이런 논리는 기존 고유영토설에 모순되는 국제법 논리이다.

이런 논리는 1960년도 예산심사, 1964년 중의원 지방행정위원회 국제조사 자료로도 인용되었다.

1960년 3월 4일 외무성은 1960년도 예산심사를 위해 별지의 자료가 필요하여 급히 참의원예산위원장에 제출하였다. 이 별지에는 쿠릴 4도와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임을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문서 자료가 있다고⁷⁴ 기술하면서 가와카미의 저서인 『다케시마 영유』를 자료로 제출하였다.

1964년 10월 외무성 독도의 영유에 대한 책자에는 “독도는 옛날부터 일본 고유 영토로 각결정에 의한 시마네현 고시는 일본이 근대국가로서 독도를 영유하는 의사를 재확인하고 이것을 일본의 근대행정구역 안에 편입하였다”는 주장이 나온다.⁷⁵ 이 책자를 작성했던 계기는 독도 영유 문제에 관한 자료를 열람하고 독도를 국제조사의 범위에 삽입하는 것에 대해 각회 국제조사 때 논의하기 위해서였고, 중의원 지방행정위원회가 외무성에게 심의자료로 요청한 자료였다.⁷⁶ 결국 독도는 일본 국제조사에서 제외되었다.

이 시기의 일본 고유영토설은 2008년 2월 외무성의 「다케시마를 이해하기 위한 10포인트」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었다.

SCAPIN 677호, 1033호에서 독도를 일본에서 제외하는 내용은 일본의 고유영토설을 부정하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일본 외무성의 「다케시마 문제의 의문을 해소하는 Q&A」 Q6에서 연합국 최고

73 川上健三, 1953, 앞의 글, 77쪽.

74 外務省, 1960, 「別紙 外務事務次官提出」.

75 外務省, 1964, 「竹島領有問題」.

76 外務省, 1964, 위의 글, 1쪽.

사령관이 독도를 일본 영역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는 연합국 최고사령관이 일본 영토를 처분할 권한은 없다고 답변하고 있다.⁷⁷

현재 일본 영토는 제2차 세계대전 후 1952년 4월 발효된 강화조약에 의해 법적으로 확정되었다⁷⁸고 일본 외무성에서 밝히고 있다. 일본 정부는 강화조약 내용을 영토정책 기본으로 삼고 있으며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일본 영토는 제2차 세계대전 후 1952년 4월에 발표된 강화조약에 의해 법적으로 확정되었다”고 표기하고 있다.⁷⁹

일본은 1951년 9월에 강화조약을 조인하고, 그 강화조약의 제2장 제2항(c)에서 쿠릴열도 포기에 동의했다. 물론 이 조약의 항목에는 독도가 없음에도 일본 정부는 연합국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정해주었다고 역지 주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조어도(센카쿠제도)가 땡호제도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도 부정확하게 처리하고, (b), (c)에서 일본이 강탈한 영토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면서 어느 국가에 귀속한다는 내용을 빼어 미국 중심의 연합국은 동북아 지역의 영토 귀속 문제를 애매모호하게 처리함으로써 영토 분쟁의 불씨를 남겨두었다.

마지막 단계에서 미국은 강화조약 내용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규정하려고도 하지 않았고 독도를 일본 영토 외로 생각하는 영국과 협의해야 하는데 미국은 영국을 납득시킬 수 있는 자료를 가지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미국은 영국과의 협의를 보류한 것으로 보인다.⁸⁰ 따라서 독도에 대한 양국의 견해는 엇갈린 채 강화조약이 조인됐으므로 강화조약상 독도에 관해 아무런 해석도 못한다. 그리고 SCAPIN 677호의 귀결로 한국이 독도를 통치하

77 일본 외무성, 앞의 글, www.kr.emb-japan.go.jp/territory/takeshima/pdfs/takeshima_point.pdf (검색일: 2018. 3. 14).

78 일본 외무성, 「일본 영토를 둘러싼 정세」, www.mofa.go.jp/mofaj/territory/page1w_000013.html#q1 (검색일: 2017. 12. 30).

79 일본 외무성, 위의 글, www.mofa.go.jp/mofaj/territory/page1w_000013.html (검색일: 2017. 12. 30).

80 박병섭, 앞의 글, 186~188쪽.

고 있는 현상은 강화조약에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다.⁸¹

2. 일본 측 구술서에 표기된 고유 영토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대해서 「일본 정부 견해(1), (2), (3)」 등을 통해서도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라고는 주장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게 된 시기는 1959년이며, 그 이전에는 일본이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기존 일본 정부 견해의 특징은 근대 국제법상 영토 취득의 요건을 강조하면서 국가로서의 영유 의사, 영유 의사의 공시, 적당한 지배 권력 확립이라는 국제법 근거를 강조하고 있다.

1953년 7월 13일 일본 정부 견해(1)에서 “국제법상 영토 취득의 필요 요건으로 영토 취득 의사와 영토 주권 행사를 열거하면서 영토 취득 조치로서 독도라는 무주지를 선점했다”고⁸² 주장하고 있다.

1954년 2월 10일 일본 정부 견해(2)에서 “국제법상 무주지 선점의 모든 요건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옛날부터 일본 영토의 일부를 이루고 있었다”⁸³고 주장하고 있다.

1954년 9월 25일 한국 정부에 보낸 일본 정부 견해(3)에서 “독도 문제는 국제법의 기본적 원리 해석을 포함한 영유권 분쟁이므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최종 결정을 위임하자”고 제안해왔다. 국제사법재판은 국내법과는 달리 상대 국가가 위임을 승낙해 응소하지 않으면 안건이 성립되지 않는다. 1954년 10월 28일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 견해에 대한 답변서⁸⁴를 보내어 한국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없다며 일

81 박병섭, 앞의 글, 199쪽.

82 외무부, 1977, 앞의 글, 13쪽.

83 외무부, 1977, 위의 글, 43쪽.

84 일본 정부의 제안은 잘못된 주장(False Claim)을 법률적 위장(Judicial Disguise)으로 꾸미려는 시도에 불과한

본 정부의 제의를 단호하게 거부하였다. 한국 정부는 이때 일본 정부가 마치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가진 것처럼 전제하면서 존재하지도 않는 ‘독도 영유권 분쟁’을 만들어 한국과 대등한 입지에 서려고 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한국 정부의 입장은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 도서로서 한국 영토이며, 이 사실은 SCAPIN 677호가 증명해주었다고 판단했다. 국제법상 합법적 기구인 연합국 최고사령관이 SCAPIN 677호로 1946년에 독도를 울릉도와 함께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판단해 일본 영토에서 제외시키고 한국에 반환했으므로, 국제법상으로 독도와 울릉도는 명백히 한국 영토이다. 그래서 일본이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해도 한국은 이에 응소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1954년 말 나타난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의 제소 방침은 1955년 이후에도 변함없이 나타났고 국제법 근거로 독도 문제를 국제적으로 호소하면서 국제 여론이 호전될 때까지 기회를 기다리는 것⁸⁵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독도 분쟁의 경위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요구, 한국 측의 거부 자세만 기록하고 있다.

1956년 9월 20일 구술서에는 독도를 둘러싼 경위를 간단히 설명하고 그 대책을 제시했는데, 그간 구술서를 통한 교섭을 진행해왔으나 더 이상 진전이 없어 고문서 및 국제법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정식 제소할 생각을 밝히고 있다. 이 무렵부터 일본 측은 진지하게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구체화시키는 것을 내부적으로 구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58년 4월 재개된 한일회담에서 일본은 한일 국교 정상화라는 중요한

것이다. 한국은 독도에 대해 처음부터 영유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한국은 어떠한 국제사법재판소에서도 영유권 증명을 구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영토 분쟁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가짜 영토 분쟁’을 꾸며내고 있는 것은 일본이다.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출하자고 제안함으로써, 일본의 입지를 한국과 대등한 위치에 두려고 획책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타협의 여지 없이 완전하고 분쟁의 여지 없는 한국의 독도 영유권에 대하여 일본은 유사 주장을 설정하려고 획책하고 있는 것이다. 외무부, 1977, 앞의 글, 119쪽.

⁸⁵ 동북아역사재단, 2011, 「대한관계 당면의 대처방침(안)」, 『1952~1969 독도관련 일본측 외교문서 1권』, 254쪽.

안건을 위해 독도 문제를 따로 처리하는 유연성을 보였다.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방식을 구체화시키지 않았던 이유는 그 당시 극동아시아의 안보체제를 고려해 한일관계 악화를 피하기 위해서였다.

1958년 4월 일본의 회담 훈령 기본 관계 수립 문제에서 독도 문제는 회담의 조기 타결 진행을 위해 별도의 해결이 필요하다고⁸⁶ 명기하고 있다. 한국과 협상에 임하는 일본 측의 기본 방침에서 독도 문제는 한일회담의 의제는 아니지만 정부 간 타협을 통해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신청에 한국 측이 응소하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한다는 지침을 가지고 있었다.

일본 정부는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증명하는 역사적, 국제법상의 견해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와 함께 자주 구술서를 송신했고 국교정상화 회담을 방해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독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국교정상화를 하면 제대로 된 정상화가 되지 않고 미래에 양국 간 분쟁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 해결책에 대해 동의해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⁸⁷

한일회담 교섭 중인 1959년 1월 7일, 일본 정부의 4번째 견해를 보내왔고 이때부터 일본 정부는 고유 영토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독도)가 오래전부터 일본의 고유 영토임을 예전부터 명확히 해왔지만 이 입장을 여기서 재차 강조한다.

원래 국제법상 어떤 지역이 이전부터 한 국가의 고유 영토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그 국가가 문제의 지역에 대해 어떻게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경영해왔는가가 가장 결정적인 요소로 되어 있다. 일본은 예전부터 다케시마에 대해 정확한 식견을 갖고 있었으며, 이를 일본 영토로서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경영해왔다.(중략)

그러므로 마쓰시마 개척원에 대한 심의에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메이지 초기에도 일본 정부가 다케시마를 일본 고유 영토로 인식하고 논의를

⁸⁶ 동북아역사재단, 2011, 『1952~1969 독도관련 일본측 외교문서 2권』, 52쪽.

⁸⁷ *Ibid.*, 140쪽.

했다는 것이다.

시마네현 고시는 일본이 근대국가로서 옛날부터 일본의 영토인 다케시마에 대한 영유 의사를 재확인하고 다케시마를 일본의 근대 행정 구분 안에 편입한 사실을 공시한 것이다(밑줄은 인용자가 그었음). 청일전쟁 이후에 벌어진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 행위의 일환이 아니며, 또 1904년 한일협약에 따른 외교 고문의 임명은 다케시마 편입의 유효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한국이 시마네현 고시보다 먼저 다케시마를 유효하게 경영하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동도의 편입은 침략 행위가 아니다.⁸⁸

이때부터 일본 외무성은 일본 정부 견해(4)에서 고유영토설과 무주지 선점론을 양립하는 논리 전개 양상을 보였다. 일본 정부가 1959년 이전까지 국제법에 근거한 무주지 선점론을 주장하다가 1959년 1월부터 고유영토설을 주장하는 것은 서로 상반되는 논리 전개이다. 이런 주장은 동양의 화이질서에서 나온 영토 개념과 유럽식 국제법적 영토 논리와 상반되는 모순점이 있고, 독도 영토 편입을 영유권 재확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고유 영토라는 의미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제국주의 침략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역사를 왜곡하는 행위라 볼 수 있다.

1952~1976년 일본 측의 구술서(표 2)에 나오는 영토 표현을 보면 일본은 독도를 주로 일본의 영토(a part of Japanese territory, Japanese territory)로 표현하고 있으며 1953년, 1954년, 1955년, 1962년에는 독도를 ‘일본의 불가분의 영토(an integral part of the Japanese territory)’라고 표현하고 있다. 1962년 7월 13일 일본 측 구술서에서는 국제법과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고유영토설을 주장하고 있다.⁸⁹ 1959년 1월 일본 측 일본 정부 견해(4)에서 처음으로 ‘일본 고유 영토(日本固有の領土)’라고 표기하면서 영어 번역은 ‘Japan’s inherent

88 외무부, 1977, 앞의 글, 234쪽.

89 외무부, 1977, 위의 글, 234쪽.

90 외무부, 1977, 위의 글, 일본 측 구술서 중 영토 표현 정리.

〈표 2〉 일본 측 구술서의 영토 표현⁹⁰

날짜	일본 구술서 내용
1952. 1. 28.	Japanese territory
1952. 4. 25.	Japanese territory
1953. 6. 22.	part of the Japanese territory
1953. 7. 13.	일본 정부 견해(1) an integral part of her territory a part of the Japanese territory
1953. 8. 8.	part of the Japanese territory
1953. 8. 31.	part of the Japanese territory
1953. 10. 3.	a part of the Japanese territory
1954. 2. 10.	an integral part of the Japanese territory
1954. 2. 10.	일본 정부 견해(2) a part of territory of Japan Japan's ownership of Takeshima
1954. 6. 14.	a part of Japanese territory
1954. 8. 26.	territory of Japan part of Japanese territory
1954. 9. 24.	Japanese territory
1954. 9. 25.	일본 정부 견해(3) a part of the Japanese territory
1954. 10. 21.	territory of Japan
1954. 11. 29.	a territory of Japan an integral part of Japanese territory
1955. 8. 16.	territory of Japan an integral part of Japan
1956. 9. 20.	a part of the territory of Japan
1957. 5. 8.	Japanese territory
1957. 12. 25.	a part of Japanese territory
1958. 10. 6.	a territory of Japan
1959. 1. 7.	일본 정부 견해(4) Japan's inherent territory(日本固有の領土)
1959. 9. 23.	a part of the Japanese territory
1960. 12. 22.	a part of Japanese territory
1961. 12. 25.	a part of Japanese territory
1962. 2. 10.	the Japanese territory
1962. 7. 13.	an integral part of the Japanese territory a part of Japanese territory
1963. 2. 5.	part of Japanese territory
1964. 3. 3.	part of Japanese territory
1964. 11. 12.	a part of Japanese territory

1965. 4. 10.	a part of Japanese territory
1969. 10. 28.	a part of Japanese territory
1970. 11. 13.	a part of Japanese territory
1971. 9. 6.	a part of Japanese territory
1972. 4. 1.	Japanese territory
1972. 10. 26.	Japanese territory
1973. 4. 25.	a territory of Japan
1975. 11. 19.	a part of Japanese territory
1976. 10. 25.	a part of Japanese territory

territory'라고 하고 있다. 일본 측의 구술서를 보면 고유 영토라는 표현은 한 번밖에 사용을 안 했고 1959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고유 영토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 견해와 구술서에서 일본의 영토에 대한 영어 번역은 주로 일본 영토(a part of Japanese territory)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다.

1990년 외무성의 연차보고서인 『외교청서』에서 일본 고유 영토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는데 고유 영토를 영어로 'an integral part of Japan, an inherent part of Japan'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런 영어 표현은 외무성 구술서와 일본 정부 견해의 표현을 답습한 것이다.

그러나 'integral'은 일본의 불가분의 영토라는 뜻으로 고유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단순히 현재 일본 영토의 불가분한 부분이라는 의미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inherent'라는 의미는 'permanent and essential(영구적이고 본질적)'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만 거의 국가의 영토는 영구적이지도 본질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부적절하다. 이것보다는 'the historical territory of Japan'이라는 표현이 좋지만 역사적인 영토라는 것도 시대를 특정시키지 않으면 의미가 없고 일본 고유영토설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역사학자인 스잇펠 교수는 고유 영토라는 언어는 "애매한 언어이고 그것은 역사적 언어도 국제법적 언어도 아니다(that word is not for history, not for international law)"라고 말했다.⁹¹

문부과학성 학습지도요령에 고유 영토가 처음으로 나타난 것은 2008년

3월로 일본 영역의 특색과 변화를 취급하여 일본의 지역 구성을 대관하기 위해서이다. 그 내용으로 일본 영역의 특색과 변화에 대해 일본의 해양국가로서의 특색을 취급하는 동시에 북방영토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것을 일본 영토 문제에 착목시키도록 강조하기 시작하였다.⁹²

2008년 7월 「중학교 학습지도요령해설 사회편(지리 분야, 2014년 1월 일부 개정)」에 “북방영토와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이지만 현재 러시아와 한국에 의해 불법 점거되어 있기 때문에 북방영토는 러시아에 반환을 요구하고 있고 독도는 한국에 누차에 걸쳐 항의를 한다”는 내용이 삽입되었다.

한편 2009년 12월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해설 지리·역사편(일본사 A, 2014년 1월 일부 개정)」에서 “메이지 초기 일본 영토가 러시아와의 사이에서 국제적으로 확정되었고, 일본이 국제법상 정당한 근거에 의해 독도, 센카쿠제도를 정식으로 편입했다”는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⁹³

이런 내용이 지속되었다가 2017년 3월에 문부과학성의 고유 영토에 대한 개념이 변하였다. 그 정의는 독도와 북방영토, 센카쿠제도에 대해서는 모두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한 번도 다른 나라의 영토가 되었던 적이 없던 의미로 일본 고유 영토라고 해석하고 있다.⁹⁴

외무성의 17세기 독도 영유권 확립과 독도 영유권 재확인이라는 주장은 서로 상반되는 논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부과학성에서 무주지 선점론을 고유영토설로 정의하는 행위는 일본의 고유영토설 근거를 약화시키며

91 名嘉憲夫, 2013, 앞의 글, 31쪽.

92 文部科学省, 「学習指導要領の変遷」, 3쪽, www.mext.go.jp/b_menu/shingi/chukyo/chukyo3/004/siryo/_jicsFiles/afidfile/2011/04/14/1303377_1_1.pdf#search=%27%2E5%AD%A6%E7%BF%92%E6%8C%87%E5%B0%8E%E8%A6%81%E9%A0%98%E3%81%AE%E5%A4%89%E9%81%B7%27 (검색일: 2018. 3. 12).

93 文部科学省, 위의 글, 6쪽.

94 文部科学省 初等中等教育局 教育課程課幼児教育課, 2017. 3. 31, 「学校教育法施行規則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案並びに幼稚園教育要領案, 小学校学習指導要領案及び中学校学習指導要領案に対する意見公募手続(パブリックコメント)の結果について」, 13쪽, search.e-gov.go.jp/servlet/Public?CLASSNAME=PCMMSTDETAIL&id=185000878&Mode=2 (검색일: 2018. 3. 11).

일본 국민에게 혼란을 주는 논리이다. 일본 정부는 이미 울릉도 쟁제, 다케시마 도해 금지령, 「태정관지령」을 통해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은 본래부터 존재하지 않았고 영유권 재확인, 무주지 선점론의 주장은 성립할 수가 없다.

고유 영토는 센카쿠제도, 쿠릴열도, 독도에 대해 일본에서 영토 문제가 논의될 때 사용되는 단어이다. 지금 일본에서 고유 영토는 모든 의문을 제기하는 개념으로 정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고유영토설은 1959년에 만들어진 정치적 용어로 1950년대 러시아와의 쿠릴열도 분쟁에서 만들어진 논리와 함께 하나의 세트가 되었다.

강화조약에서 일본이 포기한 쿠릴 범위에 남쿠릴열도인 쿠나시르, 에토로후가 들어가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일본 정부의 인식과 딜레스 제안에 따라 쿠릴 4도 일괄 반환을 국가 정책으로 내세울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감안해 1950년대부터 내세웠던 것이 ‘북방영토’라는 용어였고 나중에 일본 고유 영토라는 개념으로 발전하였다.

비현실적인 딜레스 제안 배경에는 일본의 쿠릴열도 문제가 해결되면 다음에는 오키나와 반환을 요구하는 우려를 해소하고 러일 간 영토 문제라는 분쟁 상태를 지속시키는 것이 미국에 많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⁹⁵

미국은 러일 양국이 급속하게 우호 관계로 개선되는 것에 강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고 러일 간의 영토 문제에 개입하여 양국 우호 관계 개선을 방해하였다. 이런 분위기로 인하여 일본 외무성은 러시아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기 시작했다.

일본은 강화조약에서 일본이 포기한 쿠릴열도 중에 쿠나시르, 에토로후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주장은 1951년 3월 「하보마이 반환간청에 관한 결의」에서 하보마이를 일본 홋카이도 일부로 보고 일본

⁹⁵ 豊下橋彦, 2012, 『尖閣問題とは何か』, 岩波書店, 105쪽.

고유 영토라고 정의한 데에서 최초로 나왔다.⁹⁶ 그리고 1956년 2월 11일 모리시타 정부차관은 국회답변 정부통일견해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강화조약에서 언급하는 쿠릴열도에 쿠릴 2도(쿠나시르, 에토로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 일본 정부의 견해이다. 그리고 쿠나시르, 에토로후는 일본 고유 영토이며 쿠나시르, 에토로후가 일본의 영토인 것은 1855년 시모다 조약에 의해 러시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러시아 측은 영토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일본은 쿠나시르, 에토로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양국 간에 아무런 진전이 보이지 않았다.

1950년대 국회의사록 내용을 보면 일본 국회의원들의 독도에 대한 인식이 명료하게 나온다. 다수의 국회의원은 SCAPIN 677호에서 일본의 영역 이외로 된 일본 고유 영토를 되찾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지만 그 고유 영토 안에 남쿠릴열도는 넣어도 독도 명칭은 넣지 않았다. 치마 사부로[千葉三郎]는 쿠릴열도, 오가사와라, 오키나와를 역사적으로도 민족적으로도 일본 고유 영토라고 했으며⁹⁷ 니시무라 에이이치[西村榮一]는 일본 고유 영토로 쿠릴열도(치시마), 남사할린, 오키나와 및 오가사와라⁹⁸를 언급했다. 그리고 고다히라 다다시[小平忠]는 일본 고유 영토로 남사할린, 쿠릴열도 혹은 오키나와, 오가사와라를 언급했고⁹⁹ 미우라 가즈오[三浦一雄]는 일본의 민족적 고유 영토인 남사할린, 쿠릴열도, 하보마이, 시코탄 등의 반환, 오가사와라제도, 아마미대도 및 오키나와의 완전 주권 회복¹⁰⁰에 대해 발언했지만 1950년대에는 일본에서 독도를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쿠릴열도(북방영토)라는 것은 하보마이, 시코탄, 쿠나시르, 에토로후의 4도

⁹⁶ 内閣, 1951. 3, 「齒舞諸島返還懇請に関する決議」, 国立公文書館 소장(A13111486200)
⁹⁷ 衆議院本會議, 1951. 5. 10.
⁹⁸ 參議院平和條約及日米安全保障條約特別委員會, 1951. 11. 26.
⁹⁹ 衆議院豫算委員會, 1953. 7. 3.
¹⁰⁰ 衆議院本會議, 1953. 6. 17.

를 지칭하지만, 1964년 6월 외무차관 통지에 의해 이전에 쿠나시르, 에토 로후를 가리켰던 남쿠릴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고 쿠릴 4도가 포함된 '북방영토'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였다.¹⁰¹ 북방영토는 러일 교섭 때에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국내적으로도 통용되지 않았던 용어였지만,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정리해가는 도중에 정치적 용어로 발전하여 쿠릴 4도를 북방영토로 부르게 된 것이다.

V. 맺음말

일본의 고유 영토 개념은 판도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 개념은 동양의 화이질서에서 나왔고 유럽식 국제법 영역을 뜻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본이 17세기 독도 영유권을 확립했다는 주장과 무주지 선점론에 따라 근대 국제법적으로 영토 편입을 했다는 주장은 서로 상반되는 내용으로 고유 영토 개념에 충돌된다. 일본은 이런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영토 편입을 영유권 재확인으로 입장을 바꿨는데 이런 주장은 일본 영토의 역사적 근원과 국제법적 근원을 약화시키는 모순된 행위이며 시대의 필요성에 의해 제기된 정치적 용어이다.

1950년대 이후 일본 정부가 쿠릴열도, 센카쿠제도, 독도를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 섬들이 역사의 어느 시점에서 획득되었던 토지임에 지나지 않고 그 전에는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시기 일본 정부는 일본 고유 영토를 확보하고 포츠담선언과 강화조약의 영토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고유영토설을 만들어냈다.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이며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 독도의 영유권을 재확인했다는 주장은 일본 정부의 자체 모순을 드러냈고, 동양의 화이질서에서 나온 영토 개념과 유럽식 국제법적 영토 논리가 상반되는 모순이 생겼다.

101 岩下明裕, 2005. 『北方領土問題』, 中公新書, 204쪽.

1959년 1월 일본 측 일본 정부 견해⁽⁴⁾에서 처음으로 '일본 고유 영토(日本固有の領土)'라고 표기하면서 이때부터 일본 외무성은 고유영토설과 무주지 선점론을 양립하는 논리 전개 양상을 보였다. 일본은 한일 간 구술서 왕래를 통해서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려는 정치적 분쟁을 시도하였고 그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고유영토설을 만들어냈다. 전후 일본 외무성의 영토 문제에 대한 연구는 내셔널리즘적 측면에서 일본 고유 영토라는 논리를 개발하는 데 주력하였고 이 연구가 나중에 발전해서 외무성의 「다케시마를 알기 위한 10포인트」로 정리되었다.

이런 일본 정부의 논리는 1946~1954년 대장성 고시, 사법성령, 대장성령 등의 일본 법령들로 반박할 수 있다. 이 법령들은 일본 정부가 재산을 정리를 위해 만든 국내법으로 독도를 외국으로 분리하고 있다. 그리고 이 법령들은 강화조약 체결 전후 SCAPIN 677호를 계승하고 있으며 대장성령 99호에서 쿠릴열도와 독도를 일본의 부속 섬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것은 쿠릴열도와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님을 증명하고 있으며 이런 법령들을 통해서 독도가 국제법적으로 일본에서 한국으로 완전히 반환되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그리고 독도에 대한 일본의 고유영토설은 1959년 이후 개발된 정치적 용어로 1950년대 러시아와의 쿠릴열도 분쟁에서 함께 만들어진 논리이다.

북방영토라는 용어의 사용은 쿠릴 4도 일괄 반환에 의한 국론을 통일하기 위한 전략이었고, 북방영토라는 것은 고유의 영토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치·외교상 필요에 의해 만들어낸 용어에 지나지 않는다. 초창기 일본의 쿠릴열도 정책에서 일본은 쿠릴열도의 범위를 은폐시키면서 북방영토라는 정치적 용어를 만들어내서 쿠릴 2도에서 쿠릴 4도 반환설의 기반을 만들어낸 것이다.

국문초록

고유영토설은 일본 정부가 만들어낸 정치적 용어로 타국과의 영토 분쟁을 나타내는 용어이며 역사적 권원을 부정하는 주장이다. 그래서 1950년대 전후 일본의 영토 처리 문제를 중심으로 고유 영토의 개념에 대해 고찰하면서 고유영토설의 모순점을 분석하였다.

1950년대 이후 일본 정부가 쿠릴열도, 센카쿠제도, 독도를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 섬들이 역사의 어느 시점에서 획득되었던 토지임에 지나지 않고 그 이전에는 일본의 영토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다.

최근에 일본 정부는 다른 나라가 점령하지 않은 영토는 고유 영토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주지 선점론은 고유영토설이 성립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논리는 1950년대 일본 외무성 영토 연구에서 나왔고, 1959년 1월 일본 정부 견해(4)에서 처음으로 ‘일본 고유 영토(日本固有の領土)’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이때부터 일본 외무성은 고유영토설과 무주지 선점론을 양립하는 논리 전개 양상을 보였고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고유 영토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의 영토 개념은 동양의 화이질서에서 나온 것이고 이를 유럽식 국제법 논리에 적용하다보니 상반되는 모순점이 드러났다. 또한 독도 영토 편입을 영유권 재확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의미를 부정하는 것이다.

전후 일본 외무성의 영토 문제에 대한 연구는 내셔널리즘적 측면에서 일본 고유 영토라는 논리를 개발하는 데 주력하였고 이 연구가 나중에 발전해서 외무성의 「다케시마를 이해하기 위한 10포인트」로 정리되었다.

이런 일본 정부의 논리는 1946~1954년 대장성 고시 등의 일본 법령들로 고유영토설을 반박할 수 있다. 이 법령들은 일본 국내법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강화조약 체결 전후에도 SCAPIN 677호를 계승하면서 쿠릴열도와 독도를 일본의 부속 섬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것은 쿠릴열도와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며 이런 법령들을 통해서 독도가 국제법적으

로 일본에서 한국으로 완전히 반환되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또한 독도에 대한 일본의 고유영토설은 1959년 이후 개발된 정치적 용어로 1950년대 러시아와의 쿠릴열도 분쟁에서 함께 만들어졌다. 이 논리는 일본의 우경화와 국내 여론을 통일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략이었고 고유영토설은 정치·외교상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용어에 지나지 않는다.

〈주제어〉

독도, 고유영토설, 정치적 용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판도, 외지, 대장성령, 북방영토, 무주지 선점론

ABSTRACT

An analysis on the Contrariety of the Political Conflicts of the Japanese Inherent Territory Theory in the 1950's

SEO, In won

(Researcher, Asian Soci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The inherent territory theory is a political term creat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This is a term referring to territorial disputes with other countries and is a claim to deny historical authority. Therefore, we analyzed the contrariety of the inherent territory theory by focusing on the problem of territorial disputes in Japan in the 1950s.

Since the 1950s, the Japanese government has claimed that the Kuril Islands, the Senkaku Islands, and Dokdo are inherent territories, indicating that these islands are not Japanese territory that was acquired at any point in history, but were not previously Japanese territory.

Recently, the Japanese government claims that territories that have not been occupied by other nations belong to their own territory, so that the terra nullius theory establishes the inherent territory. This logic came from the study of Japanese foreign ministry in the 1950s and the Japanese government used the first Japanese territory in the Japanese Government Views(4) in January 1959.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in Japan combined the inherent territory theory and the terra nullius theory from this time, and began to use the inherent territory from the 1960s.

The concept of the territory of Japan comes from the Sinocentrism and there are contrarities when applied to the logic of European international law, and the expression 'reaffirming the sovereignty of Dokdo' is a denial of the meaning of Japan's own territory.

This logic of the Japanese government can refute the inherent territory with the Japanese ordinances such as the legislations of the finance ministry's notice of 1946~1954. These laws also exclude the Kuril Islands and Dokdo from Japan's attached islands, succeeding SCAPIN 677 before and after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This proves that the Kuril Islands and Dokdo are not Japanese territories, and these laws prove that Dokdo was fully returned from Japan to Korea under international law.

In addition, Japan's inherent territory theory on Dokdo is a political term developed after 1959, and it is a logic created together in the Kuril Islands

dispute with Russia in the 1950s. This logic is created by Japan's right-wing and political and diplomatic needs.

Keywords

Dokdo, Inherent Territory Theory, Political Terms, San Francisco Peace Treaty, Territory(版圖), Overseas(外地), Legislations of the finance ministry, The Kuril Islands(北方領土), terra nullius

참고문헌

곽진오, 2014, 「일본의 독도고유영토, 무주지선점, 그리고 국제법적 주장의 허구와 한계」, 『일본문화학보 62』.

김 신, 2015, 『일본법이 증명하는 한국령 독도』, 피앤씨미디어.

김호동, 2011, 「일본의 독도 고유영토설 비판」, 『민족문화논총 49』.

동북아역사재단, 2011, 『1952~1969 독도관련 일본측 외교문서 2권』.

송휘영, 2014, 「죽도문제 100문 100답의 죽도도해금지령과 태정관지령 비판-일본의 '고유영토론'은 성립하는가」, 『독도연구 16』, 영남대 독도연구소.

신용하, 2001, 『독도영유권에 대한 일본주장 비판』, 서울대학교출판부.

외무부, 1977, 『독도관계자료집(1)-왕복외교문서(1952~1976)』.

정명준, 2010, 『독도1947』, 돌베개.

池内敏, 2012, 『竹島問題とは何か』, 名古屋大学出版会.

池内敏, 2016, 『竹島-もうひとつの日韓関係史』, 中公新書.

伊藤隆監修·百瀬孝著, 2010, 『史料検証 日本の領土』, 河出書房.

岩下明裕, 2005, 『北方領土問題』, 中公新書.

五百旗頭真, 2010, 『戦後日本外交史』, 有斐閣.

大熊良一, 1968, 『竹島史稿』, 原書房.

外務省, 1960, 「別紙 外務事務次官提出」.

外務省, 1964, 「竹島領有問題」.

外務省條約局, 1933, 『國際法先例彙集(2)』.

梶村秀樹, 1978, 「竹島=独島問題と日本国家」, 『朝鮮研究』, 182号.

川上健三, 1953, 『竹島の領有』, 外務省條約局.

川上健三, 1966, 『竹島の歴史地理学的研究』, 古今書院.

木村幹, 2014, 「書評·池内敏著『竹島問題とは何か』」, 『東洋史研究』, 72卷 4号.

下田武三, 1985, 『戦後日本外交の証言-日本はこうして再生した(上), (下)』, 行政問題研究所.

衆議院外務委員會調査室, 1971, 『日本の領土問題』.

芹田健太郎, 2010, 『日本の領土』, 中央公論新社.

田村清三郎, 1965, 『島根縣竹島の新研究』, 島根縣.

太壽堂鼎, 1998, 『領土歸屬の國際法』, 東信堂.

竹内猛, 2010, 『竹島 = 独島問題「固有の領土」論の歴史的検討 前編·江戸時代から明治時代まで』, 報光社.

竹内猛, 2013, 『竹島 = 独島問題「固有の領土」論の歴史的検討 後編·第二次世界大戦の展開』, 報光社.

竹島問題研究会編, 2014. 3, 「竹島問題百問百答」, 『Will』, 創刊号.

豊下楯彦, 1992, 『日本占領管理体制の成立』, 岩波書店.

豊下楯彦, 2012, 『尖閣問題とは何か』, 岩波書店.

内閣總理大臣, 1951. 3, 「朝鮮總督府交通局共済組合の本邦内にある財産の整理に関する政令」, 國立公文書館 소장.

内藤正中·金柄烈, 2007, 『史的検証 竹島·独島』, 岩波書店.

内藤正中, 2005, 「竹島は日本固有領土か」, 『世界 2005年 6月号』.

内藤正中, 2005b, 「竹島独島問題の問題点(下)」, 『統一評論』(478).

名嘉憲夫, 2013, 『領土問題から国境画定問題へ』, 明石書店.

羽場久美子, 2013, 「尖閣·竹島をめぐる固有の領土論の危うさ-ヨーロッパの国際政治から」『世界 第839号』, 岩波書店.

原貴美恵, 2012, 『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の盲点』, 溪水社.

堀和生, 1987, 「1905年日本の竹島領土編入」, 『朝鮮史研究会論文集 24』.

山辺健太郎, 「竹島問題の歴史的考察」, 『코리아詩論 第7卷 第2号 No. 52』.

和田春樹, 2012, 『領土問題をどう解決するか-対立から対話へ』, 平凡社.

관련 사이트

- 일본 국립국회도서관(www.ndl.go.jp)
- 일본 아시아역사자료센터(www.jacar.go.jp)
- 일본 외무성(www.mofa.go.jp)

역사적 권원의 판단 순서와 판단 방식

Maritime Delimitation and Territorial Questions between Qatar and Bahrain 판결의 반대 의견을 중심으로

정재민 前 판사, 前 외교부 영토법률자문관

I. 머리말

영역분쟁 재판에서 당사국들이 역사적 권원을 주장하는 경우 재판소로서는 다른 근거들에 앞서 역사적 권원의 존부부터 판단해야 하는가, 아니면 역사적 권원이 소송의 승패에 직결되지 않는 경우라면 역사적 권원을 굳이 판단하지 않아도 무방한가. 국제사법재판소가 2001년 선고한 Maritime Delimitation and Territorial Questions between Qatar and Bahrain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 한다)이 바로 이 문제를 직간접적으로 다루었다!

* 논문 투고일: 2018. 3. 31. 심사 완료일: 2018. 5. 15. 재심사 완료일: 2018. 5. 25. 게재 확정일: 2018. 5. 29.

1 대상판결의 심판 대상은 하와르(Hawar) 제도와 주바라(Zubarah) 지역의 영역주권 귀속과 해양경계 획정이다. 주바라 지역의 영역주권은 재판관들의 만장일치로 카타르에게 귀속된 반면, 하와르 제도의 영역주권은 재판관 수 12 대 5로 바레인에게 귀속되었다. Merits, Judgment, I.C.J. Reports, 2001, Maritime Delimitation and Territorial Questions between Qatar and Bahrain, pp. 116~117. 본 사건의 주된 다툼의 대상은 하와르 제도의 영역주권 귀속이었던 만큼 이하의 대상판결에 대한 언급은 하와르 제도의 영역주권 귀속에 국한한다.

대상판결 사건에서 당사국들은 하와르(Hawar) 제도의 영역주권의 근거로 시원적 권원, effectivités, 지도, 인접성 원칙, uti possidetis juris 원칙, 하와르 제도가 바레인에게 귀속된다고 했던 1939년 영국결정을 주장하였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이 중에서 1939년 영국결정에 대해 바레인뿐만 아니라 카타르도 명시적, 묵시적으로 동의하였으므로 하와르 제도가 바레인에게 귀속된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린 이상 역사적 권원을 비롯한 나머지 쟁점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서 베도위(Bedjaoui), 란제바(Ranjeva), 코로마(Koroma) 재판관의 합동 반대 의견(이하 '반대 의견'이라 한다)은 대상판결이 전통적으로 영역주권 귀속을 결정하는 열쇠 역할을 해온 역사적 권원 문제를 회피한 것은 충격적이고도 유감스럽다며 통렬하게 비판하였고,³ 더 나아가 역사적 권원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고 직접 하와르 제도의 역사적 권원 판단을 시연해 보였다.

반대 의견의 강한 논조와 그 논리를 볼 때 국제사법재판소 내부에서 다수 의견과 반대 의견 사이에 치열한 논쟁이 있었으리라는 점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다수 의견은 역사적 권원을 왜 판단하지 않았는지, 일반적으로 역사적 권원을 먼저 판단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에 이 글은 다수 의견이 어떠한 입장에서 역사적 권원을 판단하지 않았는지를 추론해 본 다음, 국제재판소가 역사적 권원을 반드시 먼저 판단해야 하는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반대 의견이 보여준 역사적 권원을 판단하는 방식의 적정성도 살펴보고자 한다.

2 Ibid. p. 85, para. 148. "1939년 영국결정에 근거하여 재판소가 이와 같이 결론을 내린 이상 재판소가 시원적 권원의 존재, effectivités 및 uti possidetis juris 원칙에 기반한 당사국들의 주장을 판단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3 Ranjeva and Koroma, Joint Dissenting Opinion of Judges Bedjaoui, p. 188. para. 136.

II. 역사적 권원에 관한 일반적 논의

1. 학설

해양법상 역사적 권원 개념은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제15조 등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에 관한 연구 결과도 풍부하다. 반면 영역법에서는 역사적 권원을 규율하는 확립된 규범을 찾기 어렵고 학문적으로도 역사적 권원 개념에 대한 설명이 드물다. 불충분하나마 그동안 국제법 학계의 역사적 권원 개념에 대한 연구 결과를 취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역사적 권원의 가장 대표적이고 포괄적인 연구는 블룸(Y. Z. Blum)의 런던정경대학교 박사 논문이자 1965년 단행본으로 출간된 *Historic Titles in International Law*이다.⁴ 이 저서의 결론에서 블룸은 선점, 할양, 시효 등 영역취득의 양식들과 역사적 권원의 차이점에 대하여, 전자는 권원의 기원을 추적할 수 있는 즉각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순간적 행위에 토대를 두고 있는 반면에, 역사적 권원은 일련의 작위, 부작위 및 관행들이 누적적인 효과를 도출해냄으로써 국제법상 유효한 권원을 생성 및 응고시키는 장기적 과정의 산물이라고 기술하였다.⁵

쇼(M. N. Shaw)는 ‘시효, 묵인, 또는 오랫동안 지속되어서 법에 따라 권원으로 인정받은 점유 등에 따라 생성되고 응고된 권원’이라는 에리트리아와 예멘 사이의 Sovereignty and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Red Sea 중재판결(1998)의 정의를 인용하면서 역사적 권원 개념이 오랜 세월을 걸

4 이 저서는 역사적 권원의 근거를 찾는 데 대부분의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 먼저 역사적 권원의 근거를 시효에서 찾는 것이 타당한지를 검토하면서 국내법상 시효제도의 유추 가능성, 국제법상 시효제도의 인정 여부, 시효에 관한 판례들 및 국가 관행 등을 분석한 다음, 사법상 시효제도를 국제법에 유추 적용하기 어렵고 국제법상으로는 시효제도의 존재와 기능이 불확실하므로 역사적 권원의 근거를 시효에서 찾을 수는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대신 그는 역사적 권원을 일종의 관습법상 규범으로 보고 역사적 권원 형성 과정을 특별관습법 형성 과정과 대등하게 파악하였다. Y. Z. Blum, 1965, *Historic Titles in International Law*,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B.V., pp. 4~99.

5 *Ibid.* p. 335.

쳐 저항 없이 확립되고 정확한 출처가 불분명한 영역권원을 말한다고 하였다.⁶

브라운라이(Brownlie)는 오늘날 영역분쟁 소송에서는 국가의 주권행사 외에도 고대의 권원, 시원적 권원, 역사적 권원 개념들도 주장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으며, 국제재판소는 고대의 권원 또는 시원적 권원 개념을 인정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요구하고 있다고 현실을 인정하였다. 이들 개념을 뒷받침하는 근거로는 태고적 권원(immemorial possession)이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일반적 평판 및 견해를 입증하는 증거 등이 있으며, 특히 아시아에서는 전통적 국경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⁷

2012년 개정된 *The Max Planck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의 안드레아 조이아(Andrea Gioia)가 집필한 ‘역사적 권원’ 부분에 따르면, 당초 역사적 권원 개념은 19세기 말 영해의 기선에 관한 일반적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만이나 해수의 존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생겨났지만, 이후 국제법 문헌들이 역사적 권리라는 일반적 분류를 포괄적으로 발전시켜서 그 속에 역사적 권원의 응고 과정을 통해 취득한 육상 영역주권뿐만 아니라 그에 미치지 못하는 통행권, 어업권, 해양경계 확정 방식에 관한 역사적 권리 등을 포함시켰다고 하였다.⁸

2. 판결례

국제재판소의 판결례도 역사적 권원의 개념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역사적 권원을 처음 언급한 Anglo-Norwegian Fisheries

6 M. N. Shaw, 2005, *Title to Territory*, Dartmouth Publishing Company, pp. xx~xxi.

7 J. Crawford, 2012, *Brownlie's Principle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8th ed.*, Oxford University Press, p. 22.

8 Andrea Gioia, 2012, "Historic Title" in *Max Planck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Oxford University Press, p. 814. 그는 덧붙여 바로 이러한 경향이 상당한 혼동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고, 역사적 권리의 일반적 범주를 설정하는 것이 유용한지에 대해 의심스럽게 만들었다고 지적하였다.

판결(1951)은 해양법상 역사적 권원에 대한 것이다. 영역법상 역사적 권원을 다루었다고 흔히 일컬어지는 *Minquiers and Ecrehos* 판결(1953)은 실상 당사국들의 역사적 권원에 관한 논쟁을 요약해서 전제하는 대목에서만 역사적 권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을 뿐이고 재판소가 직접 판단하는 대목에서 역사적 권원을 언급한 것은 아니었다. 그나마 역사적 권원을 본격적으로 검토하면서 역사적 권원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언급을 한 판결례로는 *Sovereignty and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Red Sea 중재판결*(1998)이 있으나 이 판결례 역시 역사적 권원의 개념, 요건, 효과 등에 관한 분명하고 충분한 설명을 제시하지는 못한다.

이후 대상판결의 반대 의견이 역사적 권원에 관한 판단 순서나 판단 방법이라는 실무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던진 이후로는 *Sovereignty over Pedra Branca/Pulau Batu Puteh, Middle Rocks and South Ledge*(Malaysia/Singapore) 판결(2008)을 주목할 만하다. 이 판결례에서는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재판소가 최초로 말레이시아 측의 시원적 권원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대상판결에서 반대 의견이 강력하게 피력한 역사적 권원을 먼저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 *Sovereignty over Pedra Branca/Pulau Batu Puteh, Middle Rocks and South Ledge*(Malaysia/Singapore) 판결(2008)에서 재판소가 결론적으로 손을 들어주지 않은 말레이시아 측의 시원적 권원을 잠정적으로나마 인정하는 판단을 한 데 대해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III. 역사적 권원의 판단 순서

1. 반대 의견의 요지

반대 의견은 이 사건에서 역사적 권원을 가장 먼저 판단해야 하는 이유들을 중첩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분석의 편의를 위해 이를 네 가지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역사적 권원의 판단 순서와 판단 방식

첫째, 재판소가 역사적 권원 판단을 누락할 경우 재판의 신뢰가 의심받는다. 영역분쟁에서 통상 논리적으로 가장 먼저 조사하는 쟁점이 역사적 권원이고 역사적 권원이 당사국들 사이에 중요한 쟁점인데, 재판소가 그 판단을 누락할 경우 심리를 충실하게 하지 않았거나 판단을 유탈했다는 듯한 인상을 준다.⁹

둘째, 재판소가 역사적 권원을 판단하지 않고서 어느 다른 권원이 재판의 승패를 가르는 ‘우월한 권원(better title)’인지 여부를 선불리 확정하는 것은 오판의 위험을 초래한다. 어떠한 권원이 우월한 권원인지 여부를 판별하는 작업은 관련된 다양한 권원이나 근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이후에 비로소 가능한 것이지 그렇지 않고 어느 권원을 확정적이고 논란의 여지 없이 우월한 권원이라고 판결할 수는 없다.¹⁰

셋째, 역사적 권원 판단이 재판소의 능력 범위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역사적 권원을 판단하는 것은 법적 원칙이나 규칙에 따라 역사적 사실을

⁹ Ranjeva and Koroma, Joint Dissenting Opinion of Judges Bedjaoui, p. 152, para. 14. “본 판결이 역사적 권원을 판단하지 않은 것은 미심쩍고도 위험한 선택이다. 그것이 미심쩍은 이유는, 특히 영역분쟁의 경우에 통상 논리적으로 가장 먼저 문제되는 단계가 그 권원이 현재까지도 여전히 유효한지 여부를 떠나서 그 영역에 관한 시원적 역사적 법적 권원을 찾는 것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당사국들이 다투고 있는 수많은 다른 법적 근거들에 대하여 답변하지 않음으로써 재판소가 당사국들(과 판결문을 읽는 독자들)에게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서 매우 불완전하게 심리했다는 유감스러운 인상을 남기게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재판소는 부정확한 판결문을 내놓을 위험뿐만 아니라 완벽한 판단에 실패할 위험까지 부담하게 된다. 이로써 재판소는 판단 유탈이라는 혐의를 받을 위험에 노출된다.”

¹⁰ *Ibid.*, pp. 152~153, para. 14. “아울러 이 선택이 위험한 이유는 이 사건에서 제시된 다양한 근거들이 성격상 쉽게 배척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중 한 가지 근거만 가지고서 확정적이고 논란의 여지 없는 결론을 도출하고 그래서 재판소가 다른 근거를 살펴볼 필요가 없어졌다고 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사건은 다른 많은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근거로부터 도출되는 결론이 다른 근거들에 따라서 실제로 공격당하고 무효화되어 강력하게 논박될 수 있다. 국제법의 과학이라는 것은 하나의 논리가 다른 논리들을 완전히 배척하거나 불필요하게 만드는 수학적 과학과 같은 정도로 엄격하거나 논리적으로 확실하지는 않다. 이 점은 국제법에서 처음에 어떠한 영역권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른바 ‘우월한 권원(better title)’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사실에 따라 뒷받침된다.” 아울러 반대 의견은 재판소가 역사적 권원 판단을 계속해서 회피할 경우 가급적 현재 상태를 승인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Ibid.*, p. 175, para. 95. “우리가 이러한 사건들을 최대한으로 열거하는 것은 이러한 사건이 얼마나 많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재판소가 역사에 대한 판단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이유로 가급적 현재 상태를 승인하고 역사에 관해 판단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는 관념을 반박하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이러한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

해석하고 그에 대해서 법적 의미를 부여하는 순수한 사법적 작용이다. 오늘날 국제법은 역사적 사실들을 통제하고, 해석하고, 법적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으로부터 법에 포함된 법적 결론을 도출하는 작업을 할 수 있는 ‘틀’을 창설할 수 있는 원칙과 규칙을 보유하고 있다.¹¹ 특히 모든 역사적 분기점은 국제조약으로 드러나고, 재판소는 조약 해석에 있어서 광범위한 경험이 있다.¹² 역사적 권원 판단은 재판소의 책무로서 재판소가 역사적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성이나 여건이 부족하다고 해서 회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¹³

넷째, 기존의 국제재판소가 판결한 Legal Status of Eastern Greenland (1933), Anglo-Norwegian Fisheries(1951), Minquiers and Ecrehos(1953), Sovereignty over Certain Frontier Land(1959), Right of Passage over Inidan Territory(1960), Temple of Preah Vihear(1962), Frontier Dispute (Burkina Faso/Republic of Mali)(1986), Territorial Dispute(Libyan Arab Jamahiriyah/Chad)(1994), Kasikili/Sedudu Island(1999), Western Sahara(1975), Gulf of Fonseca case(1917) 등의 국제판례들도 역사적 권원을 판단해왔다.¹⁴

11 *Ibid.*, pp. 175~176. para. 97. “오늘날 국제법은 역사적 사실들을 통제하고, 해석하고, 법적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으로부터 법에 포함된 법적 결론을 도출하는 작업을 할 수 있는 ‘틀’을 창설할 수 있는 원칙과 규칙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작업은 재판소 역할의 핵심으로서 재판소가 마땅히 이행해야 할 의무이지 역사 전문가가 아니라는 편리한 이유로 회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실상 이것은 역사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들의 윤곽을 형성하는 규칙들과 원칙들을 적용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재판소의 접근이 미지의 영역으로의 위험한 모험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정반대로 이는 재판소 기능 및 관할권에 관한 순수한 사법적 작용이다.”

12 *Ibid.*, p. 188. para. 136.

13 *Ibid.*, p. 174. para. 93. “안정하다시피 재판소는 역사학자들의 학문적 모임도 아니고 두 당사국들의 과거에 대한 역사 연구를 할 수 있는 여건도 갖추지 못했다. 그러나 재판소는 특정 사건에서 역사로 인해 어려움이 생긴다면 그 어려움을 직면해야 한다. 법적 접근이 야기할 다양한 어려움에도 역사적 사건들과 영역분쟁들의 상호작용을 설명해내야 한다. 부침의 과정과 역사와의 불확실한 관계 속에서, 권원의 형성, 후속적 응고 또는 소멸의 다양한 가능한 단계들을 토대로, 어떠한 권리가 실효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법률가는 권원 창설의 기준과 조건을 식별하고, 두 가지 경쟁적 권원들 중에서 ‘우월한 권원’을 선택하며, ‘파생적 권원’과 ‘시원적 권원’ 및 ‘절대적 권원’과 ‘잠정적 권원’을 서로 구별하는 법 등을 배워야 한다.”

14 *Ibid.*, pp. 174~175. para. 94. “국제 포럼에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주 역사적 권원이

2. 다수 의견의 입장 추론

반대 의견은 이와 같이 재판소가 역사적 권원을 먼저 판단했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의견을 피력하고 있지만 다수 의견은 이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단지 1939년 영국결정으로 하와르 제도의 영역주권 귀속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시원적 권원을 비롯한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했을 뿐이다.

다수 의견의 이러한 입장과 반대 의견에서 강조된 논조를 종합해보면 다수 의견이 내부적으로 다음과 같은 근거에서 역사적 권원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을 것으로 추론된다.

첫째, 소송의 승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쟁점을 굳이 판단할 필요가 없다.

둘째, 제시된 모든 권원의 존부를 밝히지 않더라도 ‘우월한 권원’ 존부를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재판관들은 역사학 전문가들이 아니고 재판소에 역사를 밝혀낼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판소가 꼭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까지 역사적 권원의 존부를 적극적으로 밝히는 것은 오히려 오판의 위험을 초래한다.

3. 검토

1) 역사적 권원의 논리적 선결성 여부

반대 의견은 역사적 권원이 영역분쟁에서 통상 ‘논리적으로’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하는 쟁점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역사적 권원은 그 발생 시점이

쟁점이 되고 있으므로 법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아무리 역사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 없고 역사를 판단할 여건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재판관들은 그들 앞에 제기된 영역분쟁을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중재자들이 역사적 권원들을 다루어야 하는 수많은 국제 중재들이 있었다. 국제재판소들도 역사적 권원들에 대한 판단을 회피할 수 없었다.” 이에 더하여 대법판결이 주바라 지역의 영역주권에 대해서는 역사적 사실을 검토해서 역사적 권원의 존부를 판단했음에도 하와르 제도에 대해서만큼은 같은 방식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도 일관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Ibid.*, p. 177. para. 101.

시간적으로 다른 권원들보다 앞서 있을 뿐이지, 나중에 발생한 다른 권원들과 반드시 논리적 선결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시원적 권원과 파생적 권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라면 파생적 권원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 시원적 권원으로서의 역사적 권원을 검토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역사적 권원의 존부와 무관하게 나중에 발생한 권원의 존부나 운명이 결정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많다.

오히려 영역주권 분쟁에서 확립된 결정적 시점의 법리를 고려한다면 결정적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에 발생한 권원부터 역순으로 판단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다. 역사는 과거에서 미래를 향한 방향으로 불가역적으로 흘러가는 것이므로 시간적으로 나중에 발생한 권원이 먼저 발생한 권원을 개폐할 수는 있지만 그 역은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상판결이 1939년 영국결정의 구속력부터 판단한 다음 그 구속력이 인정되자 나머지 쟁점을 판단하지 않은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설사 그 이전에 해당 영역주권이 카타르 측에 귀속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바레인에게 귀속시키는 1939년 영국결정의 구속력이 바레인과 카타르에게 미치는 이상 판결의 최종 결론은 뒤바뀌지 않는 것이다.

2) '우월한 권원' 식별을 위해 모든 권원을 판단해야 하는가

반대 의견은 역사적 권원을 판단하지 않고서는 재판소가 어떠한 권원이 '우월한 권원'인지를 식별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어떠한 권원이 우월한 권원인지 여부를 판별하는 작업은 관련된 권원이나 근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이후에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나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다. 어느 한 권원의 존부가 다른 권원의 존부와는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결정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가령 앞서 본 바와 같이 대상판결에서 당사국들에 대한 1939년 영국결정의 구속력을 인정하게 되면 그 이전에 역사적 권원의 귀속이 어느 당사국에게 정해지더라도 판결의 최종적 결론이 바뀔 여지가 없다. 대상판결이 다른 쟁점을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선언한 것도 이를 전제로 한 것이다.

만약 어떠한 권원이 우월한 권원인지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하다면 모든 영역주권 귀속분쟁사건에서 역사적 권원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권원의 존부를 일일이 다 검토해야만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판단이 불필요한 쟁점을 가려내서 판단하지 않는 것이 국내외 재판 실무인 이유이다. 재판은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이지 단순히 당사자들의 지적 호기심 충족을 위한 제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데 있어서 소의 이익을 요구하는 것도 이러한 취지에서이다.

3) 역사적 권원만 특별하게 취급해야 할 이유의 존부

그럼에도 반대 의견이 재판소가 역사적 권원을 반드시 판단했어야 했다 고 주장하는 것은 역사적 권원 자체에 어떠한 특별함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그 특별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반대 의견은 분명하게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반대 의견이 취하고 있는 논리적 입장을 고려하면 반대 의견이 역사적 권원의 존부를 반드시 판단해야 하는 불가피한 이유가 있다. 반대 의견은 1939년 영국결정의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1939년 영국결정에 대해서 카타르는 동의하거나 묵인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항의를 해왔다고 본다.¹⁵ 당사국들이 제기한 권원이나 주장을 시간의 역순으로 검토해보더라도 1939년 영국결정의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 이전의 역사적 권원을 검토해야 하는 법률적 실익이 생기는 것이다.

4) 반대 의견이 제시한 판결례에 대한 검토

반대 의견은 기존의 국제재판소 판결례들도 역사적 권원을 판단해왔다는 점을 역사적 권원을 먼저 판단해야 하는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앞서 언

¹⁵ *Ibid.*, pp. 154~159, 167~170.

급한 바와 같이 그 판결례의 대다수는 ‘역사적 권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 판결 대상이 된 권원을 역사적 권원이라 간주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원들은 해당 사건에서 판결의 결론을 좌우하는 핵심적 쟁점이었다. 판결 결론을 좌우하는 핵심적 쟁점이 아닌데도 단지 역사적 권원 내지 역사적 과정을 통해 발생한 권원이라는 이유로 재판소가 본격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었다.

반대 의견이 예로 든 판결례들 중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Sovereignty and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Red Sea 중재판결(1998)은 역사적 권원이 판결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도 역사적 권원을 정면으로 판단한 드문 경우이다. 이 중재재판은 영역주권에 관한 국제 판례에서 반영된 다른 국제법의 원칙, 규칙, 관습들이 많이 있음에도 역사적 권원에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당사국들이 1996년 10월 3일자 중재협정을 통해서 중재재판부가 ‘특히’ 역사적 권원에 기해서 판단해줄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하였기 때문이었다.¹⁶ 결과적으로 이 중재판결은 에리트리아와 예멘 모두에게 역사적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다른 원칙에 따라서 결론을 내렸다.¹⁷

대상판결 이후에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Sovereignty over Perdra Branca /Pulau Batu Puteh, Middle Rocks and South Ledge(Malaysia/Singapore) 판결(2008)은 1844년 무렵까지 말레이시아의 시원적 권원을 일단 인정한다음, 그 이후부터 등대 설치를 둘러싼 1980년 무렵까지의 사정들을 근거로 영역주권이 싱가포르로 이전했다는 결론을 내렸다.¹⁸ 이 판결이 말레이시아의 시원적 권원을 판단한 것을 판결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불필요한 쟁점을 굳이 판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대상판결은 영역주권이 당

¹⁶ Territorial Sovereignty and Scope of the dispute, 9 October 1998, *Award of the Arbitral Tribunal in the first stage of proceedings between Eritrea and Yemen*, 114 IRL 1, p. 241, para. 114.

¹⁷ *Ibid.*, pp. 242~243, paras. 121~122; p. 311, para. 448; p. 243, para. 125.

¹⁸ Judgment, I.C.J. Reports, 2008, *Sovereignty over Perdra Branca/Pulau Batu Puteh, Middle Rocks and South Ledge (Malaysia/Singapore)*, p. 49, para. 117; p. 96, para. 276.

사국들의 명시적, 묵시적 합의에 따라 이전할 수 있다는 법 원칙을 전제로 해놓고,¹⁹ 이에 따라 말레이시아의 시원적 권원이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묵시적 합의에 따라 싱가포르로 이전되었다고 판단했다고 보았는데, 묵시적 합의에 따른 영역주권 이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당초 권원의 존부와 내용을 특정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5) 재판소의 전문성

반대 의견은 재판소가 역사적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성이나 여건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역사적 권원을 판단해야 하는 것이 재판소의 책무라며 다수 의견을 비판하였다. 이 대목에서 다수 의견이 재판소 내부적으로 역사적 사실 판단에 대한 재판소의 전문성 부족을 언급했을 것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추측건대 이는 역사적 권원을 굳이 판단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까지 적극적으로 판단할 필요는 없다는 근거 중 하나의 고려 사항으로 언급한 것이지 다수 의견도 재판소가 역사적 권원을 판단해야만 하는 경우에 이를 판단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만 재판소가 역사적 권원을 판단하는 경우 역사적 추론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할 것인지, 적극적 태도를 취할 것인지를 선택할 때 역사적 사실을 판단하는 재판소의 능력상 한계가 실질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는 있을 것이다.

IV. 역사적 권원의 판단 방식

앞서 말했듯이 역사적 권원을 가장 먼저 판단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더라도 역사적 권원이 판결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¹⁹ *Ibid.*, p. 50, paras. 120~121.

쟁점이 된 경우에는 이를 판단해야 한다. 문제는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이다. 어떤 미시적 사건의 존부를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판단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 스케일이 크고 증거 자료가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추론이 광범위하게 개입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역사적 추론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허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될 수 있다. 즉, 하나는 역사적 추론을 폭넓게 허용해서 거시적인 역사적 관점에서 역사적 권원을 추출해내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해당 영역의 점유에 직결되는 사정만을 근거 내지 증거로 삼아서 당사국들 사이의 실효적 점유의 실적을 비교하는 방식이다. 반대 의견은 전자의 방식을 주장하였는데 이하에서는 이 입장의 타당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1. 반대 의견의 방법론적 원칙

반대 의견은 기본적으로 재판소가 적극적이고 포괄적으로 역사적 추론을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반대 의견은 대상판결이 역사적 사실을 일차원적으로 단순 나열하기만 하고 그로부터 법적 결론을 도출하지 않았다면서 이것이 일반적인 논리적 추론의 관점에서 유용하지 않다고 비판하였다.²⁰ 반대 의견은 더 나아가 재판소가 영역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역사적 사실들을 통제하고, 해석하고, 법적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법적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²¹

²⁰ Ranjeva and Koroma, Joint Dissenting Opinion of Judges Bedjaoui, p. 175, para. 96. "그러므로 본 판결이 역사적 사건들을 반복하거나 일차적으로 나열해놓기만 할 뿐, 그것이 재판소의 역할임에도 그로부터 법적 결론을 도출하지 않은 것은 유감스럽다. 본 판결의 역사적 기술은 단선적인 사건의 나열일 뿐으로 이것이 일반적인 논리적 추론의 관점에서도 유용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즉 본 판결은 양국의 역사적 권원에 대하여 희미한 엑스선 사진처럼 일차원적 스캔 사진만을 제공할 뿐 하와리 제도의 역사적 권원을 확정하고 그 보유자가 어느 쪽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빠져 있어 이는 여전히 숙제로 남겨졌다."

²¹ *Ibid.*, pp. 175~176, para. 97.

반대 의견은 역사적 권원과 effectivités의 관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 우선 다음과 같이 역사적 발전의 전체적 관점에서 effectivités를 평가해야 한다는 역사적 응고 이론을 주창한 비셔(Charles de Visscher)의 언급을 인용하거나 광범위하고 상세하게 정부 활동의 현시를 비교형량한 Minquiers and Erehos 판결을 언급하였다.²² 아울러 반대 의견은 Frontier Dispute(Burkina Faso/Mali) 판결이 제시한 권원과 effectivités의 관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역사적 권원에 그대로 적용하면서 이 기준이 effectivités, 역사적 권원 및 법적 권원 사이에 존재하는 변증법적 관계의 구조를 수립하였다고 평가하였다.²³ 위 판단 기준은 권원과 effectivités의 관계를 다음 네 가지 경우로 나누고 있다.²⁴

① 권원과 effectivités가 서로 부합하는 경우:

현실의 상황이 법적 권원으로부터 파생되는 권리의 행사를 확증해줌으로써 재판소가 결정을 내리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② 권원과 effectivités가 서로 부합하지 않는 경우:

권원이 우선한다. 재판소로서는 별 어려움 없이 통상 effectivités보다 권원에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

③ 영역주권의 증거로서 권원이 불명한 경우:

²² *Ibid.*, p. 176, para. 98. "사법작용의 일환으로서 재판소는, 국가권력이 특정 영역에 대하여 과거에 행사해 온 권한의 현시들을 저울질해야 한다. 실제 작동한 effectivités를 구별해내고 역사적 권원을 형성하는 응고의 정도를 분별해내는 것은 역사의 씨줄과 날줄 속에서 가능하다. 이러한 작업은 본질적으로 사법적인 것이며, 역사적 자료에 실제로 적용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이를 단념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비셔(Charles de Visscher)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국제재판관은 정확하게 연대순으로 묘사하는 것이 불가능한 먼 과거의 역사적 기원들로 모호해지는 상황들을 다루기 위해 종종 씨름해야 한다. 경험적으로 볼 때, 역사적 발전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effectivités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법적 작용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국제사법재판소가 많은 사건에서 필요한 경우 역사적인 세부 사항을 관통하는 분석을 실시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을 관찰하는 것은 흥미롭다. 가령 Minquiers and Erehos 사건에서 재판소는 광범위하면서도 매우 자세하게 수많은 정부 활동의 현시들의 증명력을 비교 형량하였다."

²³ *Ibid.*, pp. 176~177, para. 99.

²⁴ Judgment, I.C.J. Reports, 1986, Frontier Dispute(Burkina Faso/Mali), p. 587.

effectivités가 그 권원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경우 effectivités는 권원과 결부되어 권원에 진면목을 부여함으로써 재판소로 하여금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준다.

④ 권원이 부존재하는 경우 :

이 경우 재판소가 보다 적극적인 관여를 요구하는데 여기서 effectivités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일종의 잔여(residual) 권원을 구성한다.

반대 의견은 국제판례가 역사적 사실과 행위들에 대하여 법적 결과를 부여하는 또 다른 규칙과 원칙들을 발전시켜 왔다고 하면서 다른 판결에서 제시된 권원의 성립 요건이 역사적 권원에 적용된다고 보았다. 그 예로 Legal Status of Eastern Greenland 판결에서 제시한 권원의 요건인 실효적 점유와 같은 객관적 요건(corpore possessio)과 주관적 요건(animus possidendi)이 필요하다고 한 판시를 들었다.²⁵

2. 반대 의견의 역사적 권원 판단 시연

반대 의견은 하와르 제도 일대를 둘러싼 역사적 사실을 정리하면서 역사적 권원의 존부와 귀속을 판단하였다. 바레인을 지배한 알할리파(Al-Khalifa) 왕조와 카타르를 지배한 알사니(Al-Thani) 왕조가 당초 어디서 어떻게 유래하였는지부터 시작하여²⁶ 서로 간의 전쟁과 영국 및 오토만 제국에 의한 지배 시기를 거치면서 양 부족의 권력 관계나 권력이 미치는 범위가 어떻게 변천되었는지를 하와르 제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중심으로 논하였다. 이를 위해 반대 의견은 중요한 역사적 사실 관계를 확정한 다음 그 역사적 단계마다 역사적 권원의 응고의 정도나 형성 여부를 다음과 같이 일일이 평가하였다.

²⁵ Ranjeva and Koroma, *Joint Dissenting Opinion of Judges Bedjaoui*, p. 177, para. 100.

²⁶ *Ibid.*, p. 174, paras. 91~92.

역사적 권원의 판단 순서와 판단 방식

- “19세기 동안 바레인이 상대적으로 쇠약해지고 바레인의 카타르 서해안에 대한 권리 주장을 영국이 막으면서, 카타르의 셰이크들은 카타르 반도에 대한 권원을 형성하고 응고할 수 있었다.”²⁷

- “1867년에는 카타르 사람 베두인(Bedouin)을 바레인 당국이 카타르에서 체포하여 바레인 법정에 세운 일이 있었다. 그러자 이전까지 바레인에게 복종해왔던 카타르가 반란을 일으켜 카타르 반도에서 바레인 사람들을 내쫓아버렸고 이에 대한 복수로 바레인이 카타르를 침략하자 양국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다. 이것은 법적으로 평가할 때 카타르 반도에 대한 바레인의 권원이 종료되고 카타르의 권원이 형성하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²⁸

- “영국과 바레인이 체결한 1868년 협정에 기해 바레인은 카타르 반도에 대하여 아무런 주권적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고 인정하였다. 법적인 관점에서 이 협정은 1861년에 이미 체결된 다른 협정과 함께 분명히 바레인의 권능이 카타르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이었다. 1860년대는 영국이 출현하면서 바레인이 카타르 반도에 대한 권원을 상실하고 있었던 것이다.”²⁹

- “오토만 제국이 카타르 반도를 장악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은 영국의 행위는 의문의 여지 없이 카타르 반도와 부속 섬들에 대한 카타르의 권원을 응고시켰고, 1867~1868년 사이의 영국의 행위를 보충하여 카타르의 권원을 완성시켰다.”³⁰

- “한편 바레인도 1871~1937년 사이에 오토만 제국 및 카타르 셰이크들이 카타르 반도에 권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항의를 하지 않고 묵인하였다....(중략)...바레인은 이러한 침묵으로써 카타르가 하와르 및 주

²⁷ *Ibid.*, pp. 177~178, paras. 102~103.

²⁸ *Ibid.*, p. 179, paras. 105~106.

²⁹ *Ibid.*, pp. 179~180, paras. 107~109.

³⁰ *Ibid.*, pp. 182~183, paras. 116~117.

바라 지역에 대한 권원을 옹고하고 다른 열강들로부터 그 권원을 승인받을 것을 막지 못하였다.”³¹

- “알사니 부족의 자심(Jassim) 셰이크는 오토만 제국을 등에 업고 점차 하와르를 비롯한 카타르 반도 전역에 대한 권원을 강화해 나갔다.”³²

반대 의견은 이렇게 역사와 법의 접점들을 분석한 이후 최종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다.

- “과거 바레인이 하와르 제도에 대한 역사적 권원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1868년 영국과 바레인 및 카타르 사이에 조약들이 체결됨으로 인해 바레인은 카타르 반도에 대한 영역주권을 상실하였다. 이러한 조약들은 하나의 권원의 종료와 새로운 권원의 탄생을 의미하는데, 이 새로운 권원은 바레인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실체인 카타르에게 귀속된다. 카타르의 권원은 점진적으로 강화되어서 1916년 영국과의 조약을 통하여 확정적으로 옹고되었다.”³³

3. 검토

1) Minquiers and Ecrehos 판결의 원칙

기존 판례 입장은 반대 의견과는 달리 적극적인 역사적 추론에 부정적이다. 오히려 해당 영역에 대한 직접적인 점유에 관련된 증거를 중심으로 판단하였다. Minquiers and Ecrehos 판결이 대표적이다. 이 판결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영국의 역사적 추론이 일리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분쟁군도의 영역주권을 확정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이 문제는 궁극적

³¹ *Ibid.*, p. 183, paras. 118~120.

³² *Ibid.*, p. 183, para. 121.

³³ *Ibid.*, p. 188, para. 136.

로 점유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증거에 기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선언하고,³⁴ “재판소의 입장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중세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간접적인 추론이 아니라 분쟁 대상 섬들의 점유와 직접 관련되는 증거이다”라고³⁵ 판시하였다.³⁶

2) Frontier Dispute(Burkina Faso/Mali) 판결의 기준

반대 의견이 Frontier Dispute(Burkina Faso/Mali) 판결이 제시한 권원과 effectivités의 관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역사적 권원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Frontier Dispute(Burkina Faso/Mali) 판결이 effectivités와의 관계에서 언급하는 ‘권원’이라는 용어는 그 의미가 ‘역사적 권원’과 같은 실제적 권리가 아니라 증거자료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Frontier Dispute(Burkina Faso/Mali) 판결은 ‘권원’이라는 용어가 어떤 권리의 존재를 입증하는 증거와 그 권리의 실제적 원천을 둘 다 가리킨다고 전제하였는데, 맥락상 위 판결이 권원과 effectivités의 관계에 대한 네 가지 경우를 말할 때의 ‘권원’은 이 중 전자의 ‘증거’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³⁷ 그러나 통상 ‘역사적 권원’은 후자의 ‘권리의 실제적 원천’에 가까운 것이다.

3) 역사적 옹고 이론

반대 의견은 역사적 옹고 이론을 주창하여 한때 국제법학계에서 큰 반

³⁴ Minquiers and Ecrehos (France/United Kingdom) Judgment, p. 55.

³⁵ *Ibid.*, p. 57.

³⁶ 반대 의견은 적극적인 역사적 추론을 허용하는 입장에 서면서도 그 근거로 Minquiers and Ecrehos 판결을 언급하며, “국제사법재판소가 많은 사건에서 필요한 경우 역사적인 세부 사항을 관통하는 분석을 실시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을 관찰하는 것은 흥미롭다. 가령 Minquiers and Ecrehos 사건에서 재판소는 광범위하면서도 매우 자세하게 수많은 정부 활동의 현시들의 증명력을 비교 형량하였다”라고 하였는데, 이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이 판결을 예시로 든 것이 적절한 것이었는지는 의문이다. Ranjeva and Koroma, Joint Dissenting Opinion of Judges Bedjaoui, p. 176, para. 98.

³⁷ Judgment, I.C.J. Reports, 1986, Frontier Dispute(Burkina Faso/Mali), p. 564.

향을 일으켰던 비셔(Charles de Visscher)의 “역사적 발전의 전체적 관점에서 effectivités를 평가해야 한다”는 언급을 인용하였다. 아울러 구체적으로 역사적 권원 판단을 시연하는 데 있어서도 ‘역사적 응고’라는 개념을 여러 차례 사용하였다.

가령 “19세기 동안 바레인이 상대적으로 쇠약해지고 바레인의 카타르 서해안에 대한 권리주장을 영국이 막으면서 카타르의 셰이크들은 카타르 반도에 대한 권원을 형성하고 응고할 수 있었다”거나,³⁸ “오토만 제국이 카타르 반도를 장악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은 영국의 행위는 의문의 여지 없이 카타르 반도와 부속 섬들에 대한 카타르의 권원을 응고시켰다”거나,³⁹ “바레인은 이러한 침묵으로써 카타르가 하와르 및 주바라 지역에 대한 권원을 응고하고 다른 열강들로부터 그 권원을 승인받는 것을 막지 못하였다”거나,⁴⁰ “1916년 카타르의 알사니(Al-Thani) 부족의 압둘라(Abdullah) 셰이크가 카타르 전체를 대표하여 영국과 협정을 체결하여 카타르가 바레인과 대등한 관계를 승인받음으로써 그 권원이 확정적으로 응고되었다”고 한 것이다.⁴¹

이처럼 반대 의견은 ‘응고’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역사적 사실에서 곧바로 특정 국가의 완성된 권원을 추론해내지 않고 역사적 흐름을 거시적으로 조망하면서 권원의 형성부터 점진적 응고를 거쳐 확정적 응고에 이르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추론해내었다. 관련국인 바레인, 카타르, 영국, 오토만 제국 사이의 역사적 사실들과 특히 이들 각국 사이에 체결된 조약들의 해석을 통해서 당시 관련국들 사이의 권력의 행사범위와 한계를 추론해내고, 다시 이를 근거로 권원의 응고 과정을 추론한 다음, 또 다시 이를 근거로 하와르 제도에 대한 카타르의 권원의 존부를 선언하는 것이다.

³⁸ Ranjeva and Koroma, Joint Dissenting Opinion of Judges Bedjaoui, pp. 177~178, paras. 102~103.

³⁹ *Ibid.*, pp. 182~183, paras. 116~117.

⁴⁰ *Ibid.*, p. 183, paras. 118~120.

⁴¹ *Ibid.*, pp. 187~188, paras. 133~136.

역사적 응고라는 개념은 Anglo-Norwegian Fisheries 판결에 처음 등장했다.⁴² 이 판결에 재판관으로 참여했던 벨기에 출신 학자 비셔(Charles de Visscher)는 위 판결 직후인 1953년 출간한 저서 *Théorie et réalités en droit international public*⁴³에서 ‘역사적 응고’라는 개념을 이론적으로 제시하였다.⁴⁴ 이러한 역사적 응고라는 개념은 영역주권을 동태적, 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선점, 시효, 할양 등 영역주권의 취득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었던 이른바 양식론에 비해 뚜렷한 장점이 있었다.

그러나 국제사법재판소는 역사적 응고 개념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Land and Maritime Boundary between Cameroon and Nigeria 판결(2002)은 나이지리아의 역사적 응고 주장을 기각하면서 역사적 응고라는 개념이 영역분쟁에서 사용된 적이 없고, 역사적 응고 이론은 매우 논란이 많으며, 매우 중요한 사실 및 법적 변수를 고려하는 국제법상 확립된 영역취득의 양식들을 대체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⁴⁵

반대 의견이 그러하듯이 역사적 추론을 적극적으로 하자는 입장은 역사적 응고 이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쉽다. 역사적 응고라는 개념을 동원하면 역사적 추론이 훨씬 용이해지기 때문이다. 반대로 역사적 추론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면서 해당 영역의 점유 내지 실효적 지배의 실적을 보다 중시하는 입장은 역사적 응고 이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기 쉽다. 이러한 측면에

⁴² 재판소는 노르웨이의 1869년 및 1889년의 칙령들에 대해서 영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이 60여 년 동안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를 근거로 이 직선기선 체제가 일반적 관용(general toleration)의 혜택을 수확할 수 있으며, 이 일반적 관용은 다른 모든 국가들에게 강제할 수 있는 ‘역사적 응고’의 근간이라고 보았다. I.C.J. Reports, 1951, Fisheries case, Judgment of December 18th 1951, p. 138.

⁴³ 이 저서는 1957년과 1968년에 P.E. Corbett가 영문으로 번역하여 *Theory and reality in public international law*, Princeton University Press로 나와 있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1968년 번역본을 인용한다.

⁴⁴ Charles de Visscher, 1968, *Theory and reality in public international law*, Princeton University Press, p. 209. 그는 역사적 응고가 묵인뿐만 아니라 충분히 지속된 반대의 결여에 따라서도 성립할 수 있다고 하면서, 후자의 반대의 결여에 관하여는 육상 영역의 경우에는 분쟁에 관련된 국가들의 반대의 결여를, 해양 영역의 경우에는 일반적 국가들의 반대의 결여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⁴⁵ Judgments, I.C.J. Reports, 2002, Land and Maritime Boundary between Cameroon and Nigeria (Cameroon v. Nigeria: Equatorial Guinea intervening), p. 352, para. 65.

서 Minquiers and Ecrehos 판결과 Land and Maritime Boundary between Cameroon and Nigeria 판결이 일맥상통한다.

4) 소결

역사적 추론을 활발하게 시도하고 역사적 응고 개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역사적 권원을 도출하는 반대 의견의 접근 방식에도 큰 장점이 있다. 특히 국제법 이론의 관점에서는 근대 국제법이 탄생하기 이전 시기나, 국제법이 당초 주무대로 삼았던 유럽 이외 지역의 영역주권을 국제법의 틀로 설명할 수 있게 해준다는 매력적인 의의가 있다. 권원의 취득에 주로 초점을 맞추는 선점, 할양, 시효, 부합 등의 양식론과는 달리 권원의 형성과정을 동태적, 복합적으로 포착해서 설명해낼 수 있다는 기능도 단연 돋보인다.

그러나 역사적 권원 개념이 국제법 이론적 영역에서 유용성과 의의가 크다고 해서 재판준칙으로 사용되는 국면에서도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다. 재판은 오판 시 당사국에게 큰 손해를 가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정확성이 생명이다. 불확실한 추측이나 추론으로 오판의 위험을 키우는 것보다 신중한 태도로 판결의 오류를 줄이려는 접근 방식이 바람직하다.

다수 의견이 재판소가 역사적 사실을 판단해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언급했다면 그것도 이러한 맥락이었을 것이다. 전문성 부족에도 필요하다면 재판소가 역사적 권원을 판단해야 하지만 그 경우에도 재판소가 역사적 추론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신중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데는 재판소가 과연 역사적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밖에 없다. 앞서 반대 의견도 언급했듯이 재판관들은 역사학자도 아니고, 재판소가 장기간에 걸쳐 역사를 치밀하게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 것도 아니다. 재판관들은 물론이고 역사학자들조차도 오랜 세월이 걸친 방대한 역사의 진실을 명확하게 밝혀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국내 재판에서는 증거와 증인이 존재함에도 계약의 존재 여부나 폭행 여부 등 아주 사소한 기초적인 사실조차 확인이 곤란할 때가 적지 않다. 하물며 증인이 존재할 수도 없고 충분한 증거가 없

는 경우가 통상인 수백, 수천 년 전의 영역주권의 양상을 재판소가 정확하게 추론해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반대 의견이 시연한 바와 같이 권력의 흥망성쇠로 영역주권을 판단하는 것도 그 자체로 여러 가지 논리적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다양한 측면을 동시에 품고 있는 역사와 권력의 흥망성쇠를 지극히 단순화하여 파악하는 것 자체가 진상을 왜곡하는 것일 수 있다. 또한 한 국가의 역사나 권력의 정치적 흥망성쇠가 곧바로 특정 영역에 대한 법적 권원의 변동과 직결되는 것도 아니다. 권력의 흥망성쇠는 지배 영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도 논의할 수 있지만 영역주권은 해당 영역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어느 권력이 어느 지역을 개괄적으로 통치했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가는 여전히 별도로 증거를 가지고 따져야 할 문제로 남게 된다. 이 사건에서 반대 의견은 카타르 반도 서해안에 대한 논의가 그대로 하와르 제도에 적용된다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삼아, 카타르 반도 서해안에서 벌어진 권력 관계의 양상을 추론한 결과를 그대로 하와르 제도의 영역주권에 대입하고 있다. 그러나 하와르 제도가 카타르 반도 서해안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반도 전반에 벌어진 상황이 반드시 하와르 제도에 대해서 동일하게 벌어졌다고 볼 근거는 없다. 이처럼 거대한 담론을 논증의 대상으로 삼게 되면 논리적 허점이 수없이 생겨나게 된다.

반대 의견은 모든 역사적 분기점이 국제조약에 따라 구분 지어진다고 하였으나 조약을 남기지 않고 이루어지는 중요한 역사적 행위는 얼마든지 많다. 조약이나 그 밖의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고 해서 그 무렵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정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기록이 남아 있는 부분들만 연결해서 역사적 사실 관계를 추론하는 것도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

요컨대 역사적 권원 개념은 학술적으로는 영역주권을 뒷받침하는 사태를 동태적, 복합적으로 국제법의 틀로 담아낼 수 있도록 해주고, 유럽 이외 지역의 영역주권을 설명할 수 있다는 중요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재판준칙으로서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사용될 경우 사태를 지나치게 단순화시켜

진상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고 결과적으로 오판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역사적 추론에 대해서 소극적 입장을 보인 대상판결의 다수 의견이나 기존의 *Minquiers and Erehos 판결*, *Land and Maritime Boundary between Cameroon and Nigeria 판결* 등 기존 국제판례가 보여준 입장도 이러한 고려를 바탕으로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V. 맺음말

영역주권 귀속분쟁소송은 국제공법재판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재판이다. 이런 소송에서 당사국들은 흔히 역사적 권원이 자국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현실적, 정치적, 외교적으로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다. 자국이 가장 오래전부터, 가장 오랜 세월 동안 해당 영역을 지배할 수 있는 정당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과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당사국들이 국제재판에서 역사적 권원을 주장하는 경우 재판소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다른 권원보다 먼저 판단해야 하는 것인가, 반드시 판단해야 하는 것인가, 판단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 것인가. 이러한 문제들은 역사적 권원에 특별한 법적 성격이 인정되는가와 같은 실체법적 문제와 재판소가 역사적 권원을 어떠한 순서와 방식으로 판단해야 하는가의 절차법적 문제가 교차하는 지점이다. 이는 학문적으로뿐만 아니라 실무적으로도 소송의 승패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쟁점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재판소부터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영역분쟁의 당사국들도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 문제에 대하여 대상판결의 반대 의견은 재판소가 역사적 권원을 먼저 판단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역사적 권원을 판단하는 경우 역사적 응고 개념을 빈번하게 활용하여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역사적 추론을 선보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반대 의견의 이러한 입장은 나름대로 합리성이 있고 국제법 이론상으로도 큰 의의와 매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재

판준칙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역사적 권원의 기능에 한계가 적지 않고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사용될 경우 진상을 왜곡하여 오판을 초래할 위험도 있다.

역사적 권원 개념이 재판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제약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학술적으로도 무용하다거나 지양해야 할 개념이라고 보는 것은 아니다. 역사적 권원 개념을 동원하면 국제법이 확립되기 훨씬 이전 시기의 국가 간 영역주권의 양상이나 국제법 탄생의 중심지인 서구 유럽이 아닌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아메리카 등의 전통적인 영역주권의 양상을 국제법의 틀에서 논의할 수 있고, 그 구체적 양상을 동태적, 종합적으로 설명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현재 역사적 권원 개념은 국제법 판례에서 종종 언급되는 반면 학술적으로는 연구가 불충분한 상태이다. 역사적 권원의 본질, 정의, 요건, 효과, 영역법상 위치, 다른 법리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판례나 학설이 침묵하고 있다. 판례가 역사적 권원이라는 개념을 왕왕 사용하면서도 이처럼 그 법적 성격을 불명확하게 방치하는 것은 영역분쟁을 겪는 국가들 사이에 혼동을 초래하고 영역법 질서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역사적 권원의 본질이나 기능에 대한 연구가 더욱 심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이다.

국문초록

영역분쟁 재판에서 당사국들이 역사적 권원을 주장한 경우, 재판소로서는 반드시 역사적 권원의 존부부터 판단해야 하는가, 아니면 소송의 승패에 직결되는 권원만 선별적으로 판단해도 무방한가. 이 문제가 치열하게 논의된 것이 ICJ의 Maritime Delimitation and Territorial Questions between Qatar and Bahrain 판결이다. 이 판결은 결정적 시점에 가장 가까운 1939년 영국 결정의 법적효력을 긍정한 다음 굳이 역사적 권원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3인 재판관의 반대의견은 재판소가 먼저 역사적 권원을 판단했어야 했다며 다수의견을 통렬하게 비판하고는 적극적 역사적 추론을 통해 Hawar 제도의 역사적 권원 판단을 시연해 보였다.

역사적 권원 개념을 동원하여 역사적 추론을 적극적으로 하는 접근 방식은 권원의 형성과 변동 양상을 동태적, 복합적으로 포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와 기능이 크다. 그러나 정확성이 생명인 재판에서는 역사적 권원 개념이 상당히 모호하고 재판소가 역사적 추론을 정확하게 하는데 현실적 제한이 적지 않으므로 재판소로서는 보다 신중한 태도로 판결의 오류를 줄이려는 접근방식이 바람직하다.

〈주제어〉

역사적 권원, 역사적 응고, 역사적 추론, 영역분쟁, Hawar

역사적 권원의 판단 순서와 판단 방식

ABSTRACT

Whether and how to judge the historic title in territorial disputes

Choung, Jae min

In the legal case regarding the Maritime Delimitation and Territorial Questions between Qatar and Bahrain, the question was raised whether the Court should always examine the historic title first among the other titles, or does the court not have to examine historic title if that title does not affect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The judgment reached its conclusion by relying for the most part on the legal implication of the British decision rendered in 1939, which was the most recent legal grounds suggested by the parties before declaring it unnecessary to examine other legal issues, including historic title. However, the judges Bedjaoui, Ranjeva, and Koroma insisted in their Joint Dissenting Opinion that the Judgment should have examined first the historic title and shown how to conduct historical reasoning and draw historic title in this case. It is indisputable that historical reasoning and the concept of historic title offer useful tools to grasp the dynamic process of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titles from academic perspectives. However, in the trial process, where accuracy and precision are more important than academic usefulness, the Court should take a more cautious approach in adopting historic reasoning and historic title than the Dissenting Opinion suggested, and does not have to examine historic title when it is not necessary.

Keywords

historic title, historical title, sovereignty dispute, Hawar

참고문헌

판결

Maritime Delimitation and Territorial Questions between Qatar and Bahrain, Merits, Judgment, I.C.J. Reports 2001.

Joint Dissenting Opinion of Judges Bedjaoui, Ranjeva and Koroma, Judgment, I.C.J. Reports 2001.

Award of the Arbitral Tribunal in the first stage of proceedings between Eritrea and Yemen(Territorial Sovereignty and Scope of the dispute), 9 October 1998, 114 IRL 1.

Sovereignty over Perdra Branca/Pulau Batu Puteh, Middle Rocks and South Ledge(Malaysia/Singapore), Judgment, I.C.J. Reports 2008.

Frontier Dispute(Burkina Faso/Mali), Judgment, I.C.J. Reports 1986.

Fisheries case, Judgment of December 18th 1951, I.C.J. Reports 1951.

Land and Maritime Boundary between Cameroon and Nigeria(Cameroon v. Nigeria: Equatorial Guinea intervening), Judgments, I.C.J. Reports 2002.

저서

Charles de Visscher, 1968, *Theory and reality in public international law*, Princeton University Press.

Y. Z. Blum, 1965, *Historic Titles in International Law*, Springer Science+ Business Media, B.V.

M. N. Shaw, 2005, *Title to Territory*, Dartmouth Publishing Company.

J. Crawford, 2012, *Brownlie's Principle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8th ed.*, Oxford University Press.

Andrea Gioia, 2012, "Historic Title" in *Max Planck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Oxford University Press.

‘섬’과 ‘암석’에 관한 남중국해 중재판정과 한일 간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합의

박배근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머리말

남중국해의 해양 관련 분쟁은 분쟁 대상, 분쟁 원인, 분쟁 당사자, 관련 주장과 근거 등에서 복잡한 양상을 드러내면서 첨예하게 전개되어 왔다. 중국과 주변 국가들은 난사군도¹(Spratly Islands)를 중심으로 주로 해양지형물에 대한 영유권 분쟁과 해양관할권 분쟁을 벌여왔다. 그 원인이 주로 관련 해역의 어업자원과 석유나 천연가스 같은 자원에 있다는 것은 주지하는 바이다.² 나아가 남중국해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해상교통로를 확보하고 남중국해에서의 군사 활동 자유를 제한하거나 확보하려는 것도 분쟁의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³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자원, 교통, 군사상의 자

* 논문 투고일: 2018. 3. 31. 심사 완료일: 2018. 5. 14. 재심사 완료일: 2018. 5. 27. 게재 확정일: 2018. 5. 31.

1 분쟁 대상의 지리적 명칭을 표시할 경우 분쟁에서 중립적인 입장에 서려면 분쟁 당사국이 분쟁 대상을 지칭하는 지리적 명칭을 모두 표시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 원고에서는 간명한 서술을 위하여 한국인 독자에게 가장 친숙한 것으로 생각되는 지리적 명칭을 사용한다. 아울러 그러한 지리적 명칭 사용이 분쟁 대상에 관하여 특정 분쟁 당사국 입장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힌다.

2 김자영, 2011, 「남중국해 해양영토분쟁의 최근 동향과 국제법적 쟁점」, 『안암법학』, 제34권, 1.068~1.070쪽.

국 이익을 확보하려는 과정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른바 남해 9단선도 국제사회에서 많은 주목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⁴

이러한 복잡한 분쟁을 배경으로 남중국해에서 우월한 지위를 추구하는 중국과 그것을 제지하기 위하여 미국이 항해 자유(Freedom of Navigation) 작전을 펼치는 상황에서 2013년 1월 22일 필리핀이 중국을 상대로 국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세계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연히 소송 결과도 분쟁 당사국과 주변국은 물론이고 세계적인 관심 대상이 되었다. 아마도 국제법 문제에 관하여 국제사법기관이나 중재재판소가 내린 법적 판단으로 이 판정만큼 큰 관심을 끈 것도 드물 것이다.

2016년 7월 12일에 필리핀과 중국 간의 남중국해 중재사건 본안 판정⁵이 나오자 판정을 두고 당연히 한국에서도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현실적인 관점에서는 남중국해에 해상교통을 의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국제정세 속에서 중국이나 미국, 필리핀 등 아세안 국가와 국제관계를 균형 있게 조절해 나가야 하는 한국으로서는 판정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함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국제해양법상 독도의 법적 지위와 중대한 관련을 가지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나아가 학문적인 관점에서도 이 판정은 조약 해석과 이행에 관한 흥미롭고 중요한 쟁점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관심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국 학계에서는 이미 판정 내용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⁶(이하 ‘해양법협약’이라 함) 해석론의 관점에서 판정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글들이 발표되었다.⁷ 또 독도와 관련된 판정

3 김자영, 2011, 앞의 글, 1.065~1.067쪽.

4 중국이 주장하는 남해 9단선에 관해서는 정갑용, 2015, 「남중국해 해양분쟁의 국제법적 쟁점」, 『해사법연구』, 제27권 제2호, 51쪽 이하 참조.

5 “The Republic of Philippines v.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ward on the Merits, 12 July 2016. (이하 ‘본안 판정’이라 함)

6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982년 12월 10일 채택, 1994년 11월 16일 발효, 1996년 2월 28일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

의 의의를 검토하는 글도 연이어 발표되고 있다.⁸ 한국은 주변국, 특히 일본이 오키노토리시마(沖ノ鳥島)와 같이 암석으로 생각하는 해양지형물을 근거로 광범위한 해양관할권을 주장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또 독도의 해양법상 지위는 한일 양국 간 해양경계획정에 결정적인 함의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한국 입장에서는 해양법협약 제121조의 ‘섬’과 ‘암석’ 구별 기준에 관한 판정 내용이 더욱 큰 관심 대상이 아닐 수 없으며, 판정과 관련된 논의도 이 점에 집중되고 있다.

이 글도 이번 중재재판 본안 판정에 담겨 있는 다양한 쟁점에 관한 판단 중에서도 특히 해양지형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판정 내용을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다. 판정 내용이 방대하여⁹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서 검토·분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학문적으로도 실무적으로도 중요하며 한국과의 관련성이 큰 문제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 비추어, 해양지형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판정 내용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보고자 하는 취지이다. 다만, 이미 이 문제에 관한 선행 연구가 다수 나와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 해양지형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남중국해 중재판정을 일반적인 관점에서 다시 검토하는 것은 큰 의의가 없다. 이 글은 조약해석론이라는 관점에서 해양지형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남중국해 중재판정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이 문제에 관한 선행 연구의 논의에서 빠진 부분을 보충하고자 한다.

7 김원희, 2016a, 「남중국해 해양분쟁 관련 ‘국제법 전쟁(Lawfare)’의 성과와 과제 - 남중국해 중재사건 본안 판정의 국제법적 검토와 한국에 대한 함의」, 『국제법학회논총』, 제61권 제4호, 69~119쪽; 김현정, 2016,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3항 해석에 관한 소고 - 필리핀-중국 남중국해 중재판정의 의의를 중심으로 -」, 『법학논총』,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제40권 3호, 225~259쪽; 이석용, 2016, 「남중국해 중재판정의 국제해양법상 도서제도에 대한 영향」, 『영토해양연구』, 제12권, 102~141쪽; 정진석, 2017, 「남중국해 중재판정을 통해 본 ‘암석’의 정의」, 『법학논총』,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제29권 제3호, 423~458쪽.

8 김경기·배규성, 2017, 「남중국해사건에 대한 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과 한국의 독도영토주권에의 함의」, 『아세아연구』, 제60권 제3호, 65~101쪽; 김태운, 2016, 「남중국해 바위섬에 관한 상설중재재판소판정에 따른 섬으로서 독도」, 『해사법연구』, 제28권 제3호, 75~99쪽.

9 공개된 판정문은 479페이지에 이르며 1,203개 문단(paragraph)으로 되어 있다.

남중국해 중재판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해양법협약 제121조의 해석은 일본, 중국 등과 해양경계획정 문제를 안고 있는 한국 입장에서는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내용이다. 특히 일본과의 해양경계획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번 판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독도를 해양법협약상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 관한 권원을 창출하는 ‘섬’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나아가 해양법협약 제121조 제3항 해석에 관하여 독특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일본 정부 해석론에 대하여 판정이 가질 수 있는 함의가 무엇인지도 문제가 된다. 이 두 가지 중요한 문제에 관해서도 법적인 검토를 덧붙이고자 한다.

II. 판정 내용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판정 내용을 잘 정리하여 소개하고 있는 글들이 여럿 있다. 이 점을 고려하여 논지 전개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리고 다른 글들에서 소개되지 않은 부분을 중심으로 판정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1. 계쟁문제

주지하다시피 중국은 필리핀의 제소에 응하지 않았다. 중국은 2014년 12월에 중재재판에 관한 중국 정부 입장을 설명하는 성명서(position paper)를 발표하고¹⁰ 2016년 5월에는 중국 입장을 설명하는 서한을 중재재판관에게 전달하는 등의 반응을 보였지만¹¹ 중재재판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10 "Position Paper of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the Matter of Jurisdiction in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Initiated by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7 December 2014)," www.fmprc.gov.cn/mfa_eng/zxxx_662805/t1217147.shtml (검색일: 2017. 3. 29).

11 본안 판정, para. 97.

재판은 필리핀 청구취지에 맞추어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필리핀이 재판부에 제시한 청구취지는 모두 15개이다.¹² 그중에서 이 글의 주제와 관련된 청구취지는 다음 네 가지이다.

3. 스카버러 사주¹³(Scarborough Shoal)는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에 대한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음.
4. 미스치프 암초¹⁴(Mischief Reef), 세컨드 토마스 사주(Second Thomas Shoal), 수비 암초(Subi Reef)는 간조노출지로서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에 대한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고, 점유나 기타 방법에 의한 전유(appropriation) 대상이 아님.
6. 가븐 암초(Gaven Reef)와 맥케넨 암초(McKenna Reef : 휴즈 암초(Hughes Reef 포함))는 간조노출지로서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에 대한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지만 그 저조선이 영해 기선으로 사용될 수는 있음.
7. 존슨 암초(Johnson Reef), 콰터론 암초(Cuarteron Reef)와 피어리 크로스 암초(Fiery Cross Reef)는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에 대한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음.

필리핀이 청구취지 3, 4, 6, 7에서 그 법적 지위를 문제 삼은 해양지형물은 모두 10개에 달한다. 이들 해양지형물은 모두 난사군도에 위치하는 산호초로서 모두 중국 기선으로부터의 거리가 필리핀 기선으로부터의 거리보다 훨씬 먼 위치에 있다. 이상의 내용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2 필리핀 청구취지와 관할권 판정 및 본안 판정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으로는 김원희, 2016a, 앞의 글, 75~76쪽 참조.

13 유엔해양법협약 영어 조약문에는 ‘shoal’이라는 단어나 나오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어 공식 번역에도 ‘shoal’의 번역어는 나오지 않는다. 이 글에서는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shoal’을 ‘사주(砂洲)’로 번역한다.

14 유엔해양법협약 공식 번역에서 ‘reef’는 ‘암초’로 번역되고 있다(제6조, 제47조 제1항, 제6항). 이 글에서도 공식 번역을 따라 ‘reef’를 ‘암초’로 번역한다.

청구취지	해양지형물 이름	쟁점	비고
3	스카버러 사주		
7	존슨 암초	‘암석’인가 ‘권원 창출 섬’ ¹⁵ 인가?	
	콰터론 암초		
	피어리 크로스 암초		
4	미스치프 암초	간조노출지인가 고조지형물 ¹⁶ 인가?	
	세컨드 토마스 사주		
	수비 암초		
6	가븐 암초		세 암초가 간조노출지라고 하더라도 저조선이 영해기선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함.
	맥케넨 암초		
	휴즈 암초		

2. 간조노출지 해당 여부에 관한 판정

해양지형물의 법적 지위를 ‘간조노출지’, ‘섬’, ‘암석’으로 나누어 논하는 경우 논의 전개의 난점 중 하나는 ‘섬’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해양법협약 제121조 제1항의 ‘섬’ 정의에 따르면 고조 시 수면 위에 노출되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 지역은 ‘섬’이다. 그런데 제121조 제1항의 ‘섬’ 중에서도 제121조 제3항의 ‘암석’에 해당하는 ‘섬’은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가질 수 없다. 그리하여 해양법협약상 섬은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가지는 ‘섬’과 그것을 가지지 못하는 ‘섬’으로 나뉘며 후자를 특히 ‘암석’이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해양법협약과 관련된 논의 과정에서 ‘섬’을 언급하면 그것이 다음 두 가지 중 어느 지형물을 지칭하는지가 불명확하게 된다. 즉 협약 제121조 제3항의 ‘암석’을 포함한 ‘섬’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제121조 제3항의 ‘암석’은 제외하고 자신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가지는 ‘섬’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 없다. 이런 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글에서는 다음과 같이 용어를 구별하여 쓰려고 한다. 우선 자신의 배타적

15 ‘권원 창출 섬’의 의미에 관해서는 후술, ‘2. 간조노출지 해당 여부에 관한 판정’ 참조.

16 ‘고조지형물’의 의미에 관해서는 후술, ‘2. 간조노출지 해당 여부에 관한 판정’ 참조.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가지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제121조 제1항의 정의에 해당하는 모든 해양지형물을 ‘고조지형물(high-tide features)’로 부른다.¹⁷ 이는 ‘간조노출지’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협약 제121조상의 섬·암석 구별을 넘어서 모든 지리학적 ‘섬’을 지칭하기에 편리하다. 그러므로 ‘고조지형물’은 해양법협약 제121조 제3항의 ‘암석’을 당연히 포함하는 개념이다.

고조지형물 중에서도 특히 자신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가지는(또는 가질 수 있는)¹⁸ 것을 이 글에서는 ‘권원 창출 섬(entitled island)’¹⁹으로 부른다. 해양법협약 제121조 제3항의 암석과 명확히 구별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이 글의 용어법으로는 협약 제121조 제1항의 정의를 충족시키는 섬(고조지형물)은 ‘권원 창출 섬’과 ‘암석’으로 다시 구분된다.

재판에서 간조노출지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된 해양지형물은 모두 여섯 개이다. 필리핀은 이들 여섯 개 해양지형물 모두를 간조노출지로 주장하였다.²⁰ 중국은 재판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중국은 미스치프 암초와 피어리 크로스 암초를 영해를 가지는 고조지형물로 주장하는 것으로 인정되었다.²¹ 나아가 중국은 난사군도 전체를 집합적으로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을 가지는 해양지형물로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되었다.²²

중국은 많은 간척사업과 구조물 건설 등을 통하여 이들 해양지형물의 모습과 상태를 인위적으로 변경하였다. 중재재판부는 이들 해양지형물의 법적 지위를 판단하는 데 이러한 인위적 변경 사실을 가장 먼저 검토하였

17 판정에서도 para. 209 이후 ‘고조지형물’이라는 용어가 다수 사용되고 있다.

18 주지하다시피 해양법협약 제121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섬이라고 하더라도 배타적 경제수역은 연안국의 설정 행위가 없으면 가지지 못한다.

19 섬 주변에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 관한 섬 영유국의 권리를 창출하거나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20 본안 판정, para. 292.

21 본안 판정, para. 300.

22 본안 판정, para. 301.

다. 재판부는 간조노출지의 인공적 변형이 간조노출지를 섬으로 변경시킬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²³ 때문에 중국에 의한 인공적 변형 이전의 자연적 상태를 확인하여 간조노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았다.²⁴

특정 수역의 밀물은 연중 일정하지 않으며 기상 조건 등에 따라서도 밀물 높이는 달라진다. 그러므로 간조노출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어느 때 측정된 해수면 높이를 ‘밀물’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판정은 간조노출지 여부에 관한 결정을 위하여 특정 방식의 밀물 데이터에 따라야 한다는 조약 규정이나 관습국제법 규칙은 없다고 보았다. 해도에는 밀물 때 수면 아래에 잠기는 암초가 표시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각국은 자국 해도를 위하여 사용되는 밀물 높이의 데이터를 근거로 주장을 제기할 수 있다고 인정하였다.²⁵

판정은 ‘밀물’ 측정의 실제 문제를 다룬다. 판정이 이 문제를 다루는 태도는 실제적인 판단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없으면 측정 데이터 차이는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판정은 남중국해의 조수 간만 측정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기준 측정 데이터 문제는 문제 삼을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²⁶ 위성사진은 해상도가 낮거나 오차가 크며, 해양지형물 관측에 적합하지 않고, 특정 시간에 촬영되어 시간적 변화에 따른 해양지형물의 모습을 보여줄 수 없는 등의 한계 때문에 단독으로는 판단 근거 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²⁷ 재판부는 직접 문제가 되는 해양지형물을 방문하여 관찰할 수 없었다. 또 위성사진 자료 등의 신뢰성도 제한이 있었다. 그 때문에 더 강한 증거가 되는 것은 해도, 측량(surveys) 기록, 수로지(sailing directions)

23 본안 판정, para. 305.

24 본안 판정, para. 306.

25 본안 판정, para. 311.

26 본안 판정, para. 313.

27 본안 판정, paras. 322~326.

등으로 보았다.²⁸ 재판부가 판단 근거 자료로 삼은 것들은 영국 군함 수심도와 측량 기록, 영국 해군 수로지, 영국 군함 방문에 근거한 해도상 표시, 일본 제국해군 수로지와 해도, 중국 해군본부 수로지, 중국 해도 등이다.²⁹

3. 섬 또는 암석 해당 여부에 관한 판정

1) 논증 방식

중재재판부는 필리핀 청구취지 3, 5, 7을 특정 해양지형물이 '권원 창출 섬'인지 해양 권원을 창출하지 못하는 '암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문제로 이해하였다. 그런데 필리핀의 제5번 청구취지는 중재재판부의 이해와는 달리 미스치프 암초와 세컨드 토마스 사주가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일부'라고 판정하고 선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스치프 암초와 세컨드 토마스 사주가 권원 창출 섬이라면 이 두 '섬'에 관하여 필리핀과 중국 사이의 영유권 분쟁이 존재하므로 이 두 해양지형물이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일부'라고 판정하고 선언할 수 없다. 그런 점을 고려하면 필리핀의 제5번 청구취지는 사실상 이 두 해양지형물이 '권원 창출 섬'이 아니라고 판정하고 선언할 것을 요구하는 것과 같다.

한편 필리핀의 제4번 청구취지에 대한 판단에서 미스치프 암초와 세컨드 토마스 사주가 간조노출지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이들 두 해양지형물이 권원 창출 섬인지 아니면 해양법협약 제121조 제3항에서 말하는 '암석'에 해당하는지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실제로 판정은 이 두 해양지형물을 간조노출지로 판단하였으므로 필리핀의 제5번 청구취지와 관련하여 두 해양지형물이 '권원 창출 섬'인지 '암석'인지를 판단할 필요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필리핀의 제5번 청구취지를 미스치프

²⁸ 본안 판정, para. 327.

²⁹ 본안 판정, paras. 352~381.

암초와 세컨드 토마스 사주의 '권원 창출 섬', '암석' 여부에 관한 판단 문제로 이해하였다.

재판부는 특정 해양지형물이 권원 창출 섬인지 '암석'인지의 판단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접근법을 채택하였다. 즉, 난사군도에서 가장 큰 '고조지형물' 6개를 들고, 이들이 섬이 아니라면 난사군도의 나머지 해양지형물은 당연히 섬이 아니라는 논증 방식을 취하고 있다.³⁰ 이런 논증 방식을 채택하였기 때문에 판정은 필리핀 청구취지에 포함된 바 없는 이투 아바(Itu ABA)의 해양법상 법적 지위를 자세하게 논하고 있다.

2) 필리핀의 주장과 중국 입장

필리핀은 자국 준비서면(memorial)에서 먼저 해양법협약 제121조 제3항 해석론을 전개하였다. 그러한 해석론을 난사군도 내 이투 아바를 비롯한 여러 해양지형물에 적용하면서 스카버러 사주와 난사군도 내 다른 '고조지형물'은 협약 제121조 제3항의 '암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³¹ 필리핀이 일본의 오키노토리시마에 대한 중국 입장을 지적하고 있는 점³²은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이다. 결론적으로 필리핀은 스카버러 사주, 존슨 암초, 콰터론 암초, 피어리 크로스 암초가 권원 창출 섬이 아닌 '암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문제에 관하여 재판부가 확인한 중국 입장은 다음과 같다.

우선 중국은 난사군도 전체(the Nansha Islands as a whole)를 근거로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을 가진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중국은 일본의 대륙붕 주장과 관련하여 2009년 2월 6일자, 2011년 8월 3일자로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낸 구상서에서 일본의 오키노토리시마는 '암석'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추정컨대 중국은 스카버러 사주를 권원 창출

³⁰ 본안 판정, para. 407.

³¹ 필리핀의 주장 내용에 관해서는 본안 판정, paras. 408 이하 참조.

³² 본안 판정, para. 439.

섬으로 보고 있다. 또 이투 아바 역시 섬으로 보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존슨 암초, 콰터론 암초, 피어리 크로스 암초, 가본 암초, 맥케넨 암초를 특정하여 그것을 근거로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주장하지는 않는다.³³

3) 협약 제121조 제3항 해석론

(1) 해석 원칙과 방법

판정은 협약 제121조 제3항 해석에 관한 원칙과 방법부터 해명하고 있다.

판정에 따르면 해석의 기본이 되는 원칙은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이하 ‘1969 조약법협약’이라 함)’ 제31조와 제32조에 규정된 원칙들이다. 즉 성실한 문언 해석을 하되 조약문의 문맥, 그리고 조약의 대상과 목적(목적과 취지)을 참조한다는 것이다. 이런 원칙에 입각하여 판정은 해양법협약 제121조 제3항 규정에 등장하는 용어들의 사전적 의미를 확인하는 것으로부터 해석을 시작하고 있다.

판정은 1969 조약법협약 제31조상 원칙에 따라 해양법협약 제121조 제3항을 해석하더라도 의미의 모호성 또는 불투명하거나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으로 보지 않았지만, 의미 확인을 위하여 1969 조약법협약 제32조상 해석의 보충적 수단을 사용한 해석도 하고 있다. 이하, 판정 해석론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2) 문언 해석

(가) 암석

우선 ‘암석’은 해양법협약 제121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고조지형물로서의) ‘섬’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자연적으로 형성되었으며 밀물 때 수면 위에 있는 해양지형물은 ‘암석’에 해당할 수 있다.

³³ 중국 입장의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본안 판정, paras. 446 이하 참조.

어떠한 해양지형물이 ‘암석’인지의 여부는 해양법협약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므로 그 해양지형물의 지질학적 구성과는 무관하다. 해양지형물의 명칭이 ‘섬’인지 ‘암석’인지, 아니면 ‘암초’ 또는 ‘시주’인지의 여부도 협약상 당해 해양지형물의 법적 지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도 자명한 일이다.³⁴

(나) ‘할 수 없는’

해양법협약 제121조 제3항은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 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이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과 같은 해양 권원을 창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의 ‘할 수 없는(cannot)’이라는 말의 의미에 관하여 판정은 고조지형물이 인간 거주나 독자적인 경제 활동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능력 또는 가능성(capacity)을 의미하는 것이며 실제 거주, 실제의 독자적 경제활동 유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였다.³⁵ 다만, 과거의 실제 거주 또는 독자적인 경제활동 유지 사실은 관련 증거(relevant evidence)가 된다는 점은 인정하였다.³⁶

(다) 유지

해양법협약 제121조 제3항의 ‘유지’에 관하여 재판부는 그 사전적 의미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즉, 사람이 계속하여 생존하고 건강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식품, 음료 등을 공급하거나 그 원천이 되는 일, 또는 식품이나 음료와 같이 사람에게 필수적인 영양을 부여하는 일이 ‘유지’이다. 다른 표현으로는 식품, 음료와 기타 필수품을 공급함으로써 생명을 유지하는 일이다.

‘유지’라는 개념은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먼저 필수품의 뒷받침과 공급(support and provision)이 있어야 하고, 시간적으로 그런 뒷받침과

³⁴ 본안 판정, paras. 479~482.

³⁵ 본안 판정, para. 483.

³⁶ 본안 판정, para. 484.

공급이 일정한 기간 지속되어야 하며 일회로 끝나거나 단기간에 그쳐서는 안 되고, 질적으로는 최소한의 적정 기준(proper standard)을 충족시키는 것이어야 한다.³⁷

(라) 인간 거주

해양법협약 제121조 제3항에 따르면 권원 창출 섬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이 거주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인간 거주’ 요건을 충족시키는 데는 단순히 소수 사람이 해양지형물에 존재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사람의 상주(permanent or habitual residence)가 필요하다.³⁸ 사람이 상주하려면 특정 해양지형물에 정착된 방식으로 체류하거나 거주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의 일시적인 것에 그치지 않는 거류(non-transient presence)가 필요하다. 이런 인간 거주를 위해서는 일정 수 사람이 상당한 기간 동안 그곳에 상주할 수 있도록 하는 음식, 음료와 주거를 해양지형물이 뒷받침하거나 유지하거나 공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보았다.³⁹

또 단순히 그곳에서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 거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 판정은 해양법협약 제121조 제3항이 매일매일 생계를 유지하고 상당수 사람들이 무기한으로 생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요건 외에 인간의 단순한 체류와 정착된 거주를 구별하는 경계는 직접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⁴⁰

(마) ‘또는’

해양법협약 제121조 제3항은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또는(or)’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가

지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을 두고 특정 해양지형물이 권원 창출 섬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거주가능성과 독자적인 경제활동이라는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둘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지를 두고 해석론적 견해가 나뉘고 있었다. 국내 학설도 해양지형물이 권원 창출 섬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거주가능성과 독자적인 경제활동 유지라는 두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견해⁴¹와 둘 중 어느 한 요건만 갖추면 된다고 보는 견해⁴²가 나뉜다.

판정은 해양법협약 제121조 제3항의 ‘또는’의 의미를 인간의 거주가능성과 독자적인 경제활동 유지라는 두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했을 때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가질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하였다. 다시 말해 둘 중의 어느 한 가지 요건을 갖추면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⁴³ 그렇게 보면 해양법협약 제121조 제3항은 누적된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전체 문장이 부정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은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해양지형물에 대해서는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이 부정된다(denied)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논리적으로는 어느 하나의 요건만 충족되면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이 인정되는 결과가 된다. 이런 논리적 추론 과정을 거쳐 판정은 결론적으로 두 요건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그 해양지형물은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가진다고 해석하였다.⁴⁴

인간은 경제활동을 하며,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곳에 인간이 거주하는 일은 거의 없다는 점에서 경제활동과 인간 거주는 사실상 연결된 개념이라는 점을 판정은 인정하고 있다. 다만 판정은, 경제활동을 뒷받침할 자원이 없

37 본안 판정, paras. 486~487.

38 본안 판정, para. 489.

39 본안 판정, para. 490.

40 본안 판정, para. 492.

41 박찬호, 2002, 「섬의 국제법상 지위」, 『국제법학회논총』, 제47권 제2호, 31쪽; 이창렬, 2014, 「유엔해양법협약상 섬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혁적 고찰」, 『성균관법학』, 제26권 제3호, 400쪽.

42 정진석, 2010a, 「UN해양법협약 121조 3항 ‘암석’의 해석에 대한 고찰」, 『법학논총』,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제22권 제2호, 427~428쪽.

43 본안 판정, paras. 494, 497.

44 본안 판정, para. 494.

음에도 불구하고 인간 거주를 유지할 수 있는 해양지형물의 존재 또는 해양지형물상에 직접 거주하는 데 필요한 조건은 결여하고 있지만 경제활동은 유지할 수 있는 해양지형물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관하여 해양법협약 제121조 제3항 규정은 열려 있다고 본다. 특히 전통적인 생활 양식을 유지하기 위하여 여러 섬을 조화롭게 이용하는 경우가 그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⁴⁵

(바) 독자적인 경제활동

판정은 해양법협약 제121조 제3항의 “독자적인 경제활동”이라는 표현을 다시 구분하여 해석하고 있다. 우선 ‘경제(economic)’라는 말의 통상적 의미를 ‘어떤 공동체의 물질적 자원 개발과 규율에 관계되는 것’, ‘재화와 용역이 산출되고 판매되고 구입되며 교환되는 과정 또는 체제와 관련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다음으로 ‘활동(life)’⁴⁶이라는 말의 통상적 의미는 그러한 자원을 탐사, 개발, 배분하는 일정 수준의 지역적 인간 활동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자원의 존재만으로는 ‘활동’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또 ‘유지’라는 말에 포함된 시간적 요소를 해석에서 고려하여야 하므로 이 조문은 계속적인 경제활동을 상정하고 있다고 보고, 일회성 거래 또는 단기간 존속하는 사업은 지속적인 경제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⁴⁷

판정은 ‘독자적인(of their own)’이라는 표현도 구분하여 해석하고 있다. 판정은 이 말의 의미를 무엇보다도 부정적인 관점에서 이해하여 ‘외부 자원 유입에 압도적으로 의존하고 있거나 현지 주민의 관여 없이 오로지 채취 대상으로 사용되는’ 해양지형물의 경우에는 ‘독자적인’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해석을 하고 있다.⁴⁸ 나아가 독자적인 경제생활은

45 본안 판정, para. 497.

46 유엔해양법협약 영어 본문의 ‘life’는 ‘생활’로도 번역될 수 있다. 한국어 공식 번역은 ‘활동’으로 되어 있으며, 이 글에서는 공식 번역을 따른다.

47 본안 판정, para. 499.

섬의 근해에서 유지되어야 하며,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이용하여 유지되어서는 안 된다.⁴⁹ 판정은 독자적인 경제활동이 해양지형물 자체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영해에서의 활동은 해양지형물 자체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를 취하였다.⁵⁰

(3) 문언 해석 이외의 방법에 의한 해석

판정은 해양법협약 제121조 제3항 해석에서 무엇보다도 문언 해석을 중시하고 있으며, 문언 해석을 기본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판정이 채택하고 있는 문언 해석의 타당성과 합리성을 확인하고 증명하기 위하여 다른 해석 방법에 따른 해석론도 동시에 전개하고 있다. 그런 해석론으로는 해양법협약의 문맥을 고려한 해석,⁵¹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한 해석,⁵² 해양법협약 체결시의 준비문서를 참조한 해석⁵³ 등을 전개한다. 나아가 1969 조약법협약 제31조 제3항에 따라 해양법협약 해석에서 문맥과 함께 참작되어야 하는 것으로 “조약의 해석에 관한 당사국의 합의를 확정하는 그 조약 적용에 있어서의 추후의 관행”이 있는지에 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이 점에 관해서는 판정이 여타 해석 방법에 의하여 도달한 해석적 결론과 다른, 제121조 제3항 해석에 관한 국가 관행에 근거한 합의의 증거는 없다고 보았다.⁵⁴

문언 해석 외에 문언 해석의 타당성과 합리성을 확인하고 증명하기 위하여 판정이 채택한 다양한 해석 방법 중에서도 특히 해양법협약 준비문서를

48 본안 판정, para. 500.

49 본안 판정, paras. 501~502.

50 본안 판정, para. 503.

51 본안 판정, paras. 508~511.

52 본안 판정, paras. 512~520.

53 본안 판정, paras. 521~538.

54 본안 판정, para. 553.

검토한 부분은 학술적으로도 잘 정리되어 있어 인상적인 부분이다.

(4) 제121조 제3항 해석에 관한 결론

문언 해석을 기본으로 하고 다양한 보충적인 해석 방법들을 사용하여 해양법협약 제121조 제3항을 해석한 결론으로 판정은 다음과 같은 아홉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⁵⁵

첫째, 해양법협약 제121조 제3항에 ‘암석’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다고 해서 동 조항이 실제 암석으로 구성된 해양지형물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고조지형물의 지질학적, 지형학적 특징은 고조지형물을 제121조 제3항에 따라 분류하는 것과는 무관하다.⁵⁶

둘째, 해양지형물의 법적 지위는 인간 거주 유지나 독자적인 경제활동 유지 능력을 확대시키려는 의도로 해양지형물에 가해진 외부적인 추가물이나 변경을 배제하고 (인간의 거주가능성이나 독자적인 경제활동 가능성과 같은) 자연적인 능력(natural capacity)에 근거하여 결정되어야 한다.⁵⁷

셋째, 인간 거주와 관련하여 결정적인 요소는 거주민이 (이들의 이익을 위하여 배타적 경제수역의 자원이 보호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 그 해양지형물의 자연적인 주민에 해당하여 거주가 일시적인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인간 거주’는 그 해양지형물에 안정된 인간 공동체가 거주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한 공동체가 반드시 커야 하는 것은 아니다. 멀리 떨어진 환초라면 소수 사람들이나 가족 집단으로도 충분하다. 나아가 거주지를 옮겨 가면서 사는 사람들(nomadic people)이 정기적이고 관습적으로 해양지형물에 거주하는 것도 거주에 해당한다.⁵⁸

넷째, 독자적인 경제활동이란 인간이 거주할 필요성과 연결되어 있으며

55 본안 판정, paras. 539~551.

56 본안 판정, para. 540.

57 본안 판정, para. 541.

58 본안 판정, para. 542.

독자적인 경제활동과 인간 거주는 대부분의 경우 서로 동반되는 것이다. 경제활동이란 하나의 해양지형물 또는 일단의 해양지형물에 거주하고 그것을 집으로 삼는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과 생계를 의미한다. 경제활동은 ‘독자적’인 것이어야 하므로 해양지형물 자체의 주변을 향한 것이어야 하며 해양지형물을 둘러싼 영해 수역이나 그 해저에 초점을 맞춘 것이어서는 안 된다. 전적으로 외부 자원에 의존하는 경제활동이나 현지 주민의 관여 없이 채취활동 대상으로 해양지형물을 이용하는 경제활동은 독자적인 경제활동이 되는 데 필요한 해양지형물 자체와의 연결을 결여하고 있다.⁵⁹

다섯째, 인간의 거주가능성이나 독자적 경제활동 유지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그런 해양지형물은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가진다. 다만, 재판부는 통상적인 경우 안정적인 인간 공동체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양지형물이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한다. 단일한 해양지형물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서로 관련된 해양지형물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존속하는 주민은 예외이다.⁶⁰

여섯째, 제121조 제3항은 인간 거주 또는 독자적 경제생활을 유지하는 해양지형물의 가능성(또는 능력, capacity)과 관련되며, 현재 거주자가 있는지 또는 거주자가 있어 왔는지, 현재 경제활동 본거지인지 또는 본거지로 존속했는지의 여부는 무관하다.⁶¹

일곱째, 인간 거주 또는 독자적 경제생활을 유지하는 해양지형물의 가능성(또는 능력, capacity)은 개별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해양법협약 기초자들은 특정 기준들을 배제하고 제121조 제3항에서 보는 일반적인 표현을 채택하였다. 재판부는 해양지형물의 자연적인 능력에 공헌하는 주된 요소들을 특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특정 요소들로는 해양지형물에서 일단의 사람들이 정해지지 않은 불특정 기간 동안 생활하는 데 충분한 양의 물, 음식,

59 본안 판정, para. 543.

60 본안 판정, para. 544.

61 본안 판정, para. 545.

거주지의 존재를 들 수 있다. 인간 거주와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하는 해양지형물의 능력은 지형물별로 다 달라서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공식으로 표현할 수는 없다.⁶²

여덟째, 해양지형물이 인간 거주와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할 때에는 작은 도서 지형물들이 집합적으로 인간 거주와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외부적인 공급에 의한 인간 거주 유지와 경제활동 유지를 배제한다고 해서 멀리 떨어진 섬의 주민들이 여러 개 섬들을 사용하여 생존하고 생계를 이어간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⁶³

아홉째, 특정 해양지형물의 객관적, 물리적인 상태에 관한 증거는 보통은 권원 창출 섬과 ‘암석’을 명확하게 구별하는 데 충분하다. 그러나 식물이 전혀 자라지 않고 식수가 없으며 생존에 필요한 음식물도 없는 해양지형물이 ‘암석’이라는 것은 분명하며 그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권원 창출 섬과 ‘암석’의 경계선상에 있는 해양지형물을 결정하는 데에는 물리적 상태에 관한 증거만으로는 불충분하다.⁶⁴

4) 각 해양지형물의 법적 지위 판단

이상의 해석론에 근거하여 판정은 권원 창출 섬인지 아니면 ‘암석’인지가 문제된 해양지형물들의 법적 지위를 판단하였다. 스카버러 사주, 존슨 암초, 콰터론 암초, 피어리 크로스 암초 등 문제가 된 지형물 모두를 권원 창출 섬이 아닌 ‘암석’으로 판단하였다. 그러한 판단 이유로 제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식수, 식물, 거주 공간 결여, 그러한 조건을 갖춘 지형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음, 지형물 근해에서 조업하는 어민과 지형물 간 연결 결여, 어업 이외

62 본안 판정, para. 546.

63 본안 판정, para. 547.

64 본안 판정, para. 548.

의 다른 경제활동 증거가 없다는 점,⁶⁵ 지형물 상태가 해발 수 미터에 지나지 않으며 면적도 수 평방미터에 불과하다는 점, 해양지형물에서의 중국의 존재가 필연적으로 외부 공급에 의존한다는 점, 1988년 중국이 등장하기 이전에 해양지형물에서 인간 활동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⁶⁶ 해양지형물이 작고 황폐하다는 점 등이다. 그 밖에도 판정은 청구 외의 해양지형물인 이투 아바, 티투(Thitu), 웨스트 요크(West York), 스프래틀리 섬(Spratly Island), 사우스-웨스트 케이(South-West Cay), 노스-이스트 케이(North-East Cay) 등의 법적 지위에 관해서도 판단하였는데 모두 권원을 창출하지 못하는 ‘암석’으로 판정하였다.

III. 판정의 의의와 평가

1. 판정의 의의

국제재판에서 해양법협약 제121조 제3항의 해석이 문제가 된 경우는 많았다. 특히 2009년에 국제사법재판소가 판결한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흑해 해양경계획정사건에서 루마니아는 뱀섬(Serpents' Island)을 ‘암석’으로 주장하였고 우크라이나는 권원 창출 섬으로 각각 주장하였다. 그러나 국제사법재판소는 해양법협약 제121조 제3항 해석론을 회피하고 해양경계획정에서의 해양지형물의 효과 문제로 사건을 해결하였다.⁶⁷ 이제까지 해양법협약 제121조 제3항의 해석에 관하여 국제적인 법정들이 취하여 온

65 본안 판정, para. 556.

66 본안 판정, para. 559.

67 이 사건 판결 내용을 소개하고 분석한 국내 문헌으로는 김현수, 2009, 「루마니아-우크라이나간 흑해 해양경계획정 사건에 관한 분석 및 평가」, 『해사법연구』, 제21권 제2호, 101~134쪽; 김용환, 2009, 「ICJ 흑해 해양경계획정 판결의 주요 쟁점 및 시사점」, 『국제법학회논총』, 제54권 제2호, 229~251쪽; 이창위, 2010,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흑해 해양경계 사건」, 『법학논고』, 제33집, 405~430쪽; 정진석, 2010b, 「흑해

회피적인 태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판정은 국제재판에서 최초로 동 조항의 본격적인 해석론을 전개한 것으로의 의의가 크다.

생각건대, 다자조약을 체결할 때에는 체결을 위한 타협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약 규정에 의도적인 모호성을 남기는 일이 많다.⁶⁸ 조약체결을 위한 협상 당사자의 수가 많고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할수록 그런 의도적 모호성은 늘어난다. 해양법협약 제121조 제3항의 규정도 더 넓은 해양관할을 확보하려는 국가와 인류 공동 유산인 공해를 더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 협상 참가국 간의 타협, 또는 얼마나 많은 고조지형물로서의 섬을 가지고 있는지에 유례하는 국가별 입장 차이의 타협의 산물로 보아야 하며,⁶⁹ 그런 의미에서 의도적인 모호성을 내포한 조항이었다. 결국 그런 모호한 조항의 의미는 국가의 사후 실행과, 학설, 국제판례에 의하여 의미가 구체화되고 확정되어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국제판례는 다분히 추상적인 조약조문을 구체화하는 입법적 기능을 수행하며, 그 결과 다양한 국가 실행에 대한 통일적인 지침을 제공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 판정은 그런 관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2. 조약해석론의 관점에서의 판정 평가

법정의 판단이 언제나 그러하듯이 이 판정 중재재판부도 법규정 ‘해석’을 통하여 청구취지에 답하고 있다. 이 글 주제와 관련하여 해석 대상이 된 법규정은 말할 것도 없이 해양법협약 제121조, 그중에서도 특히 제3항의 의

해양경계획정사건(루마니아 v. 우크라이나) 판결의 의의, 『서울국제법연구』, 제17권 제1호, 29~45쪽; 이석용, 2012, 「국제사법재판소의 흑해해양경계획정사건 판결에 나타난 특징분석」, 『서울법학』, 제20권 제2호, 1~33쪽 등 참조.

⁶⁸ Tams, Christian J., Tzanakopoulos, Antonios and Richford, Athene E. eds., 2014, *Research Handbook on the Law of Treaties*, Cheltenham: Edward Elgar, p. 275.

⁶⁹ Harrison, James, 2011, *Making the Law of the Sea: A Study in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44~46.

미이다.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로 판정은 우선 1969 조약법협약을 제시하였다.⁷⁰ 1969 조약법협약의 관련 규정에 따라 판정은 조약의 대상과 목적을 참조한 문언 해석을 기본으로 삼고 조약의 교섭 기록과 조약 체결시 사정을 포함한 해석의 보충적 수단도 사용하고 있다.

1969 조약법협약이 규정하는 판정 해석 결과에 대하여 이석용 교수는 판정이 오랜 과제로 남겨진 해양법협약 제121조의 해석을 포함하여 해양지형 문제를 “깊이가 있고 과감하게 다룬 것”의 의미를 인정하면서⁷¹ 특히 해양법협약 제121조 제3항의 “인간의 거주 또는 독자적 경제생활에 관한 조건을 매우 엄격하게 분석하고 해석”한 것으로 보았다. 이석용 교수는 판정이 요구하는 인간 거주 또는 독자적 경제생활의 구체적 기준은 “기존 국가들의 실행에 비추어 보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하면서 판정이 제시한 기준이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수용될 수 있을지에 관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유보적 입장을 취하였다.⁷²

김현정 교수는 판정의 해양법협약 제121조 해석에 상당히 비판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판정이 인간의 거주가능성 해석과 관련하여 해양법협약을 둘러싼 상황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것,⁷³ 조약 준비문서를 참조하는 과정에서 해양법협약 제121조 제3항의 목적을 과도한 해양 권원 주장을 제한하는 데 있다고 쉽게 단정한 점,⁷⁴ 해양법협약 제121조 제3항 해석을 위하여 사실상 해양지형물 크기를 묵시적인 기준으로 삼은 점⁷⁵ 등을 비판한다. 김현정 교수에 따르면 “이는 협약 성안자들의 원래 의도와 다르게 조항을 해석한 것”이다. 이러한 비판을 하면서도 김현정 교수는 “만약 협약 당사국

⁷⁰ 본안 판정, para. 476.

⁷¹ 이석용, 2016, 앞의 글, 135쪽.

⁷² 이석용, 2016, 위의 글, 135~136쪽.

⁷³ 김현정, 2016, 앞의 글, 235~236쪽.

⁷⁴ 김현정, 2016, 위의 글, 236쪽.

⁷⁵ 김현정, 2016, 위의 글, 242~246쪽.

들이 이 해석에 동의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번 중재판정은 협약 해석의 추후 관행을 확인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덧붙임으로써 판정이 추후의 미나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⁷⁶

해양지형물의 법적 지위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판정이 묵시적으로 해양지형물의 크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비판에는 정진석 교수도 동의하고 있다.⁷⁷ 나아가 정진석 교수는 판정이 해양지형물의 자연적 상태를 중시하는 판정 태도도 비판하고 있다. 정진석 교수에 따르면 판정의 이와 같은 태도는 “인간이 과학과 기술 발달에 따라서 해양지형에 가할 수 있는 노력과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나아가 정진석 교수는 “인간에 의한 변화를 고려하지” 않으면 “법의 필요성과 진화는 논의할 실익이 없는 개념”이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⁷⁸ 그 밖에도 정진석 교수는 판정이 섬들을 하나의 전체로 묶어 권원 창출 섬인지 암석인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보고, 그것은 군도가 아닌 섬들에게 군도와 같은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⁷⁹

정진석 교수는 판정의 해양법협약 해석이 “전체적으로 조약문과 조약의 목적에 충실하고 합리적”이라고 평가하지만,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엄격하여” 이 해석 기준을 통과하여 권원 창출 섬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섬이 얼마나 될지 의심스럽다는 견해도 함께 피력하고 있다.⁸⁰

이 글은 해양법협약 제121조 제3항의 해석 문제에서 판정의 해석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그에 대한 위 비판들이 타당한 것인지를 논하려는 의도는 없다. 판정을 지지하는지 아니면 그에 대한 비판을 지지하는지는 정답과 오답의 문제가 아니며 국제사회의 공동가치나 질서, 해양법을 둘러싼 현실 문제 인식 차이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⁷⁶ 김현정, 2016, 앞의 글, 252쪽.

⁷⁷ 정진석, 2017, 앞의 글, 445쪽.

⁷⁸ 정진석, 2017, 위의 글, 446쪽.

⁷⁹ 정진석, 2017, 위의 글, 448~451쪽.

⁸⁰ 정진석, 2017, 위의 글, 451쪽.

다만, 판정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내용에 대한 검토와 비판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 즈음하여, ‘판정 내용을 비판한다는 것의 의미’를 조약해석론의 관점에서 한 번 음미해 두고자 한다.

판정은 자신의 조약해석 방법론의 근거를 1969 조약법협약 규정에서 찾았다. 그러나 1969 조약법협약 제31조와 제32조의 관련 규정을 제시한다고 해서 해석의 근거, 어떠한 해석 방법을 취하여야 하는지의 문제가 해소되지는 않는다. 1969 조약법협약의 해석 규정 자체가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해석이 규정 기초자의 의도를 확인하는 작업인지 아니면 해석자의 의도와 목적, 이해 방식에 따라 광범위한 자유와 재량이 주어지는 작업인지는 해석의 본질을 둘러싼 오랜 대립의 대상이다. 이 문제가 1969 조약법협약 규정으로 해소된 것은 아님은 물론이다. 따라서 1969 조약법협약이 해석에 관한 규정을 조약상의 ‘실정법’으로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약 해석에 유연성과 재량을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법적 추론에 엄격한 형식주의적 제한을 가할 것인지의 문제는 끝나지 않았다.⁸¹ 이 문제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조약에 어느 정도의 ‘발전적 해석(evolutionary interpretation)’을 허용할 것인지의 문제로 등장하기도 한다.⁸²

재판관은 법의 적용을 전문적인 업무로 삼는 ‘법의 직원(Rechtsstab)’⁸³으로서 언제나 법 해석 문제에 부딪힌다. 그때마다 재판관은 실은 하트가 지적한 ‘법문언의 개방 구조’⁸⁴와 사법재량 문제를 마주한다. 남중국해 중재재판 사건의 중재재판부 역시 예외가 아니다. 중재재판부는 형식과 외관으로는 1969 조약법협약의 해석 규칙에 따라 엄격하게 해양법협약을 해석하는 판정을 내렸을 수 있다. 그러나 재판관은 언제나 단순한 법 적용자의 입장을

⁸¹ Tams et als, eds., 2014, *op. cit.*, pp. 274~281.

⁸² 조약의 발전적 해석 문제를 잘 정리하고 있는 논문으로 심인혜, 2015, 「발전적 해석 시 당사국 공동의 의도」, 『서울국제법연구』, 제22권 제1호, 117~149쪽 참조.

⁸³ Reh binder, Manfred, 1993, *Rechtssozologie, 3, neubearbeitete Auflage*, Berlin: Walter de Gruyter, S. 3.

⁸⁴ Hart, H.L.A. 1994, *The Concept of Law, 2nd ed.*, Oxford: Clarendon Press, pp. 121~132.

넘어서 법 창조자의 지위에 자신을 놓을 수 있다. 재판관은 필연적으로 법 창조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중재재판부는 스스로를 해양 법협약 기초자들이 만든 규정을 단순히 적용하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재판관으로 인식하고 규정하였을지, 아니면 논쟁 대상이 될 수 있는 정치적 문제에 관하여 법적 해명을 제시하는 현실 참여 재판관으로 규정하였을지 알 수 없다. 만약 구체적인 사안에서 정의를 창조하는 것이 재판관의 임무라고 생각하였다면 중재재판부는 후자의 입장에 선 것이다. 그 경우 재판관은 단순한 법 적용자의 외관과 형식을 띄고 판결하는 경우에도 실은 정치적인 목적에 헌신하고 공익 고려를 판결의 핵심 내용으로 삼고 있을 수 있다. 비판법학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재판관은 자신이 속하는 계층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선입관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존재로 본다.

과거의 정치적 결정(1982년에 해양법협약 제121조의 텍스트로 고정된 내용)을 동중국해 해양지형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으로 볼 것인가(관행주의, 법실증주의의 해석 태도), 아니면 현 시점에서 최선의 미래(동중국해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를 만들어낼 수 있는 판단을 할 것인지를 두고 실은 중재재판부가 고심하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해양법협약 제121조 제3항의 해석으로서 권원 창출 섬의 지위를 인정하기 위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한 이번 중재판정은 중재재판부가 남중국해에서의 정의 실현과 안전, 평화 달성을 위하여 문제가 된 해양지형물에 어느 정도의 권원 창출이 인정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한 것으로 이해하고 싶다.

IV. 한일 간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판정의 함의

1. 독도의 법적 지위

한국과 일본은 모두 해양법협약 당사국이다.⁸⁵ 양국 간의 바다 폭은 400 해리를 넘는 곳이 없으므로, 양국은 해양법협약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 경계를 확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계획정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동해에서의 해양경계획정이 쉽지 않은 것이 독도의 존재 때문이라는 것은 주지하는 사실이다.

독도가 권원 창출 섬에 해당한다면 독도의 영유 귀속이 한일 간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 경계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왜냐하면 독도에 대하여 이른바 해양경계획정과 관련된 ‘완전한 효과(full effect)’를 인정할 경우 독도가 어느 국가의 영토인가에 따라 해양경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해양경계획정과 관련하여 완전한 효과를 가지는 독도가 한국 영토인 경우 당연히 해양법협약에 따른 한일 양국 간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는 독도와 일본 해안(오키도) 사이의 중간 선이 되어야 한다. 다만 비록 독도가 권원 창출 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해양경계획정과 관련하여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zero effect)에는 독도의 영유 귀속과 관계없이 한일 간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는 울릉도와 일본 해안(오키도) 사이의 중간 선이 될 것이다.

만약 독도가 권원을 창출하지 못하는 ‘암석’에 지나지 않는다면 독도의 영유 귀속 문제는 동해에서의 한일 간 해양경계획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해양경계획정과 관련하여 독도가 가지는 효과의 정도를 논할 필요도 없다. 이 경우 독도는 자신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한일 양국 간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경계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울릉도와 일본 해안 사이의 중간 선이 될 것이다.

독도의 해양법협약상의 법적 지위가 한일 간 동해 해양경계획정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이 문제는 일찍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예컨대 김찬규·김석현 공저의 1996년 논문은 독도가 해양법협약상 권원 창출 섬에 해당하며 따라서 자신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진다고 보고 있다.⁸⁶ 그 밖에도 이번 판정이 나오기 전에 여러 논자들이 독도를 해양법협약상 권원 창출 섬

⁸⁵ 해양법협약은 한국에 대하여 1996년 2월 28일에 발효하였고, 일본에 대하여 1996년 7월 20일에 발효하였다.

⁸⁶ 김찬규·김석현, 1996, 「독도의 법적 지위」, 『국제법평론』, 제1996-1호, 133~137쪽.

으로 보는 논고를 발표한 바 있다.⁸⁷

한국 정부의 경우 일본에 대하여 동해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로 처음에는 울릉도와 오키 도 사이의 중간 선을 주장하였다가 2006년 6월부터 독도와 오키 도 사이의 중간 선을 주장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꾸었다고 보는 경우도 있고⁸⁸ 독도가 권원 창출 섬인지 암석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바 없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⁸⁹ 어느 경우건 해양법협약상의 독도의 법적 지위가 한일 양국 간 동해 해양경계획정에서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해양법협약 해석상 독도가 권원 창출 섬인지 아니면 암석인지에 관하여 이번 판정은 하나의 대답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남중국해의 여러 해양지형물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판정의 판단과 이유에 비추어 볼 때 독도가 해양법협약상 권원 창출 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독도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이번 판정이 가지는 함의를 짚어보기 위하여 2016년 11월에 국회에서 개최된 토론회에서도 발제자인 이창위 교수는 “이번 중재판정의 기준에 따르면 독도는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갖기 힘든 암석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는 견해를 피력하였다.⁹⁰ 이러한 견해는 독도의 법적 지위와 관련한 판정 내용을 적절하고 정당하게 이해한 데 바탕한 것으로 인정된다.

판정이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해양법협약상 권원 창출 섬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거주나 독자적인 경제생활은 일회로 끝나거나 단기간에 그쳐서는 안 되며 일정한 기간 지속되어야 한다. 또 인간이 장기간 거주하려

면 공동체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며 그들이 거주하는 데 필요한 음식, 식수, 주거시설이 공급될 수 있어야 한다. 판정에 의하면 논리적으로는, 거주가 가능하지 않더라도 독자적인 경제활동이 유지될 수 있으면 ‘섬’에 해당할 수 있지만, 경제활동과 실제 거주는 사실상 연결된 개념이다. 경제활동 역시 지속적이어야 하며 일회성에 그치거나 단기간에 그쳐서는 안 된다. 또 권원 창출 섬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은 독자적인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오로지 외부 자원의 유입에 의존해서는 안 되며 정착한 주민의 생활과 관계없이 외부에서 자원을 개발하는 것에 한정되어서도 안 된다. 나아가 판정은 독자적인 경제생활이 섬의 근해에서 유지되어야 하며,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이용하여 유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지적하고 있다. 이런 점들에 비추어 독도를 해양법협약상의 ‘섬’으로 보기는 어렵다.⁹¹ 이번 중재판정이 내려진 이후 독도의 법적 지위에 대한 판정의 함의를 검토한 국내 논고들도 대체로 판정의 내용에 비추어 독도가 권원 창출 섬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⁹²

독도의 법적 지위에 대한 판정의 함의를 생각할 때 한국으로서는 판정 내용의 이해와 수용에 관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판정 내용을 전폭적으로 수용하여 독도를 ‘암석’으로 본다는 입장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맞게 배타적 경제수역 획정 등의 문제에서 대일 외교정책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일본이 여전히 독도를 ‘섬’으로 주장하는 경우 우리의 입장을 관철시켜 경계획정 문제를 처리할 법적 논거를 정치하게 준비하는 작업도 필요할 것이다.⁹³

87 그러한 논고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김원희, 2016b, 「남중국해 중재판정과 독도의 법적 지위에 대한 함의」, 『해양정책연구』, 제31권 제2호, 95쪽, 주 108 참조.

88 이창위, 2009, 「한국의 해양경계획정 문제에 대한 소고」, 『서울법학』, 제17권 제1호, 99~100쪽.

89 김원희, 2016b, 앞의 글, 95쪽.

90 이창위, 2016, 「남중국해 분쟁 중재판정의 독도문제에 대한 함의」, 강창일 국회의원·대한국제법학회 독도센터 공동주최 국회 토론회 자료집, 『필리핀-중국 해양분쟁에 대한 중재결과와 독도영토주권』, 20쪽.

91 박배근, 2016, 「2016년 독도영토주권 토론회 토론문」, 강창일 국회의원·대한국제법학회 독도센터 공동주최 국회 토론회 자료집, 『필리핀-중국 해양분쟁에 대한 중재결과와 독도영토주권』, 42쪽.

92 김원희, 2016b, 앞의 글, 95~97쪽; 김태운, 2016, 앞의 글, 96~97쪽; 김명기·배규성, 2017, 앞의 글, 92~96쪽.

93 박배근, 2016, 위의 글, 44쪽.

2. 일본 정부의 해양법협약 해석에 대한 영향

일본에서는 해양법협약 제121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논의가 있다. 즉, 논리적으로 보면 제121조 제1항의 ‘섬’과 제121조 제3항의 ‘암석’을 분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해양법협약 제12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섬에 해당하면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해양지형물이라고 하더라도 ‘암석’이 아닌 이상 제3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본다. 그 결과 그러한 해양지형물은 해양법협약 제121조 제2항의 적용을 받아 영해·접속수역·배타적 경제수역·대륙붕을 모두 가진다는 것이다. 그 이유로는 제3항의 요건은 제1항의 섬의 정의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⁹⁴ 일본에서는 이런 논의를 ‘분리설’이라고 부른다.⁹⁵

다른 한편으로 일본에서 해양법협약 제121조 제1항과 제3항을 연결시켜 제1항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해양지형물만이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가진다는 해석론을 ‘결합설’이라고 부른다. 나아가 제121조 제3항의 해석상 ‘암석’에는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가지는 ‘암석’과 그렇지 못한 ‘암석’이 나뉜다고 보는 학설도 있다고 말하며 그것을 ‘암석 분류설’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일본 정부의 국회 답변을 보면 해양법협약 제121조 해석에 관하여 분리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99년 제145회 중의원 건설위원회에서 외무성 경제국장은 해양법협약 제121조 제1항에는 ‘암석’의 정의가 없고, 각국 실행상으로도 특정 해양지형물이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을 가지지 못한다고 할 근거가 없으므로 해양법협약상의 섬에 해당하는 이상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진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진다.⁹⁶ 일본 정부가 이

른바 ‘분리설’을 취하는 것은 오키노토리시마와 같은 해양지형물에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가지도록 하려는 의도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일본 학계도 이른바 ‘결합설’이 다수설이며 국제사법재판소도 ‘결합설’의 입장을 취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일본 학계의 용어를 빌려서 말하면 남중국해 중재판정 또한 ‘결합설’의 입장에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생각건대 일본에서 논의되는 이른바 ‘분리설’은, 제121조 제1항은 ‘섬’에 관한 규정이고 제121조 제3항은 ‘암석’에 관한 규정이므로 ‘섬’이면 모두 제2항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는 제3항이 ‘섬’이 아니라 ‘암석’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는 점에 착안한 형식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취하는 이른바 ‘분리설’은 법 조문이 서로 연결되어 상호 간에 복잡한 해석의 연결망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을 도외시한 논의로서 법해석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즉 하나의 법조문은 모든 다른 법조문과의 연결관계 속에서 해석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외면한 논리로 보인다. 나아가 일본 정부의 ‘분리설’ 입장은 이번 판정이 보여주듯이 해양법협약 제121조의 해석에 관한 국제적이고 일반적인 흐름과도 동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일본은 권원 창출 섬으로 보기 어려운 오키노토리시마를 근거로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중재판정은 해양법협약상의 ‘섬’과 ‘암석’의 구별 기준을 제시하였으므로, 일본이 무리하게 ‘섬’으로 주장하여 온 해양지형물, 대표적으로는 오키노토리시마의 법적 지위에 관한 일본 정부 입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외무대신은 2016년 7월 15일 기자회견에서 오키노토리시마가 “해양법협약의 요건을 충족하는 섬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고, “재판에 구속되는 것은 당사국”이라고 함으로써 일본은 중재판정에 구속당하지 않는다고 이해할 수 있는 발언을 하였다.⁹⁷

그에 앞서 판정이 있고 7월 12일에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대신은 담화를 통하여, 중재판단은 최종적이며 분쟁당사국을 법적으로 구

⁹⁴ 許淑娟, 2016, 「國際法上の島の定義と国内法制度—南シナ海仲裁と沖ノ鳥島をめぐる日本の対応を中心に」, 『ジュリスト』, 2016 Autumn, November 19, 18쪽.

⁹⁵ 加々美 康彦, 2016, 「南シナ海仲裁判断における島の定義」, www.jsil.jp (검색일: 2017. 4. 10).

⁹⁶ 許淑娟, 2016. 위의 글. 20쪽.

⁹⁷ 毎日新聞, 2016년 7월 15일, mainichi.jp/articles/20160716/k00/00m/010/025000c (검색일: 2016. 11. 15).

속하므로 당사국은 이번 중재판단에 따를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다.⁹⁸ 중국에 대하여 중재판정 준수를 요구한 것이다. 중재판정에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하면서 중국에게 준수를 요구하면서 중재판정에서 제시한 ‘섬’과 ‘암석’의 구별 기준을 자국 법적 주장에서는 수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일본 정부 주장은 누가 보더라도 부당하며 설득력이 없다. 신문 보도에 의하면 일본 국제법학회 회장을 지냈고 현재 도시샤 대학 국제법 교수인 사카모토 시게키[坂本茂樹] 교수는 이번 판정이 오키노토리시마의 “법적 지위에 관한 논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였다.⁹⁹

한편, 7월 15일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외무장관은 오키노토리시마 “주변 해역에 배타적 경제수역 등을 설정하고 있으며 근년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국가로부터도 이의가 제기된 일이 없었다”고 말하였다고 보도되었다.¹⁰⁰ 오키노토리시마 주변의 대륙붕 설정에 대하여 한국과 중국이 대륙붕한계위원회를 통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일본에서는 오키노토리시마 주변의 배타적 경제수역 설정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한 국가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이 점에 관하여 한국은 더 주의를 기울이고 필요한 항의나 이의 제기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일본은 독도가 권원 창출 섬에 해당한다고 본다. 오키노토리시마가 권원 창출 섬이라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로서는 오키노토리시마보다 훨씬 큰 독도가 권원을 창출하지 못하는 ‘암석’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이번 판정으로 인하여 해양법협약 제121조 제3항에 관한 일본 정부의 기존 해석은 유지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오키노토리시마와 같은 섬을 근거로 한 일본의 해양 권원 주장은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통용되기 어렵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 변화 속에서 일본도 계속해서 독도가 권원 창출 섬이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이번 판정의 영향을 받

⁹⁸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게재된 외무대신 담화, www.mofa.go.jp (검색일: 2016. 12. 26).

⁹⁹ 産経, 2016. 7. 13, www.sankei.com/world/news/160713/wor1607130065-n1.html (검색일: 2016. 11. 15).

¹⁰⁰ 産経, 2016. 7. 15, www.sankei.com/politics/news/160715/pl1607150040-n1.html (검색일: 2016. 11. 15).

아 일본이 독도의 법적 지위에 관한 견해를 ‘암석’으로 수정할 것인지는 미지수이다. 일본이 오키노토리시마에 관하여 표명한 입장을 보면 판정 이후에도 일본 정부는 여전히 독도를 권원 창출 섬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해양법협약 제121조 제3항에 관한 판정의 해석론이 제시된 상황 속에서 한국 정부는 일본이 독도를 권원 창출 섬으로 주장하는 데 대한 새로운 대응책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V. 맺음말

해양법협약 제121조 제3항의 해석에 관한 판정 내용은 대체로 협약 동조항의 입법 취지를 충실히 고려하고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 점에서 타당성과 합리성을 갖춘 해석으로 보인다. 엄격한 실정법주의의 관점을 떠나서 보면 이번 판정은 동중국해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이라고 하는, 현 시점에서 최선의 미래를 고려한 해석이라고 볼 수도 있다. 외관은 해양법협약 제121조 제3항을 엄격한 기준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이나 중재재판부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관한 정책적 고려를 통하여 남중국해 해양지형물에 어느 정도의 권원 창출이 인정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다만, 이번 판정의 해양법협약 제121조 제3항의 해석은 국가 실행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 앞으로 국가들이 판정의 해석론을 합리적인 것으로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항의하고 거부할 것인지가 주목된다.

한국 입장에서는 독도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판정 해석론이 갖는 합의가 중요하다. 판정 내용에 따르면 독도는 권원 창출 섬이 아니라 제121조 제3항의 ‘암석’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현재 한일 양국은 독도를 ‘암석’이 아닌, 권원 창출 섬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적어도 이번 판정의 해양법협약 제121조 제3항 해석이 타당하고 합리적이라고 평가하는 한, 한일 양국이 계속해서 독도 주변에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과 같은 해양 권원

을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판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독도를 권원 창출 섬으로 보기 어렵게 된 상황에서 한국으로서는 독도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판정 내용 이해와 수용에 관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정리된 입장에 따라 한일 배타적 경제수역 획정 등의 문제에서 대일 외교정책을 기존대로 유지할 것인지 변경할 것인지 정책적인 선택을 하여야 할 시점이 도래한 것으로 생각된다. 판정에 따라 독도를 권원 창출 섬이 아니라고 보는 경우에는 기존 입장을 변경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혹 독도를 여전히 권원 창출 섬으로 보는 것으로 입장이 정리된다면 판정이 밝힌 '권원 창출 섬'과 '암석'의 구별 기준을 따르지 않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논리 확립이 과제가 될 것이다.

일본 정부는 제121조 제1항에는 '암석'의 정의가 없고, 각국 실행상으로도 특정 해양지형물이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을 가지지 못한다고 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해양법협약 제121조 제1항의 '섬'에 해당하는 모든 해양지형물은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가진다고 보는 해석적 입장을 피력하여 왔다. 오키노토리시마와 같은 극히 작은 해양지형물을 근거로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주장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해석적 입장으로 생각된다. 일본 정부의 논리는 강학적인 관점에서 설득력이 없지만, 이번 판정에 의해서도 정면에서 부정되었다. 아직까지 판정의 해석을 고려하여 일본이 해양법협약 제121조에 관한 이제까지의 해석적 입장을 바꾸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이번 판정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계속하여 종전과 동일한 해석론을 유지할지, 그 경우 일본 정부의 해석론과 판정 내용 사이의 불일치를 어떻게 설명할지 주목되는 바이다.

국문초록

중국과 필리핀 간의 남중국해 분쟁 중재사건 판정은 그간 해양법협약 해석상 모호한 채로 남아 있었던 제121조의 섬과 암석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최초의 국제재판의 판단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해양지형물이 권원 창출 섬이 되기 위한 '인간 거주'와 '독자적인 경제활동' 요건에 관하여 판정은 대체로 해양법협약의 취지와 목적을 적절히 고려한 합리적인 해석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가 실행은 판정의 해석과는 차이가 있어서 앞으로 판정이 국가 실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번 판정은 일본 정부가 협약 제121조를 해석하는 공식적인 입장과 차이가 있다. 일본 정부는 제121조 제1항의 '섬'과 제121조 제3항의 '암석'을 분리하여 해석하지만 판정은 그러한 해석을 부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은 자국의 독특한 해석에 근거하여 오키노토리시마와 같은 섬을 근거로 한 해양 권원 주장을 하기 어렵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도 판정의 내용에 맞추어 독도의 법적 지위에 관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남중국해 분쟁, 섬, 암석, 해양법협약 제121조, 인간 거주, 독자적 경제 활동

ABSTRACT

South China Sea Arbitral Award on the Legal Status of Maritime Features in the South China Sea and Its Implication on the Delimitation of Maritime Boundaries between Korea and Japan

Park, Pae keun
(Professor, Pusan National University)

The significance of the award of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lies in the fact that it is the first decision by an international tribunal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article 121 of the 1982 UNCLOS surrounding which there have been many obscurities. The award may be estimated to consider the object and purpose of the UNCLOS properly and to present a rational interpretation of the words ‘human habitation’ and ‘economic life of their own’ provided in the para. 3 of the article 121. However, State practices on the article show wide divergences from the decision of the award, and it is to be seen whether the award will be accepted by international society or not. The official interpretation of the article by the Japanese government is inconsistent with the award. Japanese government interprets the para. 1 and para. 3 of the article 121 of the UNCLOS separately. This interpretation is denied by the award. In this light, it may be anticipated that it became difficult for the Japanese government to maintain that Japanese maritime features like Okinotorishima can generate entitlements to an exclusive economic zone or continental shelf. Korea also may need to adjust its position on the legal status of Dokdo taking the decision of the award into consideration.

Keywords

South China Sea dispute, island, rock, article 121 of the UNCLOS, human habitation, economic life of their own

참고문헌

김명기·배규성, 2017, 「남중국해사건에 대한 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과 한국의 독도영토주권에의 함의」, 『아세아연구』, 제60권 제3호.

김용환, 2009, 「ICJ 흑해 해양경계획정 판결의 주요 쟁점 및 시사점」, 『국제법학회논총』, 제54권 제2호.

김원희, 2016a, 「남중국해 해양분쟁 관련 ‘국제법 전쟁(Lawfare)’의 성과와 과제 - 남중국해 중재사건 본안판정의 국제법적 검토와 한국에 대한 함의」, 『국제법학회논총』, 제61권 제4호.

김원희, 2016b, 「남중국해 중재판정과 독도의 법적 지위에 대한 합의」, 『해양정책연구』, 제31권 제2호.

김자영, 2011, 「남중국해 해양영토분쟁의 최근 동향과 국제법적 쟁점」, 『안암법학』, 제34권.

김찬규·김석현, 1996, 「독도의 법적 지위」, 『국제법평론』, 제1996-1호.

김태운, 2016, 「남중국해 바위섬에 관한 상설중재재판소판정에 따르는 섬으로서 독도」, 『해사법연구』, 제28권 제3호.

김현수, 2009, 「루마니아-우크라이나간 흑해 해양경계획정 사건에 관한 분석 및 평가」, 『해사법연구』, 제21권 제2호.

김현정, 2016,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3항 해석에 관한 소고 - 필리핀-중국 남중국해 중재판정의 의의를 중심으로 -」, 『법학논총』(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제40권 3호.

박배근, 2016, 「2016년 독도영토주권 토론회 토론문」, 강창일 국회의원·대한국제법학회 독도센터 공동주최 국회 토론회 자료집, 『필리핀-중국 해양분쟁에 대한 중재결정과 독도영토주권』.

박찬호, 2002, 「섬의 국제법상 지위」, 『국제법학회논총』, 제47권 제2호.

심인혜, 2015, 「발전적 해석 시 당사국 공동의 의도」, 『서울국제법연구』, 제22권 제1호.

이석용, 2012, 「국제사법재판소의 흑해해양경계획정사건 판결에 나타난 특징분석」, 『서울법학』, 제20권 제2호.

이석용, 2016, 「남중국해 중재판정의 국제해양법상 도서제도에 대한 영향」, 『영토해양연구』, 제12권.

이창렬, 2014, 「유엔해양법협약상 섬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혁적 고찰」, 『성균관법학』, 제26권 제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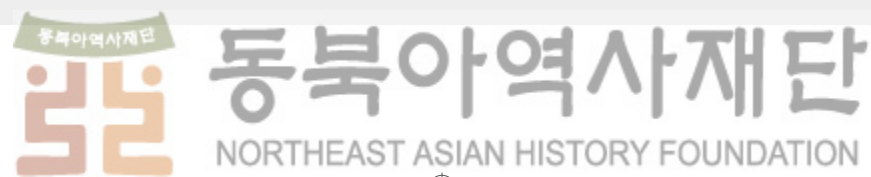
이창위, 2009, 「한국의 해양경계획정 문제에 대한 소고」, 『서울법학』, 제17권 제1호.

- 이창위, 2010,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흑해 해양경계 사건」, 『법학논고』, 제33집.
- 이창위, 2016, 「남중국해 분쟁 중재판정의 독도문제에 대한 합의」, 강창일 국회의원·대한국제법학회 독도센터 공동주최 국회 토론회 자료집, 『필리핀-중국 해양분쟁에 대한 중재결정과 독도영토주권』.
- 정갑용, 2015, 「남중국해 해양분쟁의 국제법적 쟁점」, 『해사법연구』, 제27권 제2호.
- 정진석, 2010a, 「UN해양법협약 121조 3항 ‘암석’의 해석에 대한 고찰」, 『법학논총』,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제22권 제2호.
- 정진석, 2010b, 「흑해해양경계획정사건(루마니아 v. 우크라이나) 판결의 의의」, 『서울국제법연구』, 제17권 제1호.
- 정진석, 2017, 「남중국해 중재판정을 통해 본 ‘암석’의 정의」, 『법학논총』,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제29권 제3호.

産経, 2016. 7. 15. www.sankei.com/politics/news/160715/pl1607150040-n1.html
(검색일: 2016. 11. 15).

- Harrison, James, 2011, *Making the Law of the Sea: A Study in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rt, H.L.A, 1994, *The Concept of Law, 2nd ed.*, Oxford: Clarendon Press.
- Rehbinder, Manfred, 1993, *Rechtssoziologie, 3., neubearbeitete Auflage*, Berlin: Walter de Gruyter.
- Tams, Christian J., Tzanakopoulos, Antonios and Richford, Athene E, eds., 2014, *Research Handbook on the Law of Treaties*, Cheltenham: Edward Elgar.

- 許淑娟, 2016, 「国際法上の島の定義と国内法制度—南シナ海仲裁と沖ノ鳥島をめぐる日本の対応を中心に」, 『ジュリスト』, 2016 Autumn, November 19.
- 加々美 康彦, 2016, 「南シナ海仲裁判断における島の定義」, www.jsil.jp (검색일: 2017. 4. 10).
- 産経, 2016. 7. 13, www.sankei.com/world/news/160713/wor1607130065-n1.html (검색일: 2016. 11. 15).
- 毎日新聞, 2016. 7. 15, mainichi.jp/articles/20160716/k00/00m/010/025000c (검색일: 2016. 11. 15).



19세기 울릉도 수토 사료 해제 및 번역

이원택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I. 사료의 출처와 개요

조선 정부의 울릉도 수토는 중요한 영토 관리 방식의 하나였다. 특히 조선 시대 및 에도 시대 일본은 울릉도와 그 부속 도서인 독도를 하나의 세트로 인식하여 왔음은 양국의 역사 및 지리 문헌에 잘 나타나 있다. 따라서 조선 정부의 울릉도 수토는 조선 정부가 울릉도와 독도를 자국의 고유한 영토로 통치하였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몇 해 전에 필자는 『각사등록(各司廳錄)』에 소재한 울릉도 수토 관련 강원 감영 사료를 번역 소개한 적이 있다.¹ 그 연장선에서 이번에는 『일성록(日省錄)』에 실려 있는 울릉도 수토 관련 보고서 세 개와 『한성주보(漢城周報)』에 실려 있는 울릉도 수토 관련 보고서 한 개를 번역 소개하고자 한다.

1 이원택(2014), 「조선후기 강원감영 울릉도 수토 사료 해제 및 번역」, 『영토해양연구』, 8호, 동북아역사재단.

19세기 울릉도 수토 사료 해제 및 번역

	사료 내용	출처
1	강원감사 정원용이 삼척영장 하시명의 울릉도 수토를 보고함.	서울대학교 규장각(1996), 『日省錄』, 85, 168上 (순조 27년 5월 19일).
2	강원감사 윤성대가 삼척영장 이경정의 울릉도 수토를 보고함.	서울대학교 규장각(1994), 『日省錄』, 47, 825上 (순조 31년 5월 14일).
3	강원감사 박용수가 월송만호 이규상의 수토를 보고하고 그의 파직을 청함.	서울대학교 규장각(1994), 『日省錄』, 56, 885上下 (헌종 15년 5월 4일).
4	강원도관찰사 정태호가 평해군수 겸 울릉도첨사 박태원의 수토를 보고함.	『漢城周報』 제73호(서력 1887년 7월 25일, 음력 1887년 6월 5일).

첫 번째 사료는 서울대학교 규장각 간행본 『일성록』 85권 168쪽 상단에 순조 27년 5월 19일자로 실려 있지만, 『일성록』 85권과 86권은 익종(翼宗: 순조의 세자였다가 후에 추승됨)이 순조를 대신하여 정부를 처리할 때의 기록인 『대청시일록(代聽時日錄)』이 편집되어 있다. 익종이 대리청정(代理聽政) 한 시기에 는 순조의 『일성록』과 익종의 『대청시일록』이 별도로 기록되었다. 그래서 이 수토 사료는 같은 날짜의 순조의 『일성록』이 아니라 익종의 『대청시일록』 6(六), 정해 5월 19일 갑오(丁亥五月十九日甲午)에 기록되어 있다.

네 번째 사료는 『한성주보』에 「동백장계(東伯狀啓)」라는 제목으로 실린 기사이다. 『한성주보』는 1983년에 이미 『한성순보(漢城旬報)』와 함께 묶은 영인본이 발간되었으며,² 현재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웹 사이트에서 신문 기사의 사진(PDF파일)과 한글 번역문을 서비스하고 있다.³ 뿐만 아니라 이 「동백장계」는 꽤 오래전부터 학계에 알려졌는데,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지 못한 듯하다. 「동백장계」는 2012년에 간행된 『울릉도·독도 품은 강원도 사람들』에 『한성주보』의 기사 사진 형태로 실려 있다.⁴ 또 최근 울진문화원에서 간행한 『근대 신문으로 본 울진』에 한글로 번역되어 실려 있다.⁵ 이 수토 사료

2 『한성순보-한성주보』(1983, 영인본, 전 3권), 관훈클럽신문연구기금.

3 한국언론진흥재단의 BIGKinds 뉴스라이브러리에서 원문(사진)과 한글 번역문의 검색이 가능하다. www.kinds.or.kr/news/libraryNewsView.do (검색일 2018. 2. 20).

4 손승철·박미현 편저(2012), 『울릉도·독도 품은 강원도 사람들』, 삼척시·강원도민일보, 488쪽.

5 울진문화원(2014), 『근대 신문으로 본 울진』, 울진군·울진문화원, 48~49쪽.

는 울릉도 개척기의 수토 자료로서 비교적 완전한 보고서 모양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글에서 다시 한 번 소개한다. 한지는 필자가 신문 기사의 사진 파일을 보고 입력·표점을 하였으며, 한글 번역문은 기존 번역문을 참고하여 다시 번역한 것이다.

II. 원문 표점 및 번역

1.

江原監司鄭元容以鬱陵島搜討馳達

狀達以爲, “鬱陵島搜討, 間二年舉行, 自是定式, 而今年搜討, 三陟營將河始明牒呈內, ‘四月十六日, 與倭學崔甲文及所率員⁶役·沙格等八十人, 分載四船, 二十三日泊于本島. 看審則左有黃土窟, 右有屏風石, 自黃土邱尾至中峯爲五里, 而中有可墾田畝處, 或有古人所居之基址. 前進至浦口, 壁上有進上香木可封者, 故斫取後, 至萍卓邱尾, 則有大竹田, 而竹本稀疎, 取其中稍大者斫取, 而東至長沙邱尾, 望見竹田在於壁上, 俱是小竹. 入島三日, 詳察島內, 則周回殆近八九十里, 俱是石山, 而厥木則桑·栢·桐·榆·香·榛之屬, 飛禽則烏·雀·鷗·鶻, 走獸則貓·鼠, 海錯則藪·鰻·雜魚. 又到可支魚窟, 則可支魚七八首, 驚人入海之際, 砲搏捉得二首. 二十七日, 還到泊於江陵, 而進上元封紫檀香二吐莫, 加封十吐莫, 青竹三箇, 石間朱六升, 可支魚皮二領, 依例上送云.’ 本島圖形一本, 可支皮二領, 青竹三箇, 石間朱六升, 紫檀香十二吐莫, 一一尺量後, 上送于備邊司.”

『代聽時日錄』, 純祖二十七年 五月 十九日.

강원감사 정원용(鄭元容)이 울릉도 수토를 치달(馳達)함.

장달(狀達)은 다음과 같다. “울릉도 수토(搜討)는 2년의 간격을 두고(間二年) 거행하는 것이 예로부터 정해진 식례(式例)인데, 금년에 수토를 담당한 삼척 영장 하시명(河始明)의 첩정(牒呈) 안에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4월 16일 왜학 최갑문(崔甲文) 및 거느린 원역(員役)·사격(沙格) 등 80인과 더불어 4척의 배에 나누어 타고, 23일 본도에 정박하였습니다. 간심(看審)을 하니, 왼쪽에 황토굴(黃土窟)이 있고 오른쪽에 병풍석(屏風石)이 있는데, 황토구미(黃土邱尾)로부터 중봉(中峯)까지 5리가 되었으며, 중간에 논밭을 개간할 만한 곳이 있었고, 더러는 옛사람들이 살던 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 포구(浦口)에 이르니, 벽(壁) 위에 진상할 향나무를 가봉(可封)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라 취한 후에 평탁구미(萍卓邱尾)에 이르니, 큰 대나무밭이 있었으나 대나무들이 드물고 성기어서 그중에 좀 더 큰 것을 택하여 잘라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장사구미(長沙邱尾)에 이르자, 멀리 절벽 위로 대나무밭이 보였지만, 모두 작은 대나무였습니다. 섬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섬 안을 상세히 살폈는데, 주회(周回)가 거의 80~90리에 가까웠으며 모두 돌산(石山)이었습니다. 그곳의 나무는 뽕[桑], 잣[栢], 오동[桐], 느릅[榆], 향[香], 개암[榛] 나무 등속이며, 날짐승은 까마귀[烏], 참새[雀], 갈매기[鷗], 메추라기[鶻] 등이고, 길짐승은 고양이[貓], 쥐[鼠] 등이며, 해조류(海錯類)는 미역[藪], 전복[鰻], 잡어 등입니다. 또 가지어굴(可支魚窟)에 이르렀을 때, 가지어 7~8마리가 사람에게 놀라 바다로 들어가자 포(砲)를 쏘고 몽둥이로 내리쳐 2마리를 잡았습니다. 27일 돌아와 강릉에 도착하여 정박하였습니다. 진상품으로 원봉(元封) 자단향(紫檀香) 2토막, 가봉(加封) 10토막, 청죽(靑竹) 3개, 석간주(石間朱) 6되[升], 가지어(可支魚) 가죽 2벌[領]을 식례(式例)에 따라 올려 보냅니다.’ 본도 도형(圖形) 1본(本), 가지어 가죽 2벌, 청죽 3개, 석간주 6되, 자단향 12토막을 일일이 길이를 재고 무게를 단 후에 비변사로 올려 보냅니다.”

『대청시일록』, 1827년(순조27) 5월 19일.

⁶ 員: 원문에는 員로 기록되어 있으나 員으로 바로잡음.

2.

江原監司尹聲大以鬱陵島搜討馳啓

狀啓以爲, “今年搜討, 三陟營將李慶鼎, ‘去四月初八日, 率員役, 到泊於鬱陵島黃土龜尾, 看審島形, 則屏風巖在其右, 黃土窟在其左, 山頂香木, 非不交翠, 而皆是短矮, 進上香木, 盡日搜括, 僅斫原數, 仍向玄石龜尾, 則可支魚百十爲群, 吼哮如牛, 或砲或棒, 捉得二首. 仰看最高之峯, 是謂朱砂峯, 而環一島蹤跡殆遍, 搜索備至, 而幸無頑處矣.’ 本島圖形, 進上元封紫檀香二吐, 加封十吐, 青竹三箇, 石間朱六升, 可支魚皮⁷二領, 依例, 自臣營一一尺量後, 上送于備邊司.”

『日省錄』, 純祖三十一年五月十四日.

강원감사 윤성대(尹聲大)가 울릉도 수토로 치계(馳啓)함.

장계(狀啓)는 다음과 같다. “금년의 수토는 삼척영장 이경정(李慶鼎)의 차례입니다. ‘지난 4월 초8일 원역(員役)을 이끌고 울릉도 황토구미(黃土龜尾)에 도착하여 정박하였습니다. 섬의 모양을 살펴보니, 병풍암(屏風巖)이 오른쪽에 있고, 황토굴(黃土窟)은 왼쪽에 있었습니다. 산 정상에 향나무는 푸르지 않은 것은 아니나 모두 짧고 왜소하여 진상할 향나무는 종일 찾아 갈무리하여 겨우 원래의 수효를 배었습니다. 이어서 현석구미(玄石龜尾)로 향하니, 가지어(可支魚) 백수십 마리가 무리를 이루어 소처럼 울었습니다. 포를 쏘고 몽둥이로 내려치기도 하여 2마리를 잡았습니다. 가장 높은 봉우리를 올려다 보았는데, 이를 주사봉(朱砂峯)이라 일컬었습니다. 섬 전체를 빙 둘러 발자취가 두루 미쳤고, 수색하여 살피는 것이 잘 갖추어져 다행히 탈이 난 곳은 없었습니다.’ 본도의 도형(圖形), 진상할 원봉(元封) 자단향(紫檀香) 2토막, 가봉(加封) 10토막, 청죽(靑竹) 3개, 석간주(石間朱) 6승, 가지어 가죽 2벌을 예(例)

⁷ 皮: 원문에는 누락되었으나 보충함.

에 따라 신의 감영(監營)에서 하나하나 길이를 재고 무게를 단 후에 비변사로 올려 보냅니다.”

『일성록』, 1831년(순조31) 5월 14일.

3.

江原監司朴容壽狀罷越松萬戶李圭祥

狀啓以爲, “鬱陵島搜討, 間二年舉行, 而今年搜討, 越松萬戶當次, 故發關分付矣. 該萬戶牒呈內, ‘萬戶去四月初八日, 與倭學金英俊及員役十一人·沙格六十名, 分騎四船離發. 十九日, 到泊于本島黃土龜尾, 下陸看審, 則何許船隻, 厥數不少, 見甚驚恠. 次第摘奸, 則全羅道船十四隻, 慶尙道船二隻, 本道船二隻, 合爲十八隻, 而皆云漂流入泊, 故各船船主, 一併縛置. 閏四月初一日, 回船時, 當竝捉還, 而萬戶所領四船, 狹窄無以盡載, 渠之潛船, 舉皆破傷, 故只捉船主十八名, 分載四船, 沙格等各別嚴飭, 使之追後來待. 初四日, 還鎮後, 船主等仍爲枷囚, 以待處分, 而慶尙道船二隻中一隻, 自統營以異樣船搜驗事, 持公文來泊云, 故考見公文後, 該營軍官徐文億, 還送本營云矣.’ 今此無賴漢之冒禁潛入, 若是狼藉, 究厥所犯, 萬萬痛駭, 捉來之十七名, 爲先嚴囚于平海獄. 萬戶李圭祥, 十八船隻與許多沙格, 棄置空島, 任其所爲, 只捉船主, 輕先回來者, 大是妄率. 其在重島禁嚴搜討之道, 不可仍置, 爲先罷黜, 其罪狀, 令攸司稟處, 島中棄置之船隻沙格, 嚴飭該鎮首校, 眼同船主一漢, 更爲入島捉來, 一體盤覈, 登聞計料.”

『日省錄』, 憲宗十五年五月四日.

월송만호 이규상(李圭祥)의 파직을 청한 강원감사 박용수(朴容壽)의 장계(狀啓)

장계는 다음과 같다. “울릉도 수토(搜討)는 2년의 간격을 두고(間二年) 거행하는데, 금년의 수토는 월송만호의 차례에 해당하므로 관문(關文)을 발송하여 분부하였습니다. 해당 만호의 첩정(牒呈) 안에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습니다.

‘만호는 지난 4월 초8일 왜학(倭學) 김영준(金英俊) 및 원역(員役) 11인, 사격(沙格) 60명과 함께 4척의 배에 나누어 타고 출발하였습니다. 19일 본도의 황토구미(黃土龜尾)에 도착하여 정박하고 육지에 내려 간심(看審)하니, 얼마의 배들이 있었는데 그 숫자가 적지 않음이 심히 놀랍고 괴이하였습니다. 차례로 직간(摘奸)하니, 전라도 배가 14척, 경상도 배가 2척, 본도(本道) 배가 2척, 합이 18척이었는데, 모두 표류하다 들어와 정박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각 배의 선주들을 함께 묶어두었습니다. 윤4월 초1일 배를 돌려 돌아올 때 마땅히 아울러 잡아 와야 했는데, 만호가 부리는 4척의 배가 비좁아 다 실을 수 없었고, 그들이 몰래 타고 온 배는 대부분 파손되어 단지 선주 18명만 붙잡아 4척의 배에 나누어 싣고, 사격(沙格) 등은 각별히 신칙하기를 추후에 올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였습니다. 초4일 진(鎭)에 돌아온 뒤에, 선주 등은 죄수로 가두어놓고 처분을 기다리도록 하였으며, 경상도 배 2척 중에 1척은 통영(統營)으로부터 이양선(異樣船)을 수색하는 일로 공문을 가지고 와서 정박하였다고 하므로, 공문을 살펴본 뒤에 해당 영(營)의 군관 서문억(徐文億)은 본영(本營)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무뢰한들이 금법을 무릅쓰고 몰래 들어와 이렇듯 낭자(狼藉)하니, 그들이 범한 바를 살펴보면 더욱 통탄스럽고 놀랍습니다. 붙잡아 온 17명은 우선 평해의 옥에 엄히 가두었습니다. 만호 이규상은 18척의 배와 허다한 사격들을 텅 빈 섬에 버려두어 그들이 마음대로 하도록 맡기고, 단지 선주들만 붙잡아 경솔하게 먼저 돌아온 것은 크게 망령되고 경솔합니다. 중요한 섬에 대해 금령을 엄히 여기는 수토 원칙상 그대로 둘 수 없으니 우선 파출(罷黜)하고, 그 죄상(罪狀)은 유사로 하여금 폄저하게 하십시오. 섬 안에 버려둔 배의 사격들은 해당 진의 수교(首校)를 신칙하여 섬에 같이 있었던(眼同⁸) 선주 1명과 함께 다시 섬에 들어가 붙잡아 오도록 하여 일체를 세밀하게 캐물어 등문(登聞)하는 것이 계책이라고 사료됩니다.”

『일성록』, 1849년(헌종15) 5월 4일.

⁸ 眼同: 사건이 발생할 때 같이 있어 증인이 될 만한 사람.

4.

東伯狀啓

同日江原道觀察使鄭泰好膾報. “平海郡守兼鬱陵島僉使朴泰遠牒呈內, ‘僉使鬱陵島討搜次, 閏四月初八日卯時, 糧饌·雜物, 分載二隻船, 率員役·沙格等四十名, 齊發向島. 初九日戌時, 僉使船先泊大黃土浦, 卜船鱗次到泊. 正租六十五石, 大米四十石, 小米二十五石, 太十石, 木麥五石, 鹽三石, 醬二石, 一一卸下于島長公舍後, 抄出民口, 均排賑恤. 十五日早朝, 離發陸行, 抵到谷浦洞, 則山鬱抱擁, 谷口稍濶, 構巢者, 隔岸分居, 治畝者, 闢林爲耕. 至樋口尾, 則峭壁層巒, 奇恠萬狀, 仍踰假道頭, 則峯岩危險, 線路纒通. 向往長浦洞, 則板屋居生, 自作一村, 蓄畚起耕, 治爲百畝, 而以泉源不長, 無水田可墾. 日已昏黑, 仍爲止宿. 十六日, 轉向長社洞, 出出道傍浦, 則居民不多, 墾田甚⁹少, 而雙壁屹立, 一港深通. 至苧浦洞, 則青苧簇立, 奇巖削出, 緣厓而行. 入于竹田邱尾, 則篁林稀疎, 僅備進獻之數, 還爲踰嶺, 止宿. 十七日, 入于羅里洞, 則幅圓廣濶, 治爲一舍之地, 雖多宜畚處, 亂樹叢林, 姑未開拓. 仍出海口, 錐巖一峰, 插入半天. 轉至廣巖洞, 則山開平陸, 田多土析. 又到香木谷, 則村在巖壁間, 故僅爲斫取, 準備進上元數. 其下臨水, 窟穴深邃, 而可支魚一隊出沒, 捕得二頭. 傍有黃土窟, 故如干掘取. 十八日, 還到于初泊大黃土浦. 計其環一島周回, 爲一百六十餘里, 而自坎至離¹⁰爲七十餘里, 自震至兌爲六十餘里. 農形秋耕兩麥, 舉皆豐熟, 豆太方張, 耕播生麻, 漸次茁茂. 二十日申時, 自島離發, 風勢不利, 瘴霧四塞, 逗遛中洋. 二十三日戌時, 猝遇風浪, 鷗板柝傷, 篙師莫知所措, 經宵浪息, 稍稍行. 二十五日午時, 艱辛抵到于三陟鎮前洋. 同月二十九日, 始爲還郡, 則卜船亦已來泊於本郡邱山鎮. 本島圖形及民戶起墾形止, 與進上紫檀香·青竹·可支魚皮·石間朱, 依定式上送.’ 今此搜討之行, 千里層溼, 無事往

⁹ 甚: 원문에는 戡으로 되어 있으나, 甚의 오자로 판단하여 바꿈.

¹⁰ 離: 원문에 離로 되어 있으나, 離의 오자로 판단하여 바꿈.

返, 誠甚奇幸. 該僉使爲念新接島民之生涯, 以其殘況, 捐出六百兩, 質穀往哺, 至爲一百五十石之多, 島居殘民, 賴以資活, 此實前僉使之所未行者也. 揆以施惠, 極庸嘉尚. 鬱陵島圖¹¹形一本, 紫檀香元封二吐, 加封十吐, 青竹三箇, 石間朱六升, 可支魚皮二領, 自臣營監封, 并民戶墾田修錄, 上送. 緣由馳啓.”

『漢城周報』, 第七十三號, 一八八七年 七月 二十五日

동백(東伯: 강원도관찰사)의 장계(狀啓)

같은 날(6월 5일) 강원도관찰사 정태호(鄭泰好)의 등보(騰報)는 다음과 같다. “평해군수 겸 울릉도첨사(平海郡守兼鬱陵島僉使) 박태원(朴泰遠)의 첩정(牒呈) 안에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습니다. ‘첨사가 울릉도 수도차(討搜次) 윤4월 초8일 묘시(卯時: 아침 5~7시)에 양찬(糧饌: 양식과 반찬)과 잡물(雜物)을 2척의 배에 나누어 싣고 원역(員役)과 사격(沙格) 등 40명을 인솔하여 일제히 울릉도를 향하여 출발하였습니다. 초9일 술시(戌時: 오후 7~9시)에 첨사의 배가 먼저 대황토포(大黃土浦)에 도착하였고, 뒤이어 짐 싣는 복선(卜船)이 잇달아 도착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정조(正租: 나락) 65석(石), 대미(大米: 쌀) 40석, 소미(小米: 좁쌀) 25석, 콩 10석, 목맥(木麥: 메밀) 5석, 소금 3석, 장(醬) 2석을 일일이 도장(島長)의 공사(公舍: 관사)에 부렸습니니다. 그런 다음 백성들을 뽑아내어 끌고루 배포하여 진흥(賑恤)하였습니다. 15일 이른 아침에 그곳을 출발하여 육지로 행군해서 곡포동(谷浦洞)에 이르니 울창한 산이 감싸고 있었습니다. 골짜기 입구가 조금 넓어지자 짐을 엮어매 만들고 있는 이들은 언덕을 사이에 두고 나뉘어 거주하고 있었으며, 농사짓는 사람들은 숲을 개간하여 농지(農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통구미(樋口尾)에 이르니 깎아지른 듯한 절벽과 겹겹의 산봉우리가 온갖 괴기한 형상을 하고 있었으며, 가도두(假道頭)를 넘으니 봉암(峯岩)이 매우 험하여 실 같은 길이 겨우 한 줄기 뚫려 있었습니다. 장포동(長浦洞)을 향하여 가니 사람들이 판잣집에 거처하면서 스스로 한 마을을 이

루고 있었으며, 묵은 땅을 갈아놓았는데 족히 백무(百畝)는 될 듯하였지만 수원(水源)이 길지 못하여 논으로 개간할 만한 곳은 없었습니다. 날이 곧 저물었으므로 이곳에서 유숙(留宿)하였습니다. 16일 장사동(長社洞)으로 방향을 바꾸어 도방포(道傍浦)로 나가니, 거주하는 사람도 많지 않고 개간한 전지(田地)도 매우 적었으며, 우뚝 솟은 두 절벽 사이로 하나의 항구가 깊숙이 통하여 있었습니다. 저포동(寺浦洞)에 이르니 푸른 모시풀이 뽁뽁하게 서 있고 기이한 바위는 깎아지른 듯 솟아 있어 비랑을 타고 가야 했습니다. 죽전구미(竹田邱尾)에 들어가니 대숲의 대나무가 드물게 서 있어서 가까스로 진현(進獻)할 수량만 준비하고, 다시 고개를 넘어와서 유숙(留宿)하였습니다. 17일 나리동(羅里洞)에 들어가니 넓이와 돌레가 매우 광활하여 사방(四方) 30리(里)가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논을 개간하기에 적당한 곳이 많았으나, 나무들이 울창하게 우거져 있어 아직 개척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어 바닷가 입구 쪽으로 나오니 추암(雉巖) 한 봉우리가 반공(半空)에 솟아 있었습니다. 돌아서 광암동(廣巖洞)에 이르니 산이 열리면서 땅이 평평하여졌으며, 밭이 많고 흙도 푸석푸석하였습니다. 또 향목곡(香木谷)에 도착하니 마을이 암벽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향나무를 겨우 베어 진상(進上)할 원수(元數)만 준비하였습니다. 그 아래는 바다에 접해 있었는데, 굴이 매우 깊숙하여 가지어(可支魚) 한 무리가 출몰하므로 2마리를 잡았습니다. 곁에 황토굴(黃土窟)이 있어서 석간주 약간을 파 가지고 왔습니다. 18일 처음에 정박 하였던 대황토포(大黃土浦)로 되돌아왔습니다. 울릉도를 두루 일주한 노정을 계산하여보니, 모두 160여 리였습니다. 감방(坎方: 北)에서 이방(離方: 南)까지가 70여 리이고, 진방(震方: 東)에서 태방(兌方: 南)까지가 60여 리였습니다. 보리와 밀은 모두가 풍년이고 콩과 팥은 바야흐로 줄기가 뻗어 나가고 있었으며, 생마(生麻: 삼)도 점차로 무성하여져 가고 있었습니다. 20일 신시(申時: 오후 3~5시)에 울릉도에서 출발하였는데 풍세(風勢)가 좋지 않고 해무가 사방에 짙 끼어서 바다 가운데서 머물렀습니다. 23일 술시(戌時: 오후 7~9시)에는 갑자기 풍랑을 만나 치판(鴟板)이 쪼개지니 사공이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밤을 지내고 나니 풍랑이 가라앉아 조금씩 저어 갈 수가 있었습니다. 2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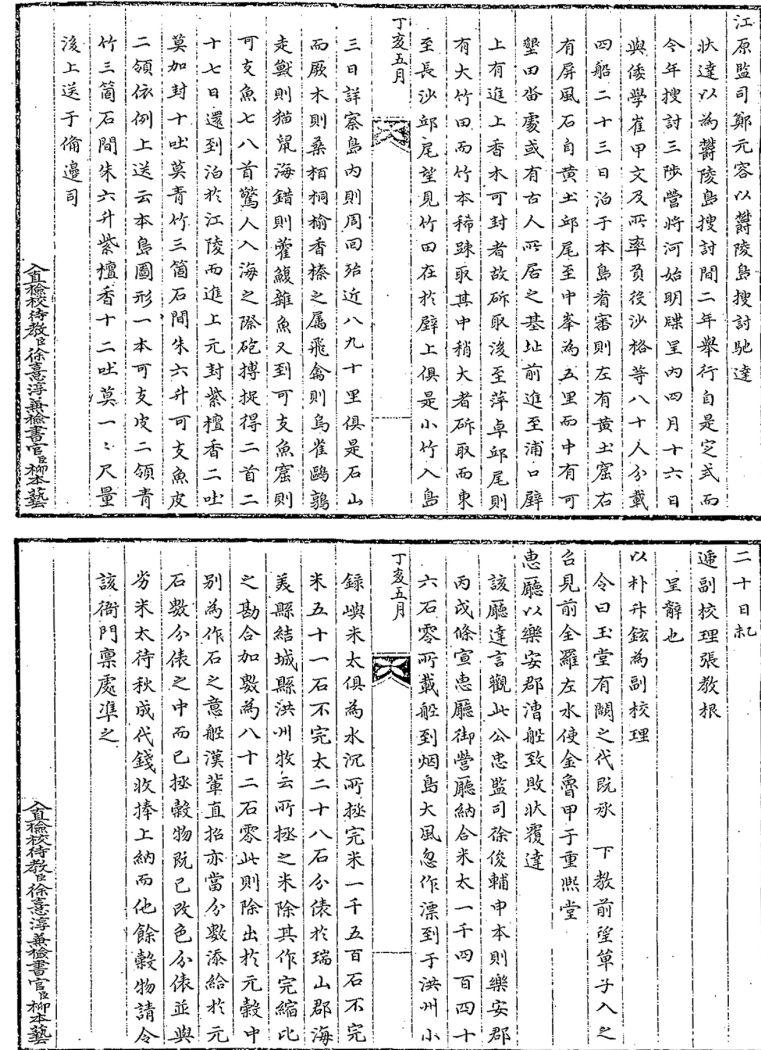
11 圖: 원문에各司로 되어 있으나, 圖의 오자로 판단하여 바꿈.

오시(午時: 오전 11~오후 1시)에 간신히 삼척진(三陟鎭) 앞바다에 도착하였습니
다. 같은 달 29일 비로소 평해군에 돌아와보니, 복선(卜船)도 이미 본군(本郡)
의 구산진(邱山鎭)에 와서 정박해 있었습니다. 울릉도의 도형(圖形), 민호(民戶)
및 개간(開墾)한 형편, 진상(進上)할 자단향(紫檀香)·청죽(靑竹)·가지어피(可支
魚皮)·석간주(石間朱)를 정식(定式)대로 올려 보냅니다.’

이번에 수토(搜討)하러 갔던 길이 천 리나 되는 깊은 바다였는데도 무사히
갔다 돌아왔으니, 진실로 매우 다행한 일이었습니다. 해당 첩사가 새로
들어온 섬 주민의 생활 형편을 생각하여, 군의 최잔한 형편에도 6백 냥을
출연하여 곡식으로 바꾸어 가지고 가서 구제하였으니, 150석의 많은 수량
에 이르렀습니다. 울릉도의 최잔한 백성들이 이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이는 실로 과거의 첩사들이 행하지 못했던 선처(善處)였습니다.
그가 베푼 은혜를 헤아려보건대, 매우 가당한 일이었습니다. 울릉도 도형
(圖形) 1본, 자단향(紫檀香) 원봉(元封) 2토막과 가봉(加封) 10토막, 청죽(靑竹) 3
개, 석간주(石間朱) 6되, 가지어피(可支魚皮) 2벌을 신(臣)의 감영에서 감봉(監
封)하고 아울러 민호(民戶)와 간전(墾田)의 수록(修錄)을 올려 보냅니다. 이상
과 같은 연유로 치계(馳啓)합니다.”

『한성주보』 제73호, 1887년 7월 25일.

19세기 울릉도 수토 사료 (1)



19세기 울릉도 수토 사료 (2)

19세기 울릉도 수토 사료 (3)

認四寸謂之守孫之上與而移錄正犯於定配勒
 律之沒者尤豈不至究乎伏乞下詢該會查問本
 道使謀父在衙得伸至究之情云鄭致永係定武
 放送而才姪審理既為換犯而旋即時額控涉猥
 屑為父訟寬事係四件且獄事至重不可不一審
 行查請令道詳查狀聞漢粟處並允之
 江原監司尹聲大以鬱陵島搜討馳放
 狀啟以為今年搜討三陟營將李慶鼎去四月初
 八日率負役到泊於鬱陵島黃土龜尾看審島形
 則屏風巖在其石貫上窟在其左山頂看亦非不
 辛卯五月
 交翠而皆是短矮道上者不盡日搜括僅所原數
 仍向玄石龜尾則可支魚百十為羣吼哮如牛或
 砲或林捉得二首仰看最高之峯是謂朱砂峯而
 環一島蹤跡殆遍搜索備至而幸無頑處矣本島
 圖形進上元封紫檀香二吐加封十吐青竹三箇
 石間朱六升可支魚二領依例自營一、尺量
 後上送于備邊司

金重國 金鶴來檢書官 安李良

初四日 疎
 遣承旨詣 宗廟 永禧殿徽定殿 景慕宮奉審
 摘奸仍詣受 香諸處奉審摘奸
 遣提學金學性詣 綾陵奉審摘奸仍留監 察
 忌辰在再明也
 改差慶尚左兵使申命源
 兵曹以命源病難赴任啟請改差也
 江原監司朴容壽狀羅越松萬戶李主祥
 狀啟以為鬱陵島搜討間二年舉行而今年搜討
 越松萬戶當次故發關分付矣該萬戶陳呈內萬
 戶去四月初八日與倭學金英俊及負役十一人
 沙格六十名分騎四船離發十九日到泊于本島
 黃土龜尾下陸着審則何許船隻厥數不少見甚
 驚恠次茅摘奸則全羅道船十四隻慶尚道船二
 隻本道船二隻合為十八隻而皆云漂流入泊故
 各船主一任縛置閏四月初一日回船時當並
 捉逮而萬戶所領四船狹窄無以盡載渠之潛船
 擊皆破傷故只捉船主十八名分載四船沙格等
 各別嚴飭使之追後來待初四日還鎮該船主等
 仍為枷囚以待處分而慶尚道船二隻中一隻自

乙酉五月



乙酉五月



十五日 寅
 許施此閱還殺加分之請
 備局啟言即見威鏡監司申在植狀啟則以為本
 道寂簿自來不敷且荐獻餘害至今尚存窮窮種
 糧惟還是時而只以應分之殺實無塗抹之道元
 還餉及交濟久置應留條中折米限一萬石特許
 加分事請令廟堂稟旨分付矣獻害未蘇又當農
 許艱食宜念請依狀請數又許令加允之
 連內醫提調朴周壽承旨金弘根以沈能岳鄭漪代
 之尋連漪以洪彥謨代之
 辛卯五月
 教曰內醫提調許連前望單子入之又教曰同副
 承旨許連前望單子入之○政院以鄭漪實是嘉
 義都承旨李紀潤嘉善座次有違格例啟稟教以
 新除被承旨許連前望單子入之
 以李錫祐為兵曹參判
 教曰兵曹參判有闕之代前望單子入之

金得教 李有恩檢書官 安李良

統營以異謀船搜驗事持公文果泊云故考見公
 文該該營軍官徐文德還運本營云矣今此無類
 漢之冒禁潛入若是很籍究厥所犯萬一痛駭捉
 束之十七名為先嚴囚于平海破萬戶李主祥十
 八船隻與許多沙格棄置空島任其罪為只捉船
 主輕先回來者大是妄率其在重島禁嚴搜討之
 道不可仍置為先嚴無其罪狀令彼司稟慶島中
 棄置之船隻沙格嚴飭該鎮首校眼同船主一漢
 更為八島捉來一體並數登聞許料

金得教 尹滋惠檢書官 金徽義

19세기 울릉도 수토 사료 (4-1)

19세기 울릉도 수토 사료 (4-2)

704

1887. 7. 25 [제73호] 4

997 997

日本商船火輪二帆肥後丸 一隻 二十三日出去
 本國商船火輪二帆海龍船 一隻 二十四日入來
 日本商船火輪二帆大神丸 一隻 同日入來
 日本商船火輪二帆較賀丸 一隻 二十六日入來
 日本商船火輪二帆較賀丸 一隻 二十八日出去
 本國商船火輪二帆廣濟船 一隻 同日出去
 上諭恭錄 同日奉 上諭洪鍾軒授廣州衛守戶字晉授禮部刊書金哲根授大司成鄭範朝授藝文提學

東伯狀 齊 同日江原道觀察使鄭泰好贈職平海部守兼鬱陵島使朴泰遠藤尾內使鬱陵島搜討次閏四月初八日卯時稟報雜物分載二隻船率員役沙格等四十名齊發向島初九日戌時命使船先泊大黃土浦卜船鱗次到泊正租大十五石大米四石小米二十五石大石木麥五石鹽三石醬二石一卸下于島長公舍後抄出民口均排賑恤十五日早朝離發陸行抵到各浦洞則山巒抱擁谷口稍濶構異者隔岸分居泊畝者闌林爲新壟樋口尾則峭壁層巒奇怪萬狀仍踰假道頭則峰岩危險線路繞道向往長浦洞則板屋居生自作一村舊畚起新治爲百畝而以泉源不長無水田可墾日已昏黑仍爲止宿十六日轉向長社洞出往道傍浦則居民不多墾田數少而雙崖屹立一港深遠至等浦洞則青岑立奇岩削出巖崖而行入于竹田邱尾則皇林稀疎僅備 逸獻之數還爲驗嶺止

1887. 7. 25 [제73호] 5

705

998 998

宿十七日入于羅里洞則幅圓廣濶冷爲一舍之地雖多宜番處亂樹叢林姑未開拓仍出海口鍾巖一峰插入半天轉至巖巖則則山巒陸陸田多土游又到香木谷則村在巖巖開故僅爲斫取進備 進上元數其下臨水窟穴深邃而可支魚一隊出燈捕得二頭傍有黃土窟故如干掘取十八日還到于初泊大黃土浦計其環一島南回爲一百六十餘里而自坎至島爲七十餘里自震至兌爲六十餘里巖形秋耕兩麥驟豐熟豆太方張耕播生麻漸次苗茂二十日申時自島離發風勢不利瘴霧四塞遲遲中洋二十三日戌時猝遇風浪船板搖搖驚怖莫知所措經宵浪息稍稍行二十五日午時艤幸抵到于三沙嶼前洋閏月二十九日始爲還郡則卜船亦已來泊於本郡即山嶼本島圖形及民戶起變形在與 進上紫檀香青竹可支魚皮石間朱依定式上送今此搜討之行千里層浪無事往返誠甚奇幸該命使爲念新接島民之生涯以其殘現捐出六百兩賀費往哺至爲一百五十石之多島瘴殘民賴以資活此實前命使之所未行者也按以該島瘴氣前鬱鬱各形一本紫檀香元封二吐加封十吐青竹三箇石間朱大升可支魚皮二箇自原營監對并民戶靈田錄錄上送緣由 齊

上諭恭錄 同月初六日司馬口傳 下教日機器局有司堂上右營使開泳湖句營 嶺伯狀 齊 同日慶尚道觀察使兼 親軍南營外使李端俊騰報各鎮設置置爲邊上機關配察察形便斟酌虛實分令察復多有遺遺之備東萊境絕影島處在釜山鎮十里日館相望之地四面環海山勢巖巖船往來必由於是實爲海防咽喉故設鎮之論厥惟久矣乃於辛巳春 齊請蒙 允包領雲西平三鎮合設一鎮於該鎮仍置命使而各項排布極有可觀遠近人民漸次聚集畿圍足可

근대 초기 아시아의 국경 교섭: 명대 중국과 월남의 사례

Kathlene Baldanza, *Ming China and Vietnam: Negotiating Borders in Early Modern Asia*,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6

이병택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이 책은 중국과 베트남의 국경 교섭을 명(明) 시대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명조 중국과 대월(大越)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전사(前史)를 제1장에서 그리고, 청조 중국에서 두 나라의 국경 교섭을 이 책의 결론에 위치시킨다. 이 책에서 가장 큰 흥미로운 점은 국경 교섭을 단순히 국경 문제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양국이 처한 내부의 문제, 나아가 문명에 대한 사고와 결합해 논의한다는 것이다. 방법론적으로 저자는 국경 문제에서 중국의 지배와 베트남의 교묘한 방어라는 양측의 민족주의적 입장을 넘어선다. 이를 위해서 중국과 베트남의 자료를 두루 활용하면서 적절하게 분석한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중국과 베트남의 국경 문제는 '교섭'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은 근대 초기까지 동아시아 국경 문제의 연구 방법에 하나의 좋은 방향성을 제시하는 저서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 책의 서문은 '이름의 힘'이란 제목 아래 '월남(越南)'이란 이름이 채용된 교섭 과정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한다. 1802년 겨울 청나라 가경제(嘉慶帝)는 응우옌 왕조를 수립한 응우옌 폭 아인(阮福映)으로부터 여느 때와 다른 요청을 받는다. 응우옌 폭 아인은 자롱(嘉隆) 황제로 등극한 후 나라의 이름

을 기존에 인정된 안남(安南)이 아닌 남월(南越)로 인정해 달라는 요청을 한 것이었다. 안남은 글자대로 해석하면 '안정된 남쪽(Settled South)'을 의미했고, 당 제국이 그 지역에 부과한 이름이었다. 그런데 남월은 안남보다 훨씬 오래된 왕조의 이름이었다. 가경제는 그의 요청을 허락하지 않았다. 가경제가 거부한 이유는 과거의 남월은 북베트남 지역의 홍하삼각주를 포함할 뿐 아니라 중국의 광둥과 광시를 포괄하는 국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남월 왕국은 진(秦)이 몰락하는 가운데 한인(漢人)인 조타(趙佗, 베트남 발음으로 쯤에 우대)가 서기전 206년에 세웠다. 서기전 196년 형식적으로는 한(漢)나라의 종주권(suzerainty)을 수락했지만, 공식적으로 행정상의 식민지가 된 것은 서기전 111년이었다. 조타가 국호를 남월로 선택한 이유는 남쪽이 한제국의 남쪽을 가리키는 것이라 점에서 명백하다. 과거의 월나라는 상하이와 항주 근처의 연안에 위치했다. 서기전 333년 초(楚)나라에 정복된 뒤 월나라의 엘리트들은 광둥, 푸젠, 북베트남으로 도망쳤다. 북쪽 사람들은 이 집단을 백월(百越)이라 불렀고, 이 용어는 광둥, 광시, 북베트남을 포괄하는 큰 습지대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었다.

위와 같은 사항을 고려한다면 1802년 자롱이 가경제에게 한 요청은 일종의 위협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북쪽의 지배에 저항한 강력한 월나라와 동등해지려는 의도를, 다른 한편으로는 청조의 남방 영토를 요구하는 주장을 담고 있는 것으로 비쳤다. 청나라 정부의 거부에 자롱은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단절하겠다고 위협했으며, 나아가 응우옌 왕조는 '참파 왕국'의 영토를 병합해서 기존의 베트남 국가보다 더 큰 나라임을 설명했다. 이 새로운 국가는 과거와의 관계를 긍정하면서도 확장된 정황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이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었다. 이에 대한 타협안으로 가경제는 글자의 앞뒤를 바꾼 '월남'을 제안했다. 그는 새로운 국가가 베트남의 역사적 영토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월(越)을 쓰고, 조

1 참파 왕국은 베트남 중부지방에 위치해 있던 참족이 세운 왕조이다.

공 국가로서의 지위를 표현하기 위해서 남(南)을 붙였다고 설명한다. 자롱은 타협안을 받아들였다. 베트남 연대기에는 그 이름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한다. 특히 남(南)은 남쪽으로 영토를 확장했다는 뜻으로 해석했다. 그 이후 자롱의 아들이자 계승자인 민망(明命)은 옛 국호인 대남(大南)으로 국호를 변경했다. 베트남이란 이름은 20세기에야 고정되었고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에 그 이름을 남겼다.

위와 같은 흥미로운 사례로 출발한 저자는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이 책을 이끌어간다. 첫째, 중국과 베트남의 관계는 밀접하며 때때로 협동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 둘째, 역사와 문화의 전수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는 갈등했다는 점, 셋째, 두 나라의 외교 관계에 대한 결정에는 내부적인 논쟁과 분열이 깔려 있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주제를 통해서 저자가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는 역사 연구를 제한했던 기존의 민족주의적 ‘메타-이야기’를 극복하고자 한 데 있다. 아래에서 서평자는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중국과 베트남의 관계에 대한 역사를 소개하는 차원에서 정리하고자 한다.

제1부 제1장은 ‘북국에 있는 남쪽의 학자들’이란 제목으로 명나라 이전의 중국과 베트남의 역사를 간략하게 조망한다. 그 이야기의 중심 인물은 레 탁(黎瓘, 1260~1340년대)으로, 그는 대월(大越) 찢(陳)왕조의 관리 이력과 몽골 원나라의 관리 이력을 모두 가진 사람이다. 그의 선조는 중국 왕조의 명을 받아서 홍하삼각주에 파견된 ‘북국’ 사람이었다. 레 탁은 찢왕조의 관리로서 봉사하던 중 1285년 몽골의 2차 침공으로 알려진 전쟁에서 항복했다. 그 이후 고국으로 돌아가려는 그의 노력은 실패하고 원의 관리로서 생을 마감한다. 대월 사람들은 그를 ‘배신자’로 낙인찍었다. 그의 안남 관련 역사 책 『안남(A Brief History of Annam)』은 1330년 무렵 저술한 것으로 안남의 역사를 ‘북국의 규범과 문화’의 영역으로 포섭했다. 저자에 따르면 이 책은 수세기 동안 중국 내에서 안남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전거가 되었다. 이 책에서 레 탁은 중국의 주요한 고전들을 종합하면서 그의 개인적 경

험을 활용했다. 그는 자신의 고국을 기원전 2세기의 남월, 한나라의 주(州), 당의 보호국이었던 안남으로 지칭한다. 이러한 다수의 지칭은 이 지역의 역사적 부침을 반영한다. 저자에 따르면 레 탁은 북국과의 문화적 공유를 주장하는 틀 속에서 초기 베트남을 고찰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안남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고수하지만 문화적 수준이 저급한 고산지대의 거주자들과 달리 ‘만(蠻)’과 ‘이(夷)’가 그의 정체성을 구성한다고 보지 않는다. 고산지대의 거주자들은 ‘고전 문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은 ‘어리석고 유치한’ 족속으로 비쳐진다. 이러한 시각에서 그는 원나라의 베트남 침입조차도 고전 문화의 부활을 가져온 것으로 제시한다. 레 탁의 인생 역정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베트남과 중국의 엘리트 문화는 서로 뒤엎혔고, 그 속에서 엘리트들은 갈등적 정체성을 형성해야 했다.

제2장은 ‘어느 남쪽 늙은이의 꿈의 기록’이란 제목으로 원에서 명으로의 왕조 교체와 베트남의 혼란기에 일어난 국경 교섭을 분석한다. 명의 주원장(홍무제)은 왕위에 오른 이후 1369년 2월 공식적으로 자신의 등극을 이웃 국가들에 알리고 선린 관계를 수립하고자 했다. 대월의 찢은 혼란한 국내 정세에서 왕조의 정통성을 쌓는 데 도움이 되었기에 번국의 관례를 준수하여 가장 앞서 공식적인 축하를 보냈다. 외교 사신은 1369년 7월 23일 난징에 도착했다. 저자는 대월이 가장 먼저 명을 인정한 것에 대해 대단히 의미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저자에 따르면 그 당시 고려는 여전히 원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고, 이러한 정세는 고려의 몰락과 이성계의 조선 수립에 기여했다. 20년 이상 긴장과 불신의 관계에 있었던 고려에 비해서 대월은 호의적으로 비쳤던 것이다. 저자는 명의 관리들이 명의 종말까지도 이 점을 잊지 않고 언급했다고 말한다.

명의 대외 정책은 두 선례 간의 긴장에서 진행되었다. 첫 번째 선례는 주원장의 정책으로 ‘제한된 명 정책(a bounded Ming)’이었다. 여기서 ‘중국(中國)’이란 용어도 ‘천하(天下)’에 비해 제한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원장의 정책에서 남동쪽의 나라들과 일본, 한국은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범주에 포함하였고, 몽골과 같이 북서쪽의 나라들은 중국의 주권에 잠재적으로 위협을 주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저자는 주원장의 정책에는 ‘문화적 국경(cultural borders)’이 있다는 점을 환기시킨다. 제1장에서 소개한 레 탁과 달리 주원장은 베트남을 ‘이국적이고 위협하며 야만적인 장소’로 보았다. 1370년대 참파와 대월이 싸우면서 서로 명나라에 사정을 설명하며 도움을 요청했다. 주원장의 명나라는 달갑지 않은 중재자의 역할을 맡아서 싸움을 그만두라는 실효성 없는 요구를 하는 정도에 그쳤다. 1397년 쩐 왕조는 광시의 시밍(思明)현 100리를 점령하여 그 땅이 대월의 옛 영토임을 주장했다. 이에 명의 몇몇 관리는 무력으로 그들을 추방해야 한다고 나섰다. 그러나 주원장은 예로부터 만(蠻)과 이(夷)는 항상 서로 간에 싸웠고 어리석은 완고함으로 주제넘게 굴다가 마침내는 재난을 초래하고야 마니 단지 기다리라고 답했다. 즉 그는 베트남인들을 북국에 포섭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夷)로 보았다. 이렇게 주원장은 명과 대월의 정치적 문화적 경계를 명확하게 그었다. 그의 정책은 『황명조훈(皇明祖訓)』에 간직되었다.

두 번째 정책은 주체(朱棣: 영락제)의 ‘팽창적 명 정책(an expansive Ming)’이었다. 주체는 1399년 정난의 변을 통해서 건문제로부터 제위를 찬탈해 제3대 황제로 등극했다. 그는 농업에 기초한 자족적 국가를 내세운 주원장과 달리 한·당 제국, 그리고 쿠빌라이의 팽창주의 모델을 이상적인 국가로 추구했다. 정화의 해양 원정에서 나타나듯이 영락제는 동남아시아에 큰 관심을 보였다. 1406년 영락제는 주원장의 조훈을 어기고 베트남을 침략해서 병합했다. 공식적인 명분은 호 끼 리(胡季犛) 왕조를 타도하고 쩐 왕조를 복원하겠다는 것이었다. 1400년 호 끼 리는 자신의 성을 레(黎)에서 호(胡)로 바꾸고 황제가 되었고 국호도 다이 응우(大虞)로 바꾸었다. 1404년 쩐 왕조의 정통 후계자를 자칭한 쩐 티엔 빈(陳天平)이 명 조정에서 들어가 호 끼 리의 찬탈을 규탄했고, 영락제는 쩐 티엔 빈에게 군사를 주어 치게 했다. 그러나 그가 불

잡혀 죽자 영락제는 20만의 군사를 이끌고 다이 응우를 침략했다. 점령 후 영락제는 안남이란 이름 대신에 교지(交趾: 한(漢) 왕조의 보호국)의 이름으로 대월을 명의 한 속주로 동화시키고자 했다. 곧 보게 되겠지만 이 정책은 향후 대월이 명과 문화적 동등성을 주장하게 되는 배경이 된다. 한 가지 덧붙여 저자는 호명전쟁은 불화살이 중심이었던 몽골과의 전쟁과 달리 화약이 중심인 전쟁이었고, 전투 방식의 큰 전환점이 되었다고 말한다.

제2장의 주인공인 호 응우엔 쩡(胡元澄)은 호 끼 리의 큰아들이다. 호 끼 리는 쩐 왕조와의 연속성을 고려해서 큰아들 대신 둘째 아들 호 한 트엉(胡漢蒼)을 왕위에 앉혔다. 명에 패한 이후 호 끼 리는 처형되었으나 호 응우엔 쩡은 사면을 받고 그 이후 명의 관리로서 봉사하였다. 1418년 레 리(黎利)는 대명항쟁을 시작했고, 1430년 레 왕조와 명 간 관계 정상화를 진행했다. 레 리와 고지대 출신의 추종자는 반명, 반중국, 반쩐, 반해안 정책을 취했다. 호 응우엔 쩡의 『남옹몽록(南翁夢錄: A Record of the Dreams of an Old Southerner)』은 레 탁의 저술이 출간된 지 1세기 후에 저술된 것이다. ‘남쪽 늙은이’를 뜻하는 남옹(南翁)은 그의 필명이고, 이 표현은 북쪽에서 20년 이상 머문 후에 느끼는 남쪽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고 있다. 저자에 따르면 그의 저술이 레 탁의 것과 가장 차이 나는 지점은 그가 대월을 중국과 구별되는 국가로 보았다는 데 있다. 이것은 1세기가 흐르는 가운데 베트남인들의 의식에 변화가 있었음을 반영한다.

제3장과 제2부 4, 5장은 1536년 명나라 가정제(嘉靖帝)가 그 후계자의 탄생을 알리려 했을 때 야기된 외교적 위기가 1540년 대월 막(莫) 왕조의 형식적 복종으로 진정되기까지의 과정을 분석한다. 이 문제의 성격을 분석하기 위해 저자는 1404년 호 끼 리의 왕위 찬탈에 대해 명나라가 취한 개입 정책과 그로 인해 일어난 결과들을 분석한다. 가정제가 당면한 문제도 이전의 영락제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차이는 대월이 한 세기 간 놀라울 정도로 변했다는 점이었다. 명의 대월 점령(1404~1427년)을 종식시킨 후

대월은 영토의 크기나 군사적 능력이 증대했다. 무엇보다도 대월은 중국으로부터 독립적이었고 동시에 고전 문화와 중국이 자신의 특권으로 간주한 제국의 레토릭을 펼치는 데 자신감을 갖기 시작했다. 저자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는 영락제 시대의 점령이 '예견하지 못했던 결과들(unintended consequences)'을 낳은 것이었다. 결국 명의 직접 지배는 대월을 잘 통합된 명의 속지로 만들기보다는 '북국을 닮은 남국(the southern mirror state)'을 창조하는 데 도움을 준 것이었다. 중국으로부터의 독립 정신과 더불어 문화국의 의식은 1427년 명을 몰아낸 이후 응우옌 짜이[阮鷹]가 작성한 '대고(大誥: Great Pronouncements)'에 잘 드러나 있다. 명에 대한 레 왕조의 문화적·군사적 제도에 대한 저항은 고전적 제도에 대한 배격이 아니었다. 레 리이는 스스로를 황제로 칭했으며, '순천(順天)'을 연호로 삼았던 것이다. 그리고 레 리이의 손자인 레 썬 탄[黎思誠: 레 성종]에 이르러 대월은 유교적 관료 통치가 만개하게 되었다. 그의 통치(1460~1497년)는 37년이나 되었고, 특히 홍덕(洪德: 1470~1497년) 연호의 기간은 유교 식자에게는 황금시대였다. 그 시대에 수립된 제도, 법, 의식은 수 세기 동안 지속되었다. 저자에 따르면 대월은 명의 정치 문화뿐 아니라 제국적 기술과 야망 또한 본받았다. 15세기에 레의 통치자들은 남동아시아 나라들과 명백히 다른 자신들의 정체성을 수립했고, 문명 대 야만의 레토릭을 펼쳤으며, 공격적으로 남쪽으로 영토를 확대했다. 10세기 이후 대월과 라이벌 관계였던 참파와의 힘의 균형은 대월 쪽으로 기울었다.

레 썬 탄의 사후 대월의 정치는 혼란에 빠졌다. 1527년 막 당 중[莫登庸]은 레 왕조로부터 제위를 찬탈했고, 이를 계기로 대월은 남북으로 갈라져 분열과 투쟁이 200년 이상 이어졌다. 처음에는 레 씨와 막 씨 사이에 투쟁이 있었고, 그 뒤에는 쩐 씨와 응우옌 씨 간의 투쟁이 이어졌다. 막 당 중은 레 왕조와 다른 질서를 표방하기는 하였으나, 그와 지지자들은 레 왕조의 홍덕 시대에 꽃핀 유교 문화의 후계자로 자리매김했다. 막 당 중은 연호를 '명덕(明德)'으로 선택했다. 막 당 중은 이중으로 명에 문젯거리를 던졌다. 그는 찬

탈자이자 명 제국주의 언어를 교묘하게 레토릭으로 구사했던 것이다. 한편 명의 가정제는 1521년 즉위 후 황실의 정통성을 강조하는 관료들과 중국 관 예송인 '대례의(大禮議)'를 벌였던 인물이다. 정덕제가 후계자 없이 죽자 그의 시촌 동생인 후충(가정제)으로 대를 잇게 했다. 관료들은 그의 정통성을 '양자'의 형식으로 유지하고자 했으나, 가정제는 그의 친부를 황제로 추존하고자 했고 결국 그의 뜻을 관철시켰다. 그런 그가 1536년 베트남의 문제에 관심을 보였던 것이다.

명과 베트남의 교섭 결과는 막 당 중이 명에 복속한다는 상징성이 깊은 (맞출을 목에 메는 것과 같은 대단히 세심한 연출이 강조되는) 의례를 보여주었고, 이에 대해 명은 막 왕조의 정통성을 인정해주는 선에서 평화적 해결을 보았다. 이 평화적 교섭이 도출되기까지의 명 내부의 논쟁과 변경 관리들의 역할을 저자는 추적한다. 그리고 막 당 중의 굴종을 비난하는 베트남 쪽의 시선에 대한 분석도 덧붙인다. 우선 명 내부에서는 대월에 대한 개입 노선과 반개입 노선 간에 오랜 논쟁이 있었다. 개입 노선은 베트남을 중화 질서의 한 부분으로 간주하는 전제하에서 명의 문명화 사명을 강조하는 윤리적 성격의 입장이었고, 반개입 노선은 베트남을 명과 다른 존재로 간주하면서 가급적 먼 거리에 두려는 입장이었다. 후자는 주원장의 입장이었고, 전자는 영락제의 외교 노선이었다. 가정제는 영락제의 외교 노선에 기울어 있었으나 주원장의 선례를 가볍게 무시할 수는 없었다. 그리고 상당수의 관료들은 주원장의 제한된 명 정책을 지지했다.

따라서 개입 노선을 지지하는 사람은 주원장의 대월 정책을 적절하게 중화시키는 논의를 제기해야 했다. 가령 다음과 같은 주장이다. 홍무제는 쩐 왕조의 복종을 칭찬했고 그의 후계자들이 안남을 공격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이 명령은 쩐 왕조에만 해당하는 것이다. 쩐 왕조가 호 왕조와 레 왕조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홍무제의 명령에 따를 의무는 종식된 것이다. 그리고 안남은 20년간 공물을 보내지 않았을 뿐 아니라 막 당 중은 왕위의

찬탈자이다. 안남은 명의 질서하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반역과 찬탈을 벌하는 일은 명의 윤리적 책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서 반개입 노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화이(華夷)의 이분법에 기초해서 '중국'이란 말로 제한된 명 정책을 환기시켰다. 안남은 만이(蠻夷)의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의 지배에 적합하지 않는 곳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렇지만 이들은 지난 1세기 동안 대월에서 일어난 중화 문화의 수용에 따른 변화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눈을 감았다. 두 입장의 차이에도 그들이 공유한 점은 남쪽의 경계 너머로 중국과 동등한 국가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1537년 망명 레 왕조는 사신을 보내서 막 당 중의 왕위 찬탈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다. 그 사신의 호소에 설득되어 명은 10가지 죄목을 막 당 중에 게 부과했다. 이것은 대월에 대한 명의 관할권을 시사하는 것이었다. 명이 우려한 점은 막 당 중의 무도함과 더불어 그가 인가받지 않은 제국의 상징을 사용한다는 데 있었다. 막 당 중이 선포한 '대고(大誥)'는 명 주원장의 것을 모델로 한 것이었으며, 또한 '짐(朕)'이라는 제국적 주어를 사용했고, '천명(天命)'을 상속한 것으로 말했다. 막 당 중의 대고에 나타난 고전적 통치 양식의 제도화는 중국의 문화적 교화의 이상과 어울리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중국의 교화의 이상은 '문명화의 사명'이라는 서구의 식민주의와 결합될 수 있는 것이었다. 여기서 저자는 흥미로운 질문을 던진다. 즉 이러한 교화의 이상은 '자기 스스로의 탈바꿈(self-transformation)'을 허용하는가? 그리고 교화와 황실 모독을 구별하는 선은 어디인가? 어쨌거나 명 조정은 막 왕조가 내세운 중국과의 정치적 친근성에 대한 표명에 별다른 인상을 받지 않았고, 단지 막 왕조가 위협적이며 복종적이지 않기 때문에 군사적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저자는 근대 초기의 대월은 명나라에 진짜 위협적이었던 점을 기존의 민족주의적 역사가 은폐해 왔다고 주장한다.

명의 실용적 관료들은 전쟁 없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탈문명화 전략을 개발했다. 그들은 홍하삼각주에 대한 중국의 통치는 이미 과거의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베트남의 독립을 받아들이면서도 베트남의 신유교적 개혁에 눈감기 위해서 그들은 베트남인들을 '탈문명화시키'는 것이 더 나은 방책이라고 생각했다. 탈문명화의 레토릭은 명이 대월을 지배하기 적합하지 않은 야만족의 나라로 간주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직접 통치의 의도를 가진 가정제를 설득시키는 데도 필요한 것이었다. 즉 북조의 고전 문화를 반조하는 '거울(mirror)'이라는 베트남인들의 자의식을 비판하고 조롱함으로써 명의 엘리트들은 전쟁을 치르지 않으면서 베트남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정책을 이끌어냈던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저자는 변경에서 근무했던 개입주의 관리와 반개입주의 관리의 두 시선을 제2부에서 소개한다. 특히 1540년 막 당 중의 항복이라는 '정치극(political theater)'을 이끌어낸 강일계(江一桂)의 활약과 전략을 상세하게 다룬다. 베트남의 역사 서술은 레리의 항복 사례와 달리 막 당 중의 항복 사례를 지나치게 비판하곤 한다. 저자는 그 두 사례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반면 역사가들은 조공 체제의 조건에 순응하도록 강제하는 중국의 압력 앞에 선 베트남 국가의 실용주의를 강조하곤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파괴적 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월과의 관계에서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중국의 필요를 간과한 것이라고 저자는 비판한다.

제3부는 1597년 베트남의 왕조 교체기에 일어난 명과의 외교 교섭을 다룬다. 1592년 레 왕조는 막 왕조를 동 킨(東京)에서 몰아낸 이후 명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는 외교 교섭을 한다. 동 킨의 함락과 막 매우 협(莫武洽)의 죽음 이후에도 막 왕조는 까오 방(高平) 지역에서 계속 싸웠다. 레 왕조의 재건은 일시적인 것이었고 통일 베트남은 200년 동안 다시 쪼나 정권과 응우옌 정권 간에 투쟁을 했다. 막 당 중의 항복이 있는 후 반세기 만인 1597년 레 왕조는 국경에서 비슷한 사건을 연출했다. 명의 대표자들은 레 왕조를 인정하기는 했지만 막 왕조에 대한 인정을 거두지 않았다. 막 왕조는 까오 방을 통제했다. 레 뚜이 땀(黎維潭)은 막 당 중의 의례에 비해 좀 더 간소한 것을 요청했고, 명의 대표자들은 완전한 정식 의례를 요구했다. 레 뚜이 땀

의 요청은 거부되었고 그는 4차례 절을 올리고 의례를 마친 후 돌아갔다. 저자에 의하면 명의 관리들 입장에서 레 리이나 막 당 중이나 레 뚜이 락 간에는 별 차이가 없었다. 그들은 상대해야 할 사람들이지만 신뢰할 수는 없는 대상이었다. 명은 베트남의 상징적 항복을 요구함으로써 베트남 국내의 갈등이 변경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했다. 레 왕조와 막 왕조를 모두 인정함으로써 대월을 분리 통치하는 것은 명의 변경을 안정시키는 데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풍각관[馮克寬]은 1597년 레 조정의 우두머리였던 찰 퉁[鄭松]에 따라 명에 파견되었다. 그의 임무는 국호와 지위를 변경하는 것이었다. 풍각관은 명에 머무는 동안 조선의 사절이었던 이수광(李睟光)과 ‘필담(brush talk)’으로 대화를 나눈 인물로도 유명하다. 필담에서 이수광은 풍각관에게 “너의 나라는 위무관을 가지고 있다. 이 지위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풍각관은 “내 나라가 있는 이후 우리는 위무관의 지위를 가진 적이 없다”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그는 명 조정이 막 당 중의 찬탈을 용서해주면서 그 지위를 내린 것이고, 우리는 지금 왕의 자격을 회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수광의 시는 베트남에도 잘 알려졌다. 1597년 조선인 조완벽(趙完碧)은 일본 해적에 납치되어 일본 상인들과 함께 베트남으로 가게 되었다. 그곳에서 조완벽은 베트남인들로부터 이수광에 대해 질문을 받고 그의 시를 접하게 된다.

풍각관은 만력제(萬曆帝)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에게 31편의 시를 바친다. 저자는 이 시들을 분석하면서 그의 중국과 베트남에 대한 표상을 분석한다. 그리고 저자는 1719년 풍각관의 이야기를 재창조(reinvention)한 응우옌 콰 치엠[阮科瞻]의 「월남개국지전(越南開國志傳)」을 분석함으로써, 베트남인의 자의식의 변화를 엿보고자 한다. 여기서 그는 고전 문화의 적임 상속자로서의 지위를 중국과 다투는 베트남 학자의 면모를 확인한다. 즉 응우옌 콰 치엠은 고전 문화의 ‘남국의 거울(southern mirror)’을 창조한 것이다.

끝으로 저자가 사용하는 방법론의 중요한 특징에 대해서 덧붙이고자 한다. 첫째, 저자는 20세기 철학의 한 축을 담당한 ‘언어적 전환(linguistic turn)’의 조류로부터 큰 영향을 받은 듯하다. 그는 언어의 ‘수행적(performative)’ 측면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국경 교섭에 작동하고 있는 자의식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석 방법은 힘의 논리가 갖는 객관주의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민족주의 담론이 빠지기 쉬운 주관주의를 벗어날 수 있게 한다. 바로 이러한 특징 때문에 저자는 국경의 ‘교섭(negotiations)’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고 생각한다. 둘째, 저자는 특정한 문제(사례)를 이해하고 해결하려 할 때 전수된 의례나 사유의 틀이 겪는 변형을 분석한다. 그리고 문명의 전파와 전유(專有)에 포함된 아이러니를 잘 드러내고 있다. 특히 그는 문명화의 사명이 제국의 경계 안에서 진행될 경우와 제국의 경계 밖에서 진행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명과 대월의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말해 그는 고전 문화가 전수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political enactment’²의 문제를 중화 문명의 사례를 통해서 밝히고 있는 것이다.

² political enactment는 Dean Hammer의 *The Iliad As Politics*에 나오는 ‘The Funeral Games As Political Enactment’에서 차용한 것이다. 그가 사용하는 게임의 용례를 확장시키 보면 의례, 규칙, 절차 등은 고착된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라 공적인 공간에서 다시 시연되고 제정된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런 의미에서 해머는 죽은 자에 대한 추모의 게임들을 ‘political enactment’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enactment는 ‘공연’과 ‘제정’의 두 가지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서 적당한 번역 용어를 찾지 못했으나, 서평자가 볼 때 Kathlene Balanza의 영토 교섭 분석은 political enactment의 차원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영토·해양 일지

곽진오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2018년	국내	국외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25일: 정부, 일본 정부에 영토주권전시간 강력 항의, 즉각 폐쇄 엄중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9일: 미국 뉴욕주 교과서 동해(East Sea) 병기를 요구하는 법안(A1356·S1284) 상하원 교육위원회에 상정 10일: 국제수로기구(IHO), 분쟁 수역 34곳의 명명에 일본 제안 수용 14일: 일본 방위성, 중국 잠수함의 분쟁 섬 주변 접근 비난 20일: 일,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홈페이지의 독도 표기에 이의 제기 25일: 일본 정부, 도쿄에 영토주권전시간 개관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14일: 정부,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명시한 고교 학습지도요령 초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즉각 시정 요구 22일: 정부, 22일 일본 시마네현에서 열린 이른바 '제13회 죽도의 날' 행사에 일본 중앙 정부가 차관급 인사를 파견한 것 등에 대해 강력 항의 28일: 동북아역사재단, 광화문에서 '찾아가는 독도전시회'를 50일간(4.18까지) 운영, 한국어와 영어로 독도에 대한 영토 주권을 세계에 알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6일: 러시아군, 북방영토에서 대테러군사훈련 실시 22일: 일본 정부, 시마네현에서 열린 이른바 '제13회 죽도의 날' 행사에 차관급 인사 파견

2018년	국내	국외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22일 교육부, 일본 정부의 계속되는 독도 영토·역사 왜곡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 및 유관기관과 함께 「2018년 독도교육 기본계획」 마련 26일: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학교 현장 대응 강화를 위해 전국 모든 초·중·고교에서 4월 한 달 동안 '우리 땅 독도 사랑'을 주제로 계기 수업 실시 30일: 정부, 日 대사 불러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확정에 대해 항의, 즉각 철회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7일: 일, 시마네현 공립고교 입시에서 5년 연속 '독도' 관련 출제 20일: 중, 백두산 자연보호센터 생태보호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GIS 지리정보 지휘시스템·삼림방화감독시스템 건설을 실시 30일: 일, 독도 왜곡 강화 학습지도요령 확정 발표, 새 학습지도요령은 2022년부터 적용 예정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일: 동북아역사재단, 제3회 독도교육 주간을 기념하여 15일까지 독도체험관에서 특별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일: 일, 러시아의 쿠릴열도 주변 훈련 경고 7일: 러시아, 베트남과 군사 협정 맺고 미중간 남중국해 분쟁에 개입 16일: 중, 북중 접경에 위치한 지린성 창춘(長春)시와 연변조선족자치주 훈춘(琿春)시를 연결하는 창춘(長琿) 고속철도의 지선(支線)인 백두산행 고속철도 공사 착공 19일: 타이완, 중국 해군의 타이완 해협 실사 훈련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 천명 27일: 일, 외무성 남북정상회담 만찬 메뉴인 독도 그린 디저트에 대해 유감 표명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일: 일,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일본의 양심 있는 시민단체가 부당성을 지적 7일: 중, 최근 '스마트 백두산 여행' 서비스업 개발

2018년	국내	국외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일: 외교부,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부당한 주장을 외교총서에 반영한 일본에 대해 日 총괄공사 초치·항의 논평 발표 • 18일: 대전교육청, 울릉도·독도 탐방 체험 활동 실시 • 25일: 영주교육청, 2018 독도 체험 탐방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일: 일본 정부가 발표한 외교청서에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부당한 주장 반영 • 16일: 일, 도쿄에서 독도 그려진 지도 세키스이전 개최 • 18일: 센카쿠·독도 자료 수집한 '영토·주권 전시관', 여러 방면으로 홍보 활동 전개 • 21일: 일, 향후 5년간 해양 정책의 지침이 되는 새로운 해양기본계획을 내각회의에서 결정

규정 및 규칙



- 편집위원회 규정
- 발행 및 심사규칙
- 투고 요령
- 연구윤리규정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 운영 규칙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편집위원회 규정]

제정 2011.06.30.
 개정 2017.04.21.
 개정 2017.10.25.
 개정 2018.04.19.

제1조 본 규정은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이 발간하는 『영토해양연구』의 편집위원회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편집위원회는 위원장과 약간 명으로 구성하며, 영토·해양 관련 전문연구자로 구성한다.

제3조 위원장은 편집위원 중 1인을 이사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 편집위원은 전공 분야, 소속기관 등의 제반 요인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추천하고 이사장이 위촉한다. 결원이 발생할 경우 같은 방식으로 새로운 편집위원을 위촉한다.

제5조 편집위원장은 재단 소속 직원 중의 1명을 편집간사로 지명하여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편집업무의 실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제6조

1. 편집위원회는 『영토해양연구』의 편집과 간행에 따른 제반사항을 관장한다.
2. 편집위원회는 『영토해양연구』 발간 전에 개최하고, 다음 사항을 심의

하고 의결한다.

- 1) 『영토해양연구』의 편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2) 『영토해양연구』 게재 특집 및 일반 논문, 연구노트, 자료해제, 서평, 일지 등에 대한 기획과 심사 및 심사위원 추천
 - 3) 논문심사 및 『영토해양연구』 출판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 4) 기타 『영토해양연구』 관련 사업에 대한 기획과 심의
3.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주재하고, 『영토해양연구』의 편집과 간행을 총괄한다.
4. 편집간사는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고자료 및 보고사항을 사전에 준비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발행 및 심사규칙]

제정 2011.06.30.
개정 2017.10.25.

제1장 발행규칙

제1조 『영토해양연구』에는 다음과 관련된 특집, 논문, 연구노트, 자료소개, 서평 등의 글을 게재한다.

1. 독도와 관련된 주제
2. 영토 및 해양과 관련된 주제
3. 본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논문

제2조 『영토해양연구』는 6월 30일, 12월 31일 매년 2회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영토해양연구』에 게재 신청하는 논문은 독창성을 갖추어야 하며, 타 학술지에 발표 또는 게재 신청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만약 타 학술지에 중복으로 게재 신청한 경우 향후 2년 동안 『영토해양연구』에 게재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아울러 해당 타 학술지 발행인에게 이 사실을 통보한다.

제4조 제출 원고는 『영토해양연구』 「투고 규정」에 따라 작성한다. 이 규정에 따르지 않은 원고는 수정을 위해 저자에게 반환된다.

제5조 게재 판정이 확정된 후라도 표절 행위가 드러난 논문은 연구윤리규정에 의해 처리한다.

제2장 심사규칙

제6조 편집위원회는 게재 신청 논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항목에 의해 심사한다.

1. 논문 제목의 적절성
2. 형식요건 및 체제의 정연성
3. 논리성 및 독창성
4. 학술적 가치
5. 인용자료의 적절성
6. 분량의 적절성
7. 요약문의 적절성

제7조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원고를 다음과 같은 과정과 내용으로 심사한다.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모든 원고를 논문 제목, 형식요건, 원고분량의 적절성, 재단 목적에 대한 부합성, 논문표절방지시스템 검사 결과 등을 기준으로 1차 심사하고, 참석 편집위원 과반수 통과 판정을 얻어 2차 심사에 회부한다.
2. 편집위원회는 투고원고 중 논문류의 경우 편당 관련 전공자 3인의 심사자를 선정하여 2차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2차 심사 때에는 공정성을 위해 필자명을 반드시 지운 뒤 심사한다.
3.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된 논문을 편집위원회의 정해진 양식에 따라 ‘수정 없이 게재(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의 네 등급으로 판정한 후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중 B·C 등급의 경우 수정사항이, D등급의 경우에는 게재 불가 이유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제8조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정 및 조치한다.

1.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다음의 네 가지로 처리한다.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심사위원3
게재	A	A	A
수정 후 게재	A	A	B
	A	A	C
	A	B	B
	B	B	B
수정 후 재심	A	B	C
	A	B	D
	A	C	C
	A	C	D
	B	B	C
	B	B	D
	B	C	C
게재 불가	A	D	D
	B	C	D
	C	C	C
	C	C	D
	C	D	D
	D	D	D

2. 편집위원회는 논문 편수가 『영토해양연구』의 수록 분량을 초과하거나 또는 편집위원회의 기획상의 우선순위 등의 사정에 따라 심사 통과 원고 가운데 일부를 차기 호 또는 차차기 호에 실을 수 있다. 이 가운데 단순히 『영토해양연구』 수록 분량 초과만이 원인일 때에는 투고 및 심사 성적 순위로 해당 호 게재를 결정한다.

3. 심사 결과와 관련하여 수정제의 및 게재 불가사유를 투고자에게 전자 우편으로 통보한다.

제9조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과 심사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일체를 대외비로 한다. 투고자는 게재가 결정된 논문이라 할지라도 심사위원회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10조 편집위원회는 『영토해양연구』에 투고된 일체의 원고에 대해 심사 종료 후 돌려주지 않는다.

[투고 요령]

제정 2011.06.30.
개정 2017.04.21.
개정 2017.10.25.

제1조(투고 규정 일반)

- 『영토해양연구』는 전문적인 학술지로서 논문, 서평, 연구노트, 영토·해양 관련 일지, 자료소개, 일지 등이 게재된다. 투고하고자 하는 원고는 3월 31일 또는 9월 30일까지 투고신청서 및 윤리서약서, 저작권활용동의서와 함께 투고하여야 한다.
- 원고는 반드시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여 『영토해양연구』 온라인 제출 시스템(또는 메일(tas@nahf.or.kr))을 통해 투고한다. 또한 최종 원고 제출 시 사진(해당도 300dpi 이상) 및 기타 자료는 별도로 제출한다.
- 심사 시 저자의 익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본문과 각주 어디에도 저자의 신원을 짐작할 수 있는 언급을 피한다.

제2조(원고 작성요령)

- 원고는 제목, 필자(소속기관), 국문초록 및 주제어, 머리말, 본문, 맺음말, 영문제목, 영문초록 및 영문 주제어, 참고문헌의 순서로 구성된다.
- 게재 신청 논문의 분량은 본문, 각주, 참고문헌, 부록(필요시)을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로 하고, 최대 200매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 국문초록은 200자 원고지 3매 내외로 한다. 영문초록은 제목과 저자의 영문 성명을 포함하여 국문초록 분량에 준한다.
- 본문의 장, 절, 항의 번호는 1, 2, 3)의 예에 따라 순차적으로 매긴다.
- 각주에서 현대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필자, 연도, 논문, 서책(출판사), 쪽수의 순서로 한다. 앞서 인용한 문헌을 재인용할 때에는 바로 위의 문헌을 인

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위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바로 위 이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앞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인용한다.

* 예) 김동복, 2006, 위의 글, 78쪽. (영문: *Ibid.*, p. 78.)

* 예) 홍길동, 2002, 앞의 글, 29쪽. (영문: Gildong Hong, 2002, *op. cit.*, p. 29.)

- 각주에서 고중세 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작자(필요시)”, “서책”, “편목”, “인용대문”의 순서로 한다. 이 중 고중세 문헌은 필요할 경우 판본명이나 영인본명을 밝힐 수 있고, 인용대문 중 전략, 중략, 후략 등은 “…”로 표기한다. 이외 본문 중의 인용문은 문장 가운데에 삽입되는 경우 큰따옴표로 묶고, 인용문이 길어 문단을 나눌 경우에는 큰따옴표 없이 서술한다.

* 예) 東北人, 『東北集』(東北文化社影印本). “東北有高士, 東北公賢鶴鳴, 是人也.”

- 서양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책명은 이탤릭체, 논문은 큰따옴표로 표기하고 다음과 같은 순서와 방식으로 인용한다.

* 예) David M. Lampton, 2009,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n the Age of Obama,”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Vol. 18, pp. 703~727.

- 참고문헌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본문의 인용처를 밝히고자 하는 곳에 괄호를 치고 그 안에 필자와 인용문헌의 간행연도 및 필요시 인용 쪽수를 표기한다.

* 예) (동북인, 2006: 24)

- 인터넷 자료의 경우 저자, 연도, 제목, 웹주소(검색 일자)의 순으로 한다.

* 예) David C. Gompert, 2013, “Sea Power and American Interest in the Western pacific,” http://www.rand.org/pubs/research_reports/RR151.html (검색일: 2014.12.17).

제3조(참고문헌 작성 요령)

- 참고문헌은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모든 문헌의 자세한 문헌 정보를 논

문 말미의 <참고문헌>에서 밝힌다.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되지 않은 문헌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2. 각 문헌은 한글 문헌, 로마자로 표기되는 구미어 문헌, 기타 언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그리스어, 아랍어 등) 문헌 순으로 배치하며 한글 저자명은 가나다순으로, 로마자 저자명은 알파벳 순으로, 기타 언어 저자명은 발음을 괄호 안에 부기하고 이를 가나다 순으로 배열한다.

* 예) 김득도 · 박동해, 1996, 『독도 관련 근대 일본발행 지도 연구』, 서울: 개벽사.

* 예) Bell, Daniel, 1973, *The Coming of Post-Industrial Society: A Venture in Social Forecasting*, New York: Basic Books.

* 예) 林昱君(린위켄), 1986, 『中國城市住宅供與研究』, 臺北: 中華經濟研究所.

3. 같은 저자의 여러 문헌은 연도순으로 배치하며 같은 해에 발행된 문헌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글에서 언급된 순서에 따라 발행 연도 뒤에 a, b, c를 첨가하여 구분한다.

4. 각각의 문헌은 다음의 구체적인 예에서 제시된 형식에 따라 작성한다.

1) 논문, 기사 등은 따옴표(“ ”)로, 저서는 영어인 경우는 이탤릭체로, 한글 · 일본 · 중국어 · 한문인 경우는 이중꺾쇠(『 』)로 표시한다.

2) 저서

(1) 저자 1인인 경우

* 예) 김재엽, 2010, 『100년 전 한국사』, 서울: 살림.

* 예) Agnew, J., 2011, *Hegemony: The New Shape of Global Power*, MA: Temple University Press.

(2) 저자 3인 이상인 경우: 본문과 각주에서는 “누구 외”로 표시하지만 참고문헌에서는 공동저자 모두의 이름을 적어 준다. 단, 처음부터 책 표지나 안장에 “누구 외”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표기한다.

* 예) 홍길동 · 허생 · 흥부, 1993, 『조선조 소설 인물고』, 성남: 정신

문화연구원.

3) 학위 논문

* 예) 홍길동, 2002, “근대의 동해에 대한 지도제작과 측량 연구”, 집현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 예) Doe, John, 1988, “The Social Banditry in Late Imperial China,” Ph. D. Diss., Robin Hood University.

4) 번역서의 경우 원저자 다음에 번역자의 이름을 넣는다.

* 예) Kissinger, Henry A. 저 · 박용민 역, 2014, 『회복된 세계』, 서울: 북앤피플.

5) 동양 문헌의 경우, (전체 추가) 동양 고전의 참고 문헌을 작성할 경우에 필자, 서명, 출판지, 출판사, 발행 연도를 생략하고, 『삼국사기』, 『선조실록』 또는 『論語』 등만을 표기한다.

6) 학회보, 월간지, 계간지 등의 논문이나 기명 기사

* 예) Geng, Jing, 2012, “The Legality of Foreign Military Activities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under UNCLOS,” *Merkourios*, Vol. 18, Issue 74.

7) 학회에서 발표한 논문(proceeding)의 경우

* 예) 박병섭, 2016, “일본영역참고도와 일본외무성의 독도 정책 모색”, 동북아역사재단 독도 관련 일본발행지도 학술회의, 서울, 12월.

* 예) Jordan, Peter, 2016, “When Exonyms and Endonyms Turn into International Names: An Additional Function in Need of a Term,” Paper presented at Seas and Islands: Connecting People, Culture, History and the Future, Korea, Rep., October.

8) 일간지, 주간지의 기명 기사와 칼럼* 예) 임거정, 1993, “유엔평화유지군 참여 결정”, 『중앙일보』(4월 8일).

[연구윤리규정]

제정 2017.04.21.
개정 2017.10.25.

제1조(목적)

1. 본 연구윤리규정은 학문적 독창성을 존중하고, 학문적 권리를 보호하며, 저술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며, 표절 및 중복게재의 방지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
2. 『영토해양연구』에 게재 신청하는 자는 본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한다.

제2조(연구부정행위 및 연구 부적절행위의 기준)

1.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하거나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등 연구의 진실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연구부적절행위”(이하 “부적절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기타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중복게재”라 함은 타 학술지에 게재된 저술을 『영토해양연구』에 게재 신청하거나 타 학술지에서 심사 중인 논문을 『영토해양연구』에 게재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연구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운영 규칙」(이하 “재단 연구윤리위원회 규칙”)에 따른다.

2. 『영토해양연구』와 관련하여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대한 제보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이를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위원회에 통보한다.

제4조(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에 대한 제재)

1.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는 재단 연구윤리위원회 규칙에 의거하여 제재 여부를 결정한다.
2. 표절에 대한 제재
 - 1) 최종적으로 표절 판정을 받은 저자는 『영토해양연구』에 판정 후 3년간 단독 혹은 공동으로 논문게재를 신청할 수 없다.
 - 2) 편집위원회는 해당 저자에게 게재신청 불가기간을 통보한다.
 - 3) 게재 이후 표절 판정을 받은 논문은 편집위원회에 의해 공식적으로 취소되며, 편집위원회는 이 사실을 추후 발간되는 『영토해양연구』 부록에 공지한다.
3. 중복게재에 대한 제재
 - 1) 중복게재로 최종 판정을 받은 저자는 『영토해양연구』에 판정 후 3년간 단독 및 공동으로 논문게재를 신청할 수 없다.
 - 2) 편집위원회는 중복게재 신청자에게 게재신청 불가기간을 통보한다.
 - 3) 게재 이후 중복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편집위원회에 의해 공식적으로 취소되며, 편집위원회는 이 사실을 추후 발간되는 『영토해양연구』 부록에 공지한다.
 - 4) 편집위원회는 중복게재로 판정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의 발행단체에 이 사실을 통고한다.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 운영 규칙]

제정 2007.09.21. 규칙 제19호
개정 2010.05.28. 규칙 제43호
개정 2015.12.23. 규칙 제105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하거나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등 연구의 진실성을 침해하는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
 - 가. "위조"라 함은 자료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나. "변조"라 함은 연구와 관련된 자료, 과정 및 연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 다.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및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거나 자신이 이미 발표한 연구결과를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부당하게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연구부적절행위"(이하 "부적절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기타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당해 주장이나 증언에 반하는 사실을 간과한 자는 제보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4.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위원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5. "예비조사"라 함은 본 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보된 사실에 대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예비적인 사실 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6. "본 조사"라 함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재단 소속의 연구자와 재단을 통하여 연구비를 지원 받은 자 및 재단 학술지에 원고를 게재한 자 등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연구윤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3. 예비 ·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에 대한 승인에 관한 사항
4. 예비조사위원회, 조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5.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6. 조사결과에 대한 처리, 후속조치 및 재심의의 처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사무총장, 한중관계연구소장, 한일관계연구소장, 독도연구소장, 법률자문관(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논총편집위원장이 수행한다. <개정 2015.12.23>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당연직 이외의 위원은 재단 부연구위원 이상의 연구직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연구직 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 자를 간사로 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5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제보 및 증거보전) ①제보자는 위원장에게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위원회는 제보에 대한 증거보전을 위하여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검증시효) ①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 및 부적절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②5년 이전의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라 하더라도 재단의 운영상의 장애를 초래하거나, 재단의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를 조사할 수 있다.

제8조(예비조사위원회) ①위원회는 제6조 제1항에 의한 제보를 접수한 경우 예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3인 이내의 위원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예비조사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③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부정행위와 부적절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제보일이 시효 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④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9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①본 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 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본 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③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

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위원회의 구성) ①조사위원회는 5인 내지 7인의 조사위원으로 구성하며 당해 연구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3인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②조사위원으로 전문성과 객관성을 가진 외부 인사를 2인 이상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조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11조(기피·제척·회피) ①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 또는 조사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당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안건의 심의·의결 및 조사에 관여할 수 없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위원 및 조사위원은 위원회에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④기피 또는 회피 신청에 대한 결정에 기피 신청된 위원이나 회피 신청한 위원은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조사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①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조사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조사위원회는 조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대상 연구와 연구자에게 부당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13조(진술 기회의 보장) 조사위원회는 혐의 사실에 대해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4조(결과보고서의 제출) ①조사위원회는 조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조사결과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주장 내용과 그에 대한 판단 및 처리결과
6. 조사위원 명단

제15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①위원회는 재단 소속 연구자의 행위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는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승인한 때에는 이사장에게 징계 및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재단을 통하여 연구비를 지원받은 자의 행위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는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승인한 때에는 이사장에게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연구 윤리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 이사장에게 징계 또는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6조(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

성하여 지체 없이 피조사자 및 제보자에게 통지한다.

제17조(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비밀유지의 의무 등) ①위원회와 조사위원회는 제보자를 보호하고 피조사자의 명예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되 상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③위원, 조사위원,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이사장 및 관계 임직원은 심의·의결·조사 기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같다.

제19조(경비)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지침)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제19호, 2007. 09. 21>

이 규칙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43호, 2010. 05. 28>


이 규칙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05호, 2015. 12.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와의 관계) 이 규칙은 직제규정 부칙(제68호) 제2조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본다.



 영토해양연구 Vol. 15

초판 1쇄 인쇄 2018년 6월 20일

초판 1쇄 발행 2018년 6월 30일

펴낸이 김도형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등록 제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NH농협생명빌딩

전화 02-2012-6065

팩스 02-2012-6189

ISSN 2234-3296

비매품

이 책의 출판권 및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으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